최저이금 적용요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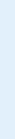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865-000018-10

•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2018. 6.

. . .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865-000018-10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2018. 6

연세대 산학협력단

결과분석 : 최 강 식(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승 렬(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산처리 : 박 상 언(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연구보조 : 노 해 영(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승 현 석(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석사과정)

제 출 문

최저임금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6월

연세대 산학협력단 단장 이 원 용

<목 차>

I.	서	론	_
П	· ૠ	E본조사 결과의 적정성 ······	3
	1.	조사대상	3
	2.	표본설계 등	3
	3.	조사방법과 조사기간5	5
	4.	자료 분석(3
	5.	유의 사항1()
Ш	. ^入	h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3	}
	1.	응답 사업체 특성과 사업체 경영 사정15	3
	2.	고용 현황20)
	3.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22	2
	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변화3()
	5.	최저임금 상승 영향32	2
	6.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38	3
	7.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산성41	L
	8.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4	1
	9.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50)
	10.	복지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53	3
	11.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56	3
IV	. =	² 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8	3
	1.	응답 근로자 특성58	3

2. 소속된 직장의 특성74	1
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77	7
4.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5.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82	2
6.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93	3
7.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96	3
참고문헌103	3
부록1 : 사업주 대상 설문지107	7
부록2 : 근로자 대상 설문지	7

<표 차례>

< 표	2-1>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 추정(업종별)	• 4
<班	2-2>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6
<班	2-3>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수	• 6
< 丑	2-4>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16, 2017년)	. 7
< 丑	2-5>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16년, 2017년)	. 7
<丑	2-6>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16년, 2017년)	.8
<班	2-7>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16년, 2017년)	.8
<班	2-8>	사업주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11
< 丑	2-9>	근로자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12
< 丑	3-1>	응답 사업체 구성(사업체규모별)	13
<	3-2>	응답 사업체 구성(업종별)	14
<	3-3>	사업체 노조 유무(사업체규모별)	14
< 丑	3-4>	사업체 노조 유무(업종별)	15
< 丑	3-5>	2016년 대비 경영사정(사업체규모별)	16
< 丑	3-6>	2016년 대비 경영사정(업종별)	16
< 丑	3-7>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사업체규모별)	17
< 丑	3-8>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업종별)	18
< 丑	3-9>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사업체규모별)	19
< 丑	3-10>	>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업종별)	19
< 丑	3-11>	>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고용형태별) ·······	20
< 丑	3-12>	>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규모별) ····································	21
<	3-13>	>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업종별)	21
< ∓	3-14>	>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임금 수준별)	22

<표 3-15a>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임금결정, 사업체규모별)23
<표 3-16a>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임금결정, 업종별)27
<표 3-17>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사업체규모별)31
<표 3-18>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업종별)31
<표 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과 인건비 변동의 상관관계32
<표 3-20> 최저임금 상승 영향(총괄)33
<표 3-21> 최저임금 상승 영향(규모별)34
<표 3-22> 최저임금 상승 영향(업종별)37
<표 3-23>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고용형태별)39
<표 3-24>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고용형태별) : 근로자 수 대비 비율39
<표 3-25>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사업체규모별)40
<표 3-26>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업종별)40
<표 3-27>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사업체규모별)41
<표 3-28>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업종별) ·······················42
<표 3-29>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와 '2017년 최저임금액 평가'의 비교43
<표 3-30>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체규모별) ····································
<표 3-31> 최저임금 결정요인(업종별)·······45
<표 3-32>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체규모별) ····································
<표 3-33>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업종별) ····································
<표 3-34> 2017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의 상관관계 ···································
<표 3-35>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규모별) ·········· 48

<표 3-36>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업종별)4
<표 3-37>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2017년과 2018년 비교)
<표 3-38>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규모별) ······· 50
<표 3-39>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업종별)51
<표 3-40>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응답자별)5]
<표 3-41>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2018년 최저임금액 평가와의 비교)
<표 3-42>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규모별) ·······55
<표 3-43> 현물급여 지급 실태(업종별)······54
<표 3-44>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사업체규모별) ·························55
<표 3-45>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업종별)·······55
<표 3-4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규모별)56
<표 3-47>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업종별)57
<표 4-1> 응답 근로자의 구성(총괄)······58
<표 4-2>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성별)······59
<표 4-3>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학력별)55
<표 4-4>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고용형태별)60
<표 4-5> 학력분포(성별)······60
<표 4-6> 학력분포(고용형태별) ······6
<표 4-7> 근속년수(성별) ······61
<표 4-8> 근속년수(연령별) ·······62
<표 4-9> 근속년수(학력별)······62
<표 4-10> 근속년수(고용형태별) ·······62
<표 4-11> 사회보험 가입여부(성별) ······65

<丑 4	4-12>	사회보험 가입여부(연령별)	63
<丑 /	4-13>	사회보험 가입여부(학력별)	64
<丑 /	4-14>	사회보험 가입여부(고용형태별)	64
<丑 /	4-15>	사회보험 가입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64
<丑 /	4-16>	가구원 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성별)	65
<丑 /	4-17>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구원 수별)	65
<丑 4	4-18>	가구 월 총소득(성별)	66
<丑 /	4-19>	가구 월 총소득(연령별)	66
<丑 /	4-20>	가구 월 총소득(학력별)	67
<班 4	4-21>	가구 월 총소득(고용형태별)	67
<班 4	4-22>	가구 월 총소득(가구원수별)	68
<丑 4	4-23>	가구 월 총소득(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수별)	68
<丑 4	4-24>	가구 월 총지출(성별)	69
<丑 4	4-25>	가구 월 총지출(연령별)	69
<丑 4	4-26>	가구 월 총지출(학력별)	70
<張 4	4-27>	가구 월 총지출(고용형태별)	70
<丑 4	4-28>	가구 월 총지출(가구원 수별)	71
<丑 4	4-29>	가구 월 총지출(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71
<丑 /	4-30>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성별)	72
<丑 /	4-31>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연령별)	72
<丑 4	4-32>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학력별)	73
<丑 4	4-33>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고용형태별)	73
<丑 /	4-34>	응답 근로자 구성(가구원수별・소득용도별)	73
<丑 .	4-35>	가구 월 총소득(소득용도별)	74

<표 4-36> 현 직장의 고용형태(성별)	······74
<표 4-37> 현 직장의 고용형태(연령별)	75
<표 4-38> 현 직장의 고용형태(학력별)	75
<표 4-39> 현재 직장의 직종(성별)	76
<표 4-40> 현재 직장의 직종(학력별)	76
<표 4-41> 현재 직장의 직종(고용형태별)	77
<표 4-42>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성별)	······78
<표 4-4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연령팀	里)78
<표 4-44>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학력팀	星)78
<표 4-45>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고용형	녕태별)79
<표 4-46>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비정구	구직, 고용형태별)79
<표 4-47>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성별)	80
<표 4-48>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연령별)	80
<표 4-49>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학력별)	81
<표 4-50>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고용형태별)	81
<표 4-51>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비정규직, 고용	형태별)81
<표 4-52> 최저임금 결정요인(성별)	82
<표 4-53> 최저임금 결정요인(고용형태별)	82
<표 4-54> 최저임금 결정요인(연령별)	83
<표 4-55> 최저임금 결정요인(학력별)	83
<표 4-56> 최저임금 결정요인(비정규직, 고용형태별)	84
<표 4-57> 최저임금 결정요인(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	할별)84
<표 4-58>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성별)	85
<표 4-59>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연령별)	85

< 丑	4-60>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학력별)	•••••	•••••	••••••	85
< 丑	4-61>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고용형티	개별) ······			85
<丑	4-62>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비정규격	딕, 고용	형태별) …	•••••	86
< 丑	4-63>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최저임금	금 인상	영향별) …		86
< 丑	4-64>	2017년	최저임금액	의 생활	활향상	기여도(성	성별)			··· 87
<丑	4-65>	2017년	최저임금액	의 생활	활향상	기여도(약	면령별) ·			88
<丑	4-66>	2017년	최저임금액	의 생활	탈향상	기여도(학	학력별) ·		••••••	88
<丑	4-67>	2017년	최저임금액	의 생활	탈향상	기여도(ɔ	고용형태	별)	••••••	88
< 丑	4-68>	2017년	최저임금액	의 생활	활향상	기여도(ㅂ	미정규직	, 고용형E	캐별) ······	89
			최저임금액							
<丑	4-70>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성별) …	•••••		••••••	90
<班	4-71>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연령별)	•••••		••••••	90
< 丑	4-72>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학력별)	•••••		••••••	90
< 丑	4-73>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고용형티	개별) ·····		••••••	91
<丑	4-74>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성 여부	-(비정규격	익, 고용	형태별) ·	••••••	··· 91
			최저임금액							
			견 최저임금·							
< 丑	4-77>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성별) …	•••••		••••••	93
<丑	4-78>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연령별)	••••••		••••••	93
<丑	4-79>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학력별)	*******		••••••	94
< 丑	4-80>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고용형티	개별) ······		••••••	94
<丑	4-81>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비정규?	식, 고용 ^호	형태별) ·		94

<丑	4-82>	최저임금	인상 영	향별	2019	년 최저임	금액 적	걱정성	여부	•••••	95
< 亚	4-83>	최저임금	준수 🌣	부에	대한	인식(성별	里)	•••••	•••••••	•••••	96
<丑	4-84>	최저임금	준수 🌣	부에	대한	인식(연령	녕별) …	•••••	••••••	•••••	96
<丑	4-85>	최저임금	준수 🌣	부에	대한	인식(학력	력별) …	•••••		•••••	97
<弫	4-86>	최저임금	준수 🌣	부에	대한	인식(고용	용형태별	<u>]</u>)			97
<丑	4-87>	최저임금	준수 🌣	부에	대한	인식(비전	성규직,	고용현	형태별)	••••••	97
<丑	4-88>	최저임금	고지여	부(성	趙)		•••••	•••••		•••••	98
<丑	4-89>	최저임금	고지여	부(연현	경별) …		•••••	•••••		•••••	99
<弫	4-90>	최저임금	고지여	부(고	용형태	별)		•••••		••••••	99
<翌 ⋅	4-91>	최저임금	고지여	부(비>	정규직,	고용형1	캐별) ···	•••••		•••••	99
<翌 ⋅	4-92>	최저임금	고지여	부와 🤻	최저임	금 준수	여부에	관한	인식의	상관:	관계100
<丑	4-93>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기 중요성	(고용형	태별)	•••••	100
<丑	4-94>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기 중요성	(성별)	•••••	••••••	••••••	101
<丑	4-95>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기 중요성	(연령별	<u>]</u>)			101
<張 ⋅	4-9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기 중요성	(학력별	<u>]</u>)			101
< 亚	4-97>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기 중요성	(비정규	'직, 그	고용형타	별) …	102
		'최저임금 비교									

<그림 차례>

[그림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II
[그림 2> 2016년 대비 경영사정(2017) ······II
[그림 3>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 ······III
[그림 4>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 ······III
[그림 5> 응답 근로자의 성별 구성IV
[그림 6>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 ······IV
[그림 7> 응답 근로자의 학력분포IV
[그림 8> 사회보험 가입률 ···································
[그림 9> 가구원 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V
[그림 10>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소득 ···································
[그림 11>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지출 ···································
[그림 12>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VII
[그림 13> 응답 근로자의 고용형태 ············VII
[그림 14> 응답 근로자의 직종 ···································
[그림 15> 최저임금(2017) 상승 영향 응답비중IX
[그림 16> 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사업체) ·······XI
[그림 17> 임금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근로자) ·······XI
[그림 18>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 ·······XII
[그림 19>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체) ·······XII
[그림 20> 최저임금 결정요인(근로자) ·······XIII
[그림 21>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주, 근로자) ····································
[그림 22> 최저임금액 인상의 생활향상 기여도(근로자) ·········XIV

1림 23>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 ····································
1림 24>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근로자) ····································
1림 25>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 ····································
1림 26>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 수준(근로자) ·······XV
1림 27>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 ····································
1림 28>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근로자) ········XVI
1림 29>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 근로자) ········XI

요 약

1. 서 론

- 이 연구의 목적은 2017년에 실시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2019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 사업체 특성과 사업체 경영 사정,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고용효과 등을 조사함. 또한,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여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복지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들을 분석함
 -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 근로자와 이들이 속한 직장 특성, 일자리 종사 이유 등을 조사함. 아울러 최저임금이 임금에 미친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여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함
- 본 조사의 표본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저임금 영역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 모집단 분포를 추정하고, 이에 따라 2,816개의 사업체 표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사함

• 4인 이하 : 사업체당 최대 4명

· 5~9인 : 사업체당 최대 5명

• 10~99인 : 사업체당 최대 7명

· 100~299인 : 사업체당 최대 10명

- 분석 가능한 최종자료의 경우, 사업체가 2,447개소, 근로자는 5,096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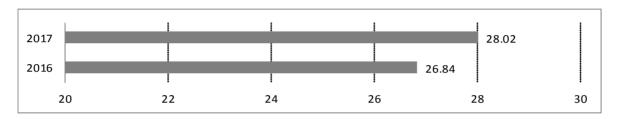
2. 기초분석

가. 응답 사업체 특성

- 응답 사업체(2,447개소)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정치는 28.02%임(<그림1> 참조)
 - 2016년과 비교할 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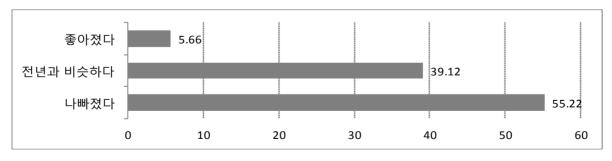
(단위:%)



- 2016년 대비 2017년 경영사정을 살펴보면, 응답 사업체(2,447개소) 가운데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경영사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업체보다 많았음(<그림 2> 참조)
 - 전년도 대비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5.22%로 절반을 넘어서며, 반대로 경영사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5.66%였음

<그림 2> 2016년 대비 경영사정(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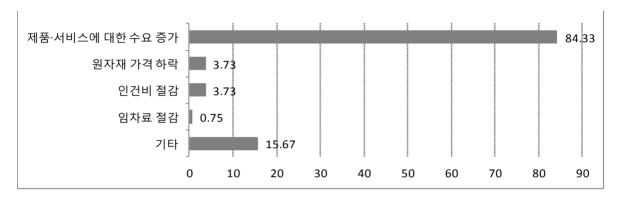
(단위 : %)



○ 전년도 대비 경영사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업체(137개소)의 경우 그 사유로 84.33%의 사업체가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답하였으며, 15.67%가 '기타', 3.73%가 '인건비 절감' 및 '원자재 가격하락'을 들었음(<그림 3〉참조)

<그림 3>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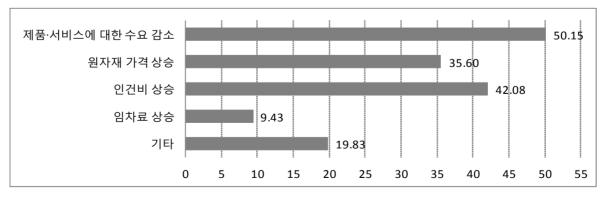


주 : 결측치 제외. 1-1-1번 (경영사정의 호전 사유를 묻는)문항은 1-1번 (경영사정을 묻는) 문항과 달리 복수응답이므로, <그림 2> 경영사정이 "좋아졌다"는 응답(137개소)보다 <그림 3>의 전체 응답(145개소)이 더 많음

○ 전년도 대비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업체(1,337개소)의 경우 그 사유로 50.15%의 사업체가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를 답하였으며, 42.08%가 '인건비 상승', 35.60%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뒤를 이음(<그림 4〉참조)

<그림 4>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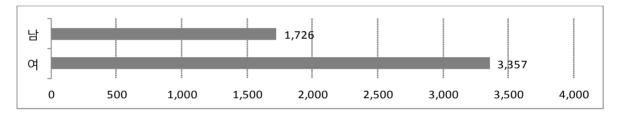
주 : 결측치 제외. 1-1-2번 (경영사정의 악화 사유를 묻는)문항은 1-1번 (경영사정을 묻는) 문항과 달리 복수응답이므로, <그림 2> 경영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1,337개소)보다 <그림 4>의 전체 응답(2,082개소)이 더 많음

나. 응답 근로자 특성

- 응답 근로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 근로자는 남성은 1.726명. 여성은 3.357명으로 구성됨(<그림 5> 참조)
 - 응답 근로자의 연령은 20~29세가 2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40~49세와 50~59세의 순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그림 6> 참조)
 - 응답 근로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0.2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34.89%),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14.83%)의 순임(<그림 7> 참조)

<그림 5> 응답 근로자의 성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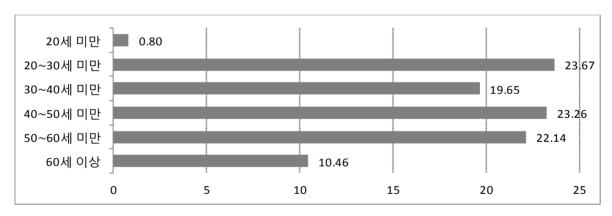
(단위 : 명)



주 : 결측치 제외

<그림 6> 응답 근로자의 연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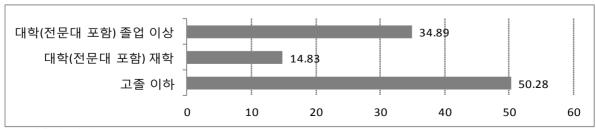
(단위:%)



주 : 결측치 제외

<그림 7> 응답 근로자의 학력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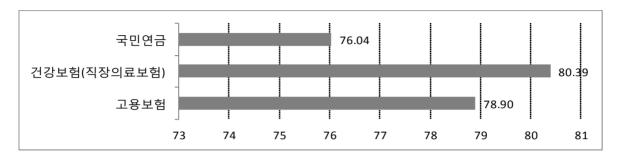
(단위:%)



- 응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80.39%(<그림 8> 참조)
 - 근로자의 78.90%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76.04%가 국민연금에 가입함

<그림 8>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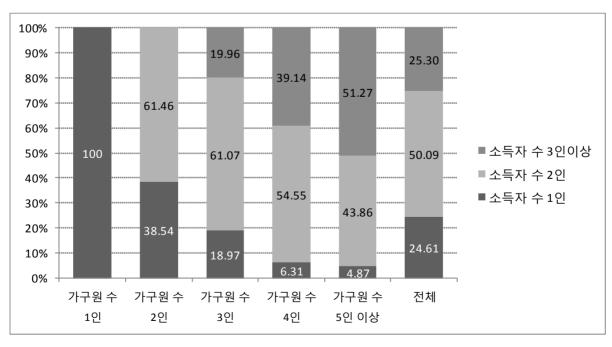
(단위:%)



- 주 :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 2) 결측치 제외
-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75.39%를 차지하였고, '가구원수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수'는 2~4인 가구 중에서는 2인이 가장 많으며, 5인 이상 가구에서는 3인이 가장 많음(<그림 9〉참조)

<그림 9> 가구원 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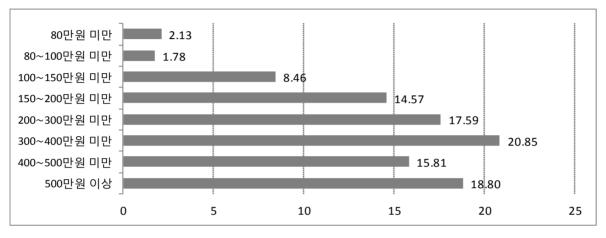
주 : 1) 결측치 제외

2) 각 가구원 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에서 '0인'으로 기입한 항목은 제외

- 응답 근로자의 가구 월 총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20.85%로 가장 높음(<그림 10> 참조)
 - 그 다음으로는 500만원 이상이 18.80%, 200~300만원 미만이 17.59%를 차지함

<그림 10>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소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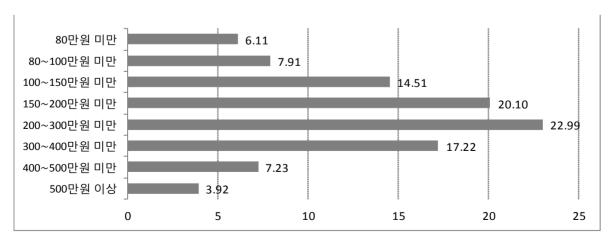


주 : 결측치 제외

- 응답 근로자의 가구 월 총지출은 200~300만원 미만이 22.99%로 가장 높음(<그림 11> 참조)
 - 그 다음으로는 150~200만원 미만이 20.10%, 300~400만원 미만이 17.22%를 차지함

<그림 11> 응답 근로자 가구 월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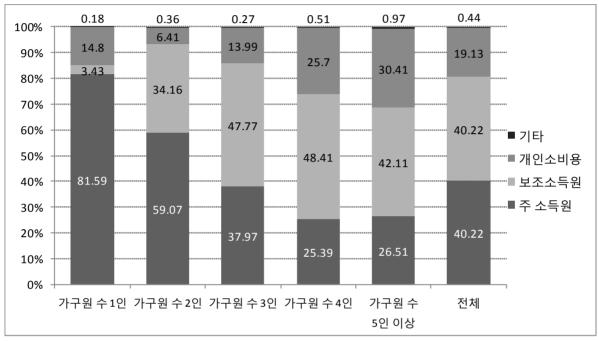
(단위 : %)



○ 근로자 소득의 가계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계의 주 소득원'인 경우는 40.22%, '가계의 보조 소득원'인 경우는 40.22%, '주로 개인 소비용'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9.13%로 나타남(<그림 12> 참조)

<그림 12>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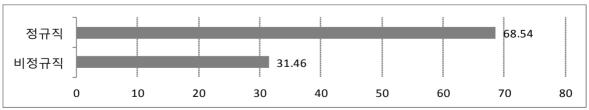


주 : 결측치 제외

○ 응답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가 68.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31.46%로 나타남(<그림 13> 참조)

<그림 13> 응답 근로자의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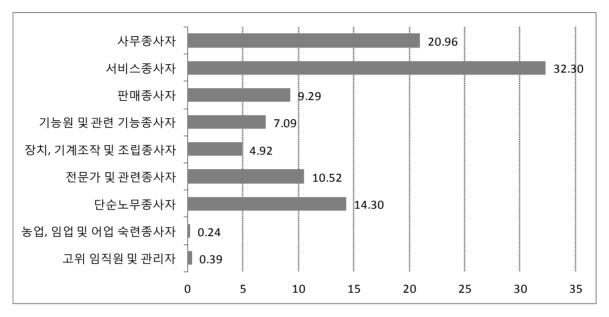
(단위:%)



○ 응답 근로자의 직종은 서비스종사자가 3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종사자(20.96%), 단순노무종사자(14.3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참조)

<그림 14> 응답 근로자의 직종

(단위:%)



주 : 결측치 제외

3. 최저임금 인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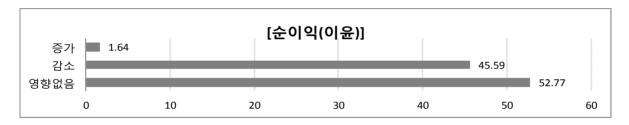
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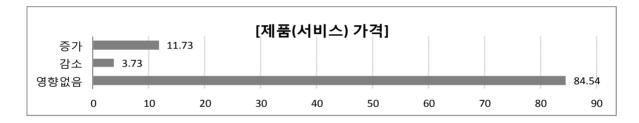
- 2017년에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액 수준의 인상으로 순이익(이윤)에 '영향이 없다'는 사업체가 52.77%로 절반을 웃도는 가운데 순이익(이윤)이 '감소'했다는 사업체가 45.59%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15〉참조)
 - 제품, 서비스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84.54%로, 대체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의 부담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9.9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사업체도 47.67% 수준이었음
 - 신규채용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74.75%로, '감소'로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3.2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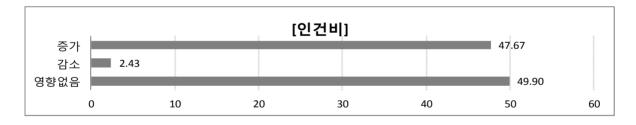
- 사업체는 79.54%가 근로시간이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35%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임금산정방식은 89.01%의 사업체가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수당/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 8.68%, '임금체계 변경' 2.3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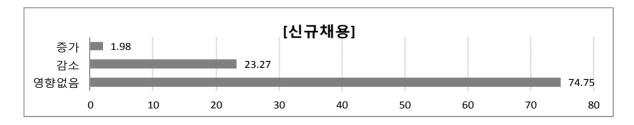
<그림 15> 최저임금(2017) 상승 영향 응답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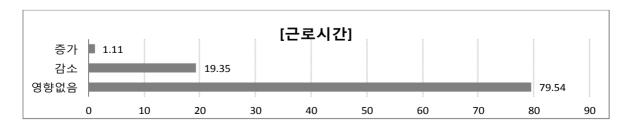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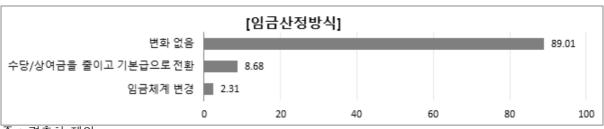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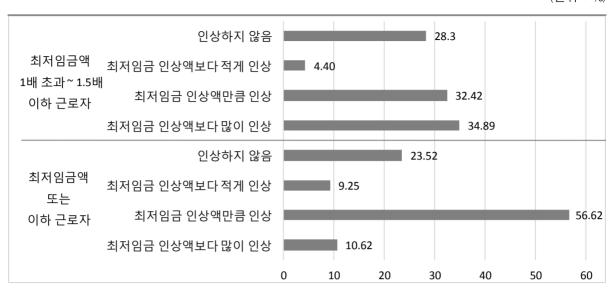


주 : 결측치 제외

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상승에 미친 영향

-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다른 설문문항이 제시되었음
 - 사업주의 경우에는 "금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이 근로자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2)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이하인 근로자'별로 5개의 항목(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하지 않음, 해당근로자 없음)을 각기 선택하도록 하였음
 -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귀하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1)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2)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상되었다, 3) 최저임금 인상 이하로 인상되었다, 4)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 임금결정에서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는 대체로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임금의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인상이 있었다는 근로자는 65.71%였음(〈그림 16〉, 〈그림 1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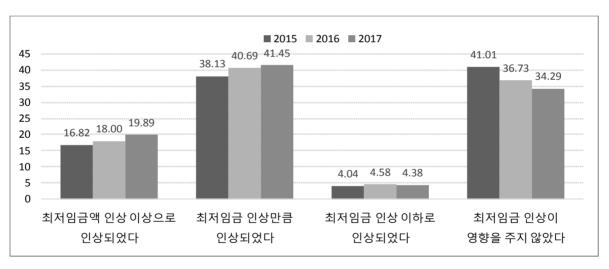
(단위:%)



주 : 결측치 제외

<그림 17> 임금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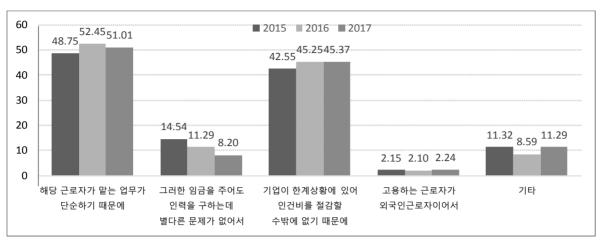
(단위:%)



주 : 결측치 제외

다.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

-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이거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51.01%, 45.37%를 차지(<그림 18> 참조)
 - 전년에 비해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의 응답비율은 14.44%p 감소(65.45%→51.01%)



주 :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복수응답. 2) 결측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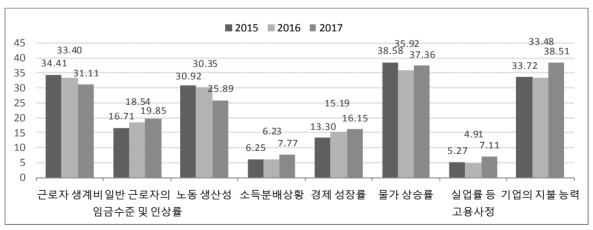
4.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가. 최저임금 결정요인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동일한 설문을 제공하였음
 - 사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 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의 순으로 들고 있음(〈그림 19〉참조)

<그림 19>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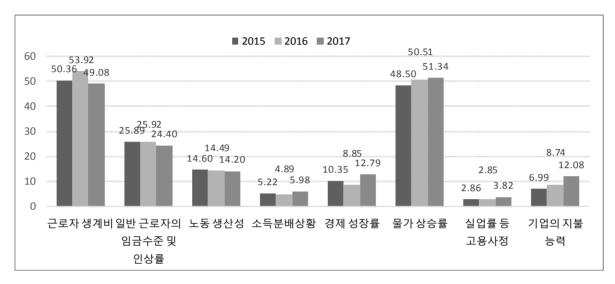


주 : 1) 복수응답.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결정요인으로 '물가 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그림 20〉 참조)

<그림 20> 최저임금 결정요인(근로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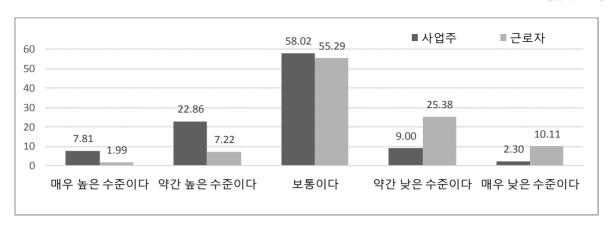


주 : 1) 복수응답. 비율은 응답을 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나.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 2017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58.02%인 가운데 30.67%의 사업체는 '매우 높은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낮은 수준' 또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1.30%이었음
- 반면, 근로자의 경우 55.29%가 '보통'이라 응답한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가진 근로자 비중은 9.21%이고 '매우 낮은 수준' 또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5.49%이었음(〈그림 21〉 참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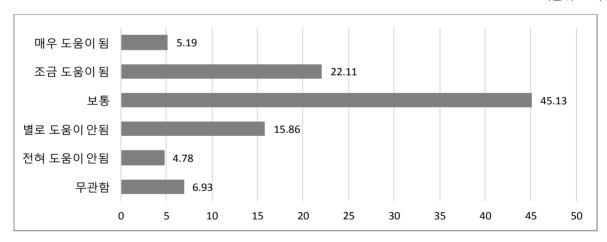


주 : 결측치 제외

○ 최저임금액 인상이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율이 45.13%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임(<그림 22> 참조)

<그림 22> 최저임금액 인상의 생활향상 기여도(근로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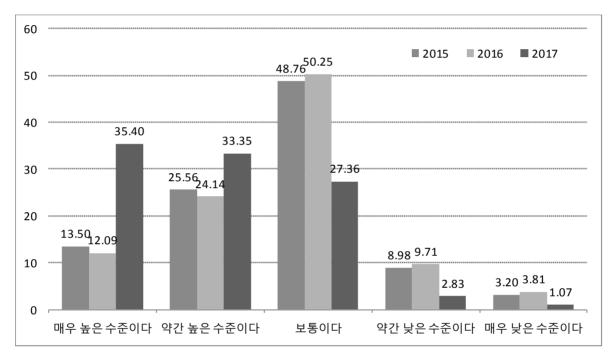


다. 2018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 사업주의 경우, 2018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는 응답이 35.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33.35%, '보통'이라는 의견이 27.36%로 많았음(<그림 23〉참조)

<그림 23>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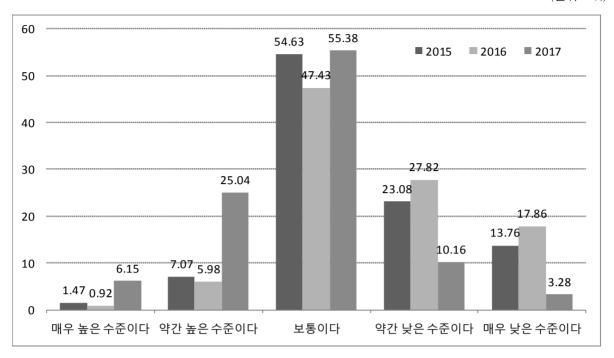
(단위:%)



주 : 1) 결측치 제외

2) 조사년도 1년뒤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임

○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정성 판단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55.38%로 가장 많았고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25.04% '약간 낮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10.16%였음(〈그림 2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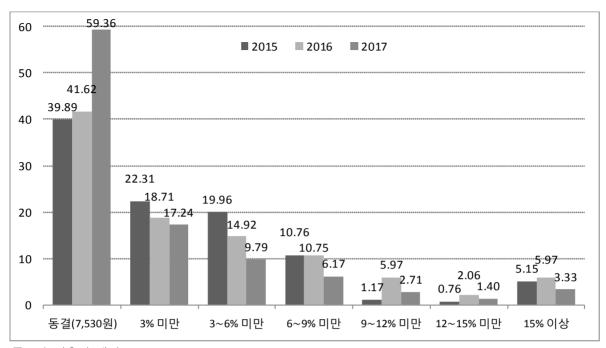


주 : 1) 결측치 제외

2) 조사년도 1년뒤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임

5.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 사업주의 경우,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많은 것은 '동결'(59.36%)이었고, 그 다음으로 '3% 미만'으로 인상하자는 의견(17.24%)과 '3~6% 미만'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의견(9.79%)이 많았음(<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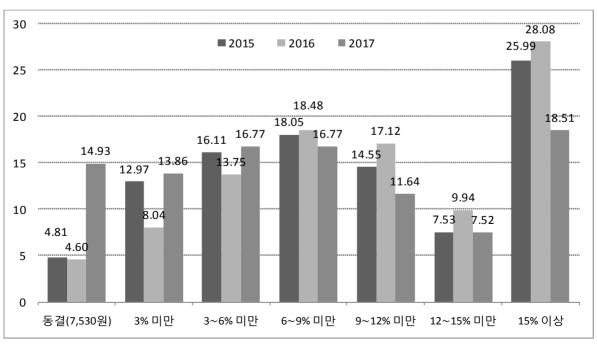


주 : 1) 결측치 제외 2) 조사년도 2년뒤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임

○ 근로자의 경우,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18.51%는 '15% 이상'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6~9% 미만' 수준에서 인상(16.77%), '3~6% 미만' 수준에서 인상(16.77%)으로 나타남(<그림 26> 참조)

<그림 26>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 수준(근로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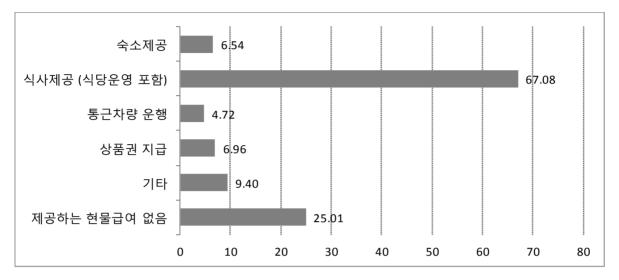
주 : 1) 결측치 제외 2) 조사년도 2년뒤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임

6. 복지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해 제공되는 현물급여로서 67.08%의 응답 사업체가 식사제공(식당운영 포함)을 들고 있음(<그림 27> 참조)

<그림 27>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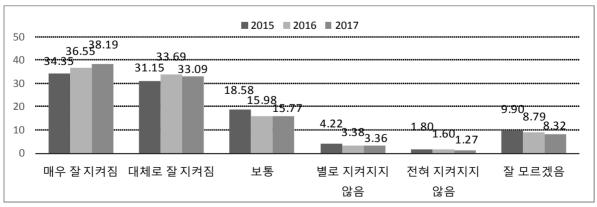
주 : 1) 복수응답.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7. 최저임금제도 준수

-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거나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3%이고,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1.28%로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그림 28〉참조)
 -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잘 지켜진다는 의견의 비율이 1.04% 포인트 증가하였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은 0.35% 포인트 감소

<그림 28>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근로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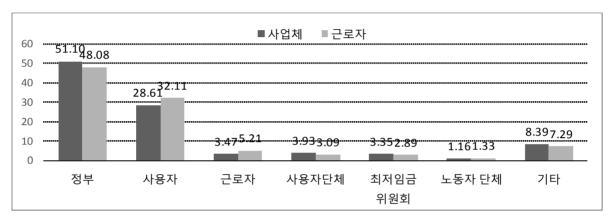


주 : 결측치 제외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51.10%였고, 이어서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61%임(<그림 29> 참조)
 - 근로자의 경우 48.08%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2.11%가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29>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 근로자)

(단위:%)



I. 서 론

- 2018년 최저임금액은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의 인상률을 보임
 - 이 인상률은 1990년 이래 1991년(18.8%), 2000. 9.~2001. 8(16.6%) 다음으로 세 번째 높은 수치였음
 - 민주당의 19대 대선 공약이 실천된다면,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는 2019년에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함
-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액의 인상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전년도 3월 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액 인상을 심의하도록 요청하고,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에 재심의과정(필요한 경우)을 거쳐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액을 8월 초에 고시하게 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의 결정 참고 요소와 관련하여 매년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3, 8월), 가계조사 등의 원 자료(raw data)를 가공한 통계 결과를 최저임금 심의 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 아울러 최저임금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11월 말에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서 강승복·박철성(2015), 김대일(2012), 김동욱(2010), 김민영 외(2013), 김유선 외(2004), 박준성 외(2010), 이시균(2007, 2013), 이병희(2008), 정진호 외(2011)를 참고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조건부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도 있음. 이는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함(외국의 연구결과는 참고문헌 참조)
- 따라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정량적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까지 총 11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7~2016년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와 분석 결과는 각각 보고서(최강식 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로 간행되어 2008~2018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참고자료로써 이용하였음. 이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http://www.minimumwage.g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통계청의 KOSIS (http://kosis.kr/)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통계자료로 제공되고 있음
- 2017년 11월에 일부 설문항목을 수정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음
- 본 연구는 2017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경제학·통계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2018년 최저임금 심의(2019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표본조사 결과의 적정성

1. 조사대상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2017년 최저임금액 6,470원의 1.5배인 9,705원 이하(저임금)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2,447개로 함

2. 표본설계

가. 개요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모집단틀은 존재하지 않음. 만일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조사대상 중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일부만 파악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저하됨
 -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에 따라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임의추출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지 못함
- 차선책으로 저임금대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대략적인 모집단 틀을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의 효율성은 다소 높아지지만 여전히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얻게 됨
 - 이러한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집단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에 따른 표본수를 결정함
 - 이 때 산업분류는 산업대분류기준으로 상위(사업체 수) 10개 영역으로 하고, 사업체 규모는 299인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6개 규모로 함

나.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영역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분포

○ 표본조사 결과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비율을 추정한 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이용하여 〈표 2-1〉의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별 추정치를 구하였음

(단위 : 개소. %)

						(난	위: 개소, %)	
시어테브로			사업처	규모			 합계	
산업대분류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압계 	
C.제 조 업	22,563	91,266	48,770	39,145	15,553	3,303	220,600 (15.7)	
G.도매 및 소매업	88,396	222,103	40,320	18,604	3,162	729	373,314 (26.5)	
H.운수업 	2,834	15,493	5,189	4,707	2,415	937	31,575 (2.2)	
l.숙박 및 음식점업	166,692	136,895	16,408	5,495	931	103	326,524 (23.2)	
L부동산 및 임대업	8,657	36,126	11,702	5,870	767	123	63,245 (4.5)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57	17,041	4,956	4,210	2,597	1,000	32,261 (2.3)	
P.교육 서비스업	10,341	36,470	8,147	5,361	1,984	337	62,640 (4.5)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09	70,664	26,478	15,181	4,235	867	118,734 (8.4)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922	14,015	1,871	1,526	550	73	38,957 (2.8)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847	100,712	11,135	6,492	1,325	111	139,622 (9.9)	
합계	344,018	740,785	174,976	106,591	33,519	7,583	1,407,472	
	(24.4)	(52.6)	(12.4)	(7.6)	(2.4)	(0.5)	(100.0)	

자료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년 6월), 고용노동부

다. 표본 추출 및 배정

i) 사업체 : 〈표 2-1〉의 분포에 따라 표본수를 배정

ii) 근로자 : 추출된 사업체에 대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사함

• 4인 이하 : 사업체당 최대 4명

· 5~9인 : 사업체당 최대 5명

· 10~99인 : 사업체당 최대 7명

• 100~299인 : 사업체당 최대 10명

- 실제 조사된 사업체 수는 2,816개였고, 근로자는 5,846명이었음

- 이 중 조사대상인 저임금이 아닌 근로자를 제외한 후 실제 분석에 사용된 사업체는 2,447개, 근로자는 5,096명임¹⁾

3.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가.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타계식 면접조사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 먼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본사업체명부를 작성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명부를 보완하여 활용함
 - 다음으로 설문지를 조사대상 사업체에 송부하고, 사업체에서 설문지를 미리 작성하도록 함
 - 채용된 임시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설문지 내용을 검토, 보완한 뒤에 회수함
- 따라서 조사체계는 다음과 같음
 - 임시 조사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 최저임금위원회

나. 조사시점 · 실시기간

- 조사시점
 - 2017년 11월 15일
- 조사실시기간은 조사시점인 2017년 11월 15일부터 15일간임
- 실제 조사기준시점은 2017년 11월 15일 기준임

¹⁾ 본 조사의 전체 표본은 사업체 2,816개와 근로자 5,846명이지만 이 중 저임금(2017년 최저임금액 6,470원의 1.5배인 9,705원 이하)이 아닌 근로자 750명과 저임금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 369개 사업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이에 따라 분석은 5,096명의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2,44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4. 자료분석

가. 자료수집 결과

- 실제 분석에 사용된 사업체는 2,447개로, 근로자는 5,096명이고 이를 산업대분류와 사업체규모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 2-2〉는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표 2-3〉은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한 저임금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표 2-2>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u>단위 : 개소)</u>
사업체규모	상용 근로자 수	상용 근로자 수	상용 근로자 수	상용 근로자 수	상용 근로자 수	상용 근로자 수	합 계
산업대분류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_ C.제 조 업	23	162	70	69	28	7	359
G.도매 및 소매업	97	441	68	29	5	1	641
H.운수업	3	22	5	8	3	1	42
_I.숙박 및 음식점업	276	284	33	11	3	1	608
L.부동산 및 임대업	19	71	25	6	2	1	124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30	10	8	5	2	58
P.교육 서비스업	14	56	13	7	3	1	94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141	53	24	14	2	237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	22	5	2	1	0	6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	166	19	9	0	0	224
합 계	498	1,395	301	173	64	16	2,447

<표 2-3> 최종 조사된 분석 가능 저임금 근로자 수

							<u>(단위 : 명)</u>
사업체규모산업대분류	상용 근로자수 0인	상용 근로자수 1~4인	상용 근로자수 5~9인	상용 근로지수 10~29인	상용 근로자수 30~99인	상용 근로자수 100~209인	합 계
C.제 조 업	32	261	169	223	156	58	899
G.도매 및 소매업	124	681	168	110	17	3	1,103
H.운수업	9	34	13	24	21	9	110
I.숙박 및 음식점업	419	539	118	51	14	4	1,145
L.부동산 및 임대업	38	132	81	24	9	10	294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62	29	33	22	14	168
P.교육 서비스업	20	86	32	22	11	5	17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318	184	96	55	20	68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31	11	3	1	0	85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	293	50	48	0	0	436
합 계	741	2,437	855	634	306	123	5,096

나. 2016년 조사와 2017년 조사의 사업체 분포 비교

- 모집단의 변화에 따라 조사된 사업체의 분포가 2016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 사업체 규모별 구성을 보면, 상용근로자수 0인의 사업체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상용근로자수 1~4인, 상용근로자수 10~29인의 사업체 비중은 감소하였음
 - 업종별 구성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약간 감소. 다른 업종은 근소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음

<표 2-4>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16, 2017년)

(단위: 개소, %)

전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2016년		201		
사업체 수	사업체 수	비중(A)	사업체 수	비중(B)	B-A
상용근로자수 0인	391	15.97	498	20.35	4.38
상용근로자수 1~4인	1,443	58.95	1,395	57.01	-1.94
상용근로자수 5~9인	311	12.70	301	12.30	-0.40
상용근로자수 10~29인	207	8.46	173	7.07	-1.39
상용근로자수 30~99인	81	3.31	64	2.62	-0.69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15	0.61	16	0.65	0.04
전체	2,448	100.00	2,447	100.00	0

<표 2-5>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 수 비교(2016년, 2017년)

(단위: 개소, %)

저임금 근로자 고용	2016년		201		
사업체 수 산업대분류	사업체 수	비중(A)	사업체 수	비중(B)	B-A
C.제 조 업	362	14.79	359	14.67	-0.12
G.도매 및 소매업	637	26.02	641	26.19	0.17
H.운수업	50	2.04	42	1.72	-0.32
l.숙박 및 음식점업	589	24.06	608	24.85	0.79
L.부동산 및 임대업	122	4.98	124	5.07	0.09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	2.04	58	2.37	0.33
P.교육 서비스업	102	4.17	94	3.84	-0.33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3	10.33	237	9.69	-0.64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4	2.61	60	2.45	-0.16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9	8.95	224	9.15	0.20
합 계	2,448	100.00	2,447	100.00	0

○ 저임금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구성비는 사업체 수 기준의 구성비와 마찬가지로 2016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표 2-6>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16년, 2017년)

(단위 : 명, %)

전임금 근로자 고용 근로자 수	2016년		201	B-A	
사업체규모	근로자 수	비중(A)	근로자 수	비중(B)	D-A
상용근로자수 0인	547	11.23	741	14.54	3.31
상용근로자수 1∼4인	2,372	48.69	2,437	47.82	-0.87
상용근로자수 5~9인	812	16.67	855	16.78	0.11
상용근로자수 10~29인	707	14.51	634	12.44	-2.07
상용근로자수 30~99인	347	7.12	306	6.01	-1.11
<u>상용근로자수 100∼299인</u>	87	1.79	123	2.41	0.62
전체	4,872	100.00	5,096	100.00	0.00

<표 2-7> 업종별 저임금 근로자 수 비교(2016년, 2017년)

(단위 : 명, %)

저임금 근로자 고용 근로자 수	201	6년	201	B-A	
산업대분류	근로자 수	비중(A)	근로자 수	비중(B)	D-A
C.제 조 업	891	18.29	899	17.64	-0.65
G.도매 및 소매업	1,024	21.02	1,103	21.64	0.62
H.운수업	116	2.38	110	2.16	-0.22
l.숙박 및 음식점업	1,016	20.85	1,145	22.47	1.62
L.부동산 및 임대업	242	4.97	294	5.77	0.8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4	2.96	168	3.30	0.34
P.교육 서비스업	211	4.33	176	3.45	-0.88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03	14.43	680	13.34	-1.0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5	2.16	85	1.67	-0.49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0	8.62	436	8.56	-0.06
전체	4,872	100.00	5,096	100.00	0.00

다. 표본 수의 적정 여부

○ 사업체의 경우 확보된 표본 수는 2,447개이고, 근로자의 경우는 5,096명임

i) 비율에 관한 문항

응답문항 중 비율에 관한 결과에 대한 95% 신뢰수준 하에서의 최대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음

	최대허용오차
사업체	1.98%
근로자	1.37%

여기서 최대허용오차는
$$\pm 1.96 \times \sqrt{\frac{0.5(1-0.5)}{n}}$$
 로 구해짐 (n은 표본 수)

단, 산업분류별이나 성별 등에 따른 세분화된 응답비율은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 수보다 줄어들므로 이 경우의 최대허용오차는 위의 오차보다 커지게 됨

ii) 수치에 관한 문항

응답문항 중 수치에 관한 문항은 표본평균으로 자료를 요약할 수 있고, 표본평균의 오차는 평균의 표준오차로 나타냄

이러한 표본평균의 정확도는 평균값에 대비한 표준오차인 상대표준오차로 비교하는데 이 때 상대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본 설문 문항 중 상대표준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주요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음

문항	변수	상대표준오차
부가 1-1	근로시간	0.42%
부가 2-1	근로일수	0.32%
부가 4	통상임금	0.46%

따라서 주요 문항들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1%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어 표본 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사업체규모 범주는 상용근로자수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 당시의 사업체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조사항목별로 결측치(missing value)가 있는 표본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음
 - 따라서 사업체 수, 근로자 수 전체에서 응답 결과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 사업주 대상 설문지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응답한 비율은 66.98%이고, 대리응답은 30.94%임
 - 사업주 응답 여부에 대한 결측치는 51건으로 응답 사업주 전체의 2.08%임

응답자 구분	빈도(비율)
사업주	1,639 (66.98)
대리응답	757 (30.94)
결측치	51 (2.08)
전체	2,447 (100.00)

- 2017년 조사에서 설문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으며, 선택지 내용에서도 일부 수정이 있었음에 유의
 - 추가·수정된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는 〈표 2-8〉과 〈표 2-9〉를 참조

<표 2-8> 사업주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범주	설문 내용	설문 번호	변경
사업체 특성	경영 사정	1-1	
(경영 사정, 고용 변동)	근로자 구성	2	변경 ¹⁾
	최저임금근로자 수	7	변경 ²⁾
최저임금근로자 구성	최저임금 지급 이유	8	
	최저임금과 근로자 생산성	9	
	경영 성과(순이익, 제품·서비스 가격, 인건비 변동, 신규채용 변동, 근로시간 병동, 임금산정 방식 변동)	6(6-1~6-4)	변경 ³⁾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 임금	3(3-1-1)~4	변경 ⁴⁾
	고용에 미친 영향	5	
-1.T.O7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	10	
최저임금 결정 · 준수 · 정 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11~13	
작 -	최저임금 준수・정착	15	
7151	현물급여 지급	14(14-1)	변경 ⁵⁾
기타	부가 설문지	_	변경 ⁶⁾

주 : 1) 연령별, 직종별 구분 삭제하고 문항 통합

- 2) 직종별 구분 삭제
- 3) '신규채용의 변동', '근로시간의 변동' 항목이 추가 됨
- 4) 응답항목의 임금결정에 미친 영향 항목 중 '해당없음'이 '해당근로자없음'으로 변경 됨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사유 파악을 위해 문항(3-1-1) 신설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임금인상 영향 여부 파악을 위해 문항 신설

- 5) 응답항목의 '해당없음'을 '외국인근로자 없음'으로 변경
- 6) 월급여 기준 시점 변경, 설문조사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휴일근로일수, 초과실근로시간, 초과급여, 특별급여) 항목 삭제 및 관련 문항 문구 변경, 통상임금' 문구 삭제, '월급액'을 '월기본급'으로 변경, '연봉액'을 '기본연봉총액'으로 변경

<표 2-9> 근로자 대상 설문지 내용 구성

 범주	설문 내용	설문 번호	변경
	성	1	
	연령대	2	
	학력	3	
그크지 트셔	가구 구성	6	
근로자 특성	가구원 중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	6–1	변경 ¹⁾
	가구 총 소득	7	변경 ²⁾
	가구 총 지출	8	변경 ³⁾
	본인 근로소득의 가구 내 중요도	9	변경 ⁴⁾
	근속년수	4	
현재의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	5	
특성	고용형태(계약기간)	10	
	업무	11	
 최저임금 인상 영향	최저임금 인상 영향	12(12-1)	변경 ⁵⁾
-1-1-1-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	13	
최저임금 결정 · 준수 · 정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14–16	
	최저임금 준수·정착	17–18	

주 : 1) '금년9월' 구체적인 시기 명시

- 2) 총 소득에 대한 상세설명 추가
- 3) '금년9월' 구체적인 시기 명시 및 지출예시 주석 추가
- 4) 문구 수정
- 5) 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사유 파악을 위해 문항(12-1) 신설

Ⅲ. 시업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응답 사업체 특성과 사업체 경영 사정

가. 시업체규모별:업종별 특성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를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구성비가 가장 높은 사업체 규모는 상용근로자수가 1~4인 사업체임(전체 응답 사업체의 57.01%)
 - 이어서 0인 사업체가 20.35%로 두 번째, 5~9인 사업체가 12.30%로 세 번째임(〈표 3-1〉 참조)
 - 응답 사업체의 업종별 구성비는 도매 및 소매업(26.20%), 숙박 및 음식점업 (24.85%), 제조업(14.67%)의 순을 보임(<표 3-2> 참조)
-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2017년도 추정치가 28.13%로 2016년의 26.86%에 비해 1.27%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2017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정치가 높은 사업체는 사업체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30~99인(36.27%), 5~9인(31.98%), 10~29인(30.26%) 순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1.4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8.49%), 교육 서비스업(46.59%) 순임

<표 3-1> 응답 사업체 구성(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응답사업체 사업체규모	빈도(백분율)	2016년 인건비/매출액 평균(A)	2017년 인건비/매출액 추정치(B)	B-A
상용근로자수 0인	498(20.35)	24.13	25.22	1.09
상용근로자수 1~4인	1,395(57.01)	26.26	27.49	1.23
상용근로자수 5~9인	301(12.30)	31.06	31.98	0.92
상용근로자수 10~29인	173(7.07)	29.01	30.26	1.25
상용근로자수 30~99인	64(2.62)	34.88	36.27	1.39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16(0.65)	25.85	28.72	2.87
 전체	2,447(100.00)	26.84	28.02	1.18

<표 3-2> 응답 사업체 구성(업종별)

(단위 : 개소. %)

응답사업체 신입대분류 2017년 인건비/매출액 후정치(B) B-A 환입대분류 25.08 1.63 (G.도매 및 소매업 641(26.20) 14.80 15.92 1.12 (H.운수업 42(1.72) 29.84 29.57 -0.27 (I.숙박 및 음식점업 608(24.85) 23.28 24.47 1.19 (L부동산 및 임대업 124(5.07) 34.83 34.63 -0.2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8(2.37) 47.62 51.47 3.85 (P.교육 서비스업 94(3.84) 43.01 46.59 3.58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7(9.68) 47.40 48.49 1.0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2.45) 27.06 28.09 1.0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4(9.15) 38.61 39.61 1.00 전체 2,447(100.00) 26.86 28.13 1.27					(전기 : 기고, /0)
G.도매 및 소매업641(26.20)14.8015.921.12H.운수업42(1.72)29.8429.57-0.27I.숙박 및 음식점업608(24.85)23.2824.471.19L.부동산 및 임대업124(5.07)34.8334.63-0.20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8(2.37)47.6251.473.85P.교육 서비스업94(3.84)43.0146.593.58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7(9.68)47.4048.491.09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0(2.45)27.0628.091.03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4(9.15)38.6139.611.00			인건비/매출액	인건비/매출액	B-A
H.운수업42(1.72)29.8429.57-0.27I.숙박 및 음식점업608(24.85)23.2824.471.19L.부동산 및 임대업124(5.07)34.8334.63-0.20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8(2.37)47.6251.473.85P.교육 서비스업94(3.84)43.0146.593.58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7(9.68)47.4048.491.09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0(2.45)27.0628.091.03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4(9.15)38.6139.611.00	C.제 조 업	359(14.67)	23.45	25.08	1.63
I.숙박 및 음식점업608(24.85)23.2824.471.19L.부동산 및 임대업124(5.07)34.8334.63-0.20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8(2.37)47.6251.473.85P.교육 서비스업94(3.84)43.0146.593.58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7(9.68)47.4048.491.09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0(2.45)27.0628.091.03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4(9.15)38.6139.611.00	G.도매 및 소매업	641(26.20)	14.80	15.92	1.12
L.부동산 및 임대업124(5.07)34.8334.63-0.20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8(2.37)47.6251.473.85P.교육 서비스업94(3.84)43.0146.593.58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7(9.68)47.4048.491.09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0(2.45)27.0628.091.03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4(9.15)38.6139.611.00	H.운수업	42(1.72)	29.84	29.57	-0.27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8(2.37)47.6251.473.85P.교육 서비스업94(3.84)43.0146.593.58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7(9.68)47.4048.491.09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0(2.45)27.0628.091.03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24(9.15)38.6139.611.00	l.숙박 및 음식점업	608(24.85)	23.28	24.47	1.19
P.교육 서비스업 94(3.84) 43.01 46.59 3.58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7(9.68) 47.40 48.49 1.0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2.45) 27.06 28.09 1.0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4(9.15) 38.61 39.61 1.00	L.부동산 및 임대업	124(5.07)	34.83	34.63	-0.2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7(9.68) 47.40 48.49 1.0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2.45) 27.06 28.09 1.0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4(9.15) 38.61 39.61 1.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8(2.37)	47.62	51.47	3.85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2.45) 27.06 28.09 1.03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4(9.15) 38.61 39.61 1.00	P.교육 서비스업	94(3.84)	43.01	46.59	3.58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4(9.15) 38.61 39.61 1.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7(9.68)	47.40	48.49	1.0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2.45)	27.06	28.09	1.03
전체 2,447(100.00) 26.86 28.13 1.27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4(9.15)	38.61	39.61	1.00
	전체	2,447(100.00)	26.86	28.13	1.27

<표 3-3> 사업체 노조 유무(사업체규모별)

(단위 : 개소, %)

노조 유무 사업체규모	있음	없음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9(1.89)	466(98.11)	475(100.00)
	13(0.98)	1,316(99.02)	1,329(100.00)
	6(2.05)	286(97.95)	292(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7(4.09)	164(95.91)	171(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11(17.19)	53(82.81)	64(100.00)
	6(37.50)	10(62.50)	16(100.00)
전체(2017)	52(2.22)	2,295(97.78)	2,347(100.00)

(단위: 개소.%)

			(211:711-2, 70)
노조 유무 산업대분류	있음	없음	전체
C.제 조 업	9(2.59)	339(97.41)	348(100.00)
G.도매 및 소매업	11(1.79)	605(98.21)	616(100.00)
H.운수업	5(12.50)	35(87.50)	40(100.00)
 .숙박 및 음식점업	10(1.70)	578(98.30)	588(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4(3.39)	114(96.61)	118(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66)	50(94.34)	53(100.00)
P.교육 서비스업	3(3.41)	85(96.59)	88(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32)	224(98.68)	227(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45)	56(96.55)	58(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95)	209(99.05)	211(100.00)
전체	52(2.22)	2,295(97.78)	2,347(100.00)

주 : 결측치 제외

나. 사업체 경영사정

1) 경영사정

-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의 경영사정 변화를 보면, 응답 사업체(2,421개소) 가운데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55.22%로 절반을 넘어서며, 반대로 경영사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5.66%였음(〈표 3-5〉와 〈표 3-6〉참조)
 - 사업체규모별 특성으로는 100~299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상용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체일수록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임
 - 경영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67.33%)이었음

<표 3-5> 2016년 대비 경영사정(사업체규모별)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전년과 좋아졌다 나빠졌다 전체 비슷하다 사업체규모 165(33.54) 상용근로자수 0인 309(62.80) 492(100.00) 18(3.66) 상용근로자수 1~4인 73(5.29) 543(39.38) 763(55.33) 1,379(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23(7.74) 126(42.42) 148(49.84) 297(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15(8.67) 78(45.09) 80(46.24) 173(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8(12.50) 27(42.19) 29(45.31) 64(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0(0.00)8(50.00) 8(50.00) 16(100.00) 전체(2017) 137(5.66) 947(39.12) 1.337(55.22) 2.421(100.00) 전체(2016) 153(6.35) 889(36.92) 1,366(56.73) 2,408(100.00)

(단위: 개소, %)

주 : 결측치 제외

<표 3-6> 2016년 대비 경영사정(업종별)

(단위: 개소, %)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전년과 좋아졌다 나빠졌다 전체 비슷하다 산업대분류 C.제 조 업 35(9.78) 124(34.64) 199(55.58) 358(100.00) G.도매 및 소매업 357(56.48) 30(4.75) 245(38.77) 632(100.00) H.운수업 5(11.90) 22(52.38) 15(35.72) 42(100.00) I.숙박 및 음식점업 406(67.33) 603(100.00) 27(4.48) 170(28.19) L.부동산 및 임대업 5(4.10) 86(70.49) 31(25.41) 122(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7(12.28) 22(38.60) 28(49.12) 57(100.00)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2(2.13) 48(51.06) 44(46.81) 94(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64) 104(43.88) 122(51.48) 237(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2(3.45) 30(51.72) 26(44.83) 58(100.00)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13(5.96) 100(45.87) 105(48.17) 218(100.0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137(5.66) 947(39.12) 1,337(55.22) 2,421(100.00)

2) 경영 사정 변화 사유

- 2016년 대비 2017년도 경영사정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 사업체 (2,421개소) 중 '좋아졌다'고 대답한 사업체가 137개소(5.66%)였으며(〈표 3-6〉참조), 그 사유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응답이 84.33%로 가장 높았음(〈표 3-7〉참조)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5~9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의 95.65%가 손익의 호전 사유가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1~4인의 상용근로자를 지닌 사업체의 경우 78.57%만 그렇게 응답하였음
 - 업종별로 보면, 경영사정의 호전의 사유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0%) 이었음(〈표 3-8〉 참조)

<표 3-7>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 사업체규모	제품·서비스 에 대한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인건비 절감	임차료 절감	기타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16(88.89)	0(0.00)	0(0.00)	0(0.00)	3(16.67)	18(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55(78.57)	4(5.71)	4(5.71)	1(1.43)	13(18.57)	70(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22(95.65)	0(0.00)	0(0.00)	0(0.00)	2(8.70)	23(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13(86.67)	1(6.67)	1(6.67)	0(0.00)	2(13.33)	15(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7(87.50)	0(0.00)	0(0.00)	0(0.00)	1(12.50)	8(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0	0	0	0	0	0
전체(2017)	113(84.33)	5(3.73)	5(3.73)	1(0.75)	21(15.67)	134(100.00)

주 : 1) 결측치 제외

²⁾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단위: 개소, %)

2016년 대비 경영사정 호전 사유 산업대분류	제품·서비 스에 대한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인건비 절감	임차료 절감	기타	전체
C.제 조 업	27(84.38)	2(6.25)	2(6.25)	0(0.00)	4(12.50)	32(100.00)
G.도매 및 소매업	24(80.00)	1(3.33)	2(6.67)	0(0.00)	5(16.67)	30(100.00)
H.운수업	3(60.00)	O(O.OO)	O(O.OO)	1(20.00)	1(20.00)	5(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24(92.31)	0(0.00)	O(O.OO)	0(0.00)	3(11.54)	26(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5(100.00)	0(0.00)	0(0.00)	0(0.00)	0(0.00)	5(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75.00)	2(25.00)	0(0.00)	0(0.00)	1(12.50)	8(100.00)
P.교육 서비스업	2(100.00)	O(O.OO)	O(O.OO)	O(0.OO)	0(0.00)	2(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72.73)	0(0.00)	O(O.OO)	0(0.00)	4(36.36)	11(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00.00)	0(0.00)	0(0.00)	0(0.00)	0(0.00)	2(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92.31)	0(0.00)	1(7.69)	0(0.00)	3(23.08)	13(100.00)
전체	113(84.33)	5(3.73)	5(3.73)	1(0.75)	21(15.67)	134(100.00)

주 : 1) 결측치 제외

- 2016년 대비 2017년도 경영사정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 사업체(2,421개소) 중 '나빠졌다'고 대답한 사업체가 55.22%(1,337개소)이었으며, 그 사유로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가 50.15%로 가장 높았고, '인건비상승'이 42.08%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표 3-9〉참조)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체일수록 경영사정 악화 사유를 '임차료 상승' 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임
 - 업종별로 보면, 경영사정 악화 사유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64.12%)이었음(〈표 3-10〉 참조)

²⁾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표 3-9>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_____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제품·서비스 원자재 악화 사유 인건비 임차료 에 대한 가격 기타 전체 상승 상승 수요 감소 상승 사업체규모 상용근로자수 0인 138(45.10) 126(41.18) 135(44,12) 47(15.36) 44(14.38) 306(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400(52.84) 262(34.61) 292(38.57) 71(9.38) 160(21.14) 757(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68(45.64) 45(30.20) 70(46.98) 6(4.03) 37(24.83) 149(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46(57.50) 29(36.25) 40(50.00) 1(1.25) 14(17.50) 80(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11(42.31) 8(30.77) 15(57.69) 0(0.00)7(26.92) 26(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2(25.00) 2(25.00) 6(75.00) 0(0.00)1(12.50) 8(100.00) 전체 665(50.15) 472(35.60) 558(42.08) 125(9.43) 263(19.83) 1,326(100.00)

주 : 1) 결측치 제외

2)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표 3-10>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업종별)

(단위: 개소, %)

2016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 산업대분류	제품·서비 스에 대한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임차료 상승	기타	전체
C.제 조 업	118(59.60)	98(49.49)	65(32.83)	6(3.03)	36(18.18)	198(100.00)
G.도매 및 소매업	227(64.12)	97(27.40)	108(30.51)	35(9.89)	67(18.93)	354(100.00)
H.운수업	9(60.00)	1(6.67)	4(26,67)	1(6.67)	5(33.33)	15(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155(38.46)	211(52.36)	213(52.85)	47(11.66)	52(12.90)	403(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13(43.33)	4(13.33)	5(16.67)	2(6.67)	15(50.00)	30(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46.43)	7(25.00)	13(46.43)	0(0.00)	8(28.57)	28(100.00)
P.교육 서비스업	25(58.14)	3(6.98)	15(34.88)	6(13.95)	14(32.56)	43(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33.06)	23(19.01)	79(65.29)	8(6.61)	32(26.45)	121(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60.00)	1(3.33)	14(46.67)	9(30.00)	6(20.00)	30(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45.19)	27(25.96)	42(40.38)	11(10.58)	28(26.92)	104(100.00)
전체	665(50.15)	472(35.60)	558(42.08)	125(9.43)	263(19.83)	1,326(100.00)

주 : 1) 결측치 제외

2)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고용 현황

가. 근로자 수

○ 응답 사업체 2,421개소의 평균근로자 수는 7.56명이었음(<표 3-11>~<표 3-13> 참조)

※ 2016년의 조사 대상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2017년 조사 대상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가 0.95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근로자는 0.84명 감소하였고, 여성 근로자는 0.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자 수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53.10%)이 여성의 비율(46.90%)보다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65.34%)이 남성의 비율(34.66%)보다 높음
- 성별·규모별 평균 근로자 수를 보면, 상용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음
- 성별·업종별 평균 근로자 수를 보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운수업(83.85%), 제조업(71.33%), 부동산 및 임대업(65.86%)의 순임.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7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1.07%), 숙박 및 음식점업(70.28%)의 순임

<표 3-11>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고용형태별)

(단위:명,%)

고용형태 / 성별	남성		여	성	전체		
	큠	%	큥	%	명	%	
정규직	3.08	53.10	2.72	46.90	5.80	100.00	
비정규직	0.61	34.66	1.15	65.34	1.76	100.00	
전체(2017년)	3.69	48.81	3.87	51.19	7.56	100.00	
전체(2016년)	4.53	53,23	3.98	46.77	8.51	100.00	

주 : 1) 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제외하였음

2) 전체 행에서 ()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남성 · 여성의 비중을 각각 나타냄

<표 3-12>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규모별)

(단위 : 명, %)

사업체 평균	남 자		여	자	전체		
근로자 사업체규모	명	%	명	%	명	%	
상용근로자수 0인	0.75	29.53	1.79	70.47	2.54	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1.59	41.09	2.28	58.91	3.87	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4.64	48.28	4.97	51.72	9.61	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11.59	58.15	8.34	41.85	19.93	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31.35	54.97	25.68	45.03	57.03	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75.93	55.32	61.33	44.68	137.26	100.00	
전체 	3.69	48.81	3.87	51.19	7.56	100.00	

주 : 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제외하였음

<표 3-13> 사업체 평균 근로자 수(성별·업종별)

(단위 : 명, %)

사업체 평균	남	자	여	자	전체	
성별 근로자 산업대분류	명	%	명	%	명	%
C.제 조 업	9.43	71.33	3.79	28.67	13.22	100.00
G.도매 및 소매업	2.32	48.64	2.45	51.36	4.77	100.00
H.운수업	22.48	83.85	4.33	16.15	26.81	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1.26	29.72	2.98	70.28	4.24	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4.92	65.86	2.55	34.14	7.47	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4	45.44	14.89	54.56	27.29	100.00
P.교육 서비스업	3.29	35.38	6.01	64.62	9.3	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2	14.24	7.35	85.76	8.57	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7	51.50	2.42	48.50	4.99	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5	28.93	4.3	71.07	6.05	100.00
전체	3.69	48.81	3.87	51.19	7.56	100.00

주 : 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제외하였음

3.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 임금결정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액 1배 초과~1.5배 이하'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인상액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3-14〉참조)
 -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근로자는 56.62%가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3.52%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함
 - '최저임금액 1배 초과~1.5배 이하'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하였다는 응답이 34.89%,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응답이 32.42%로 나타남

<표 3-14>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임금 수준별)

(단위: 개소, %)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 인상 정도 임금수준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전체 ²⁾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	93(10.62)	496(56.62)	81(9.25)	206(23.52)	876(100.00)	1,505	2,381
최저임금액 1배 초과 - 1,5배 이하 근로자	635(34.89)	590(32.42)	80(4.40)	515(28.30)	1,820(100.00)	540	2,360

주 :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 임금결정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임금수준과 사업체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임금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이 높았음(〈표 3-15a〉 참조)
 - '최저임금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은 1~4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가 54.51%로 가장 낮았으며,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사업체는 80.00%로 가장 높았음
 - 상용근로자수 0인 사업체는 '최저임금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률이 54.85%로 1~4인 사업체에 비해 높았음

<표 3-15a>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임금결정, 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임금 사업체규모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전체 ²⁾
상용근로자수 0인	11(5.34)	113(54.85)	21(10.19)	61(29.61)	206(100.00)	280	486
상용근로자수 1~4인	45(9.66)	254(54.51)	40(8.58)	127(27.25)	466(100.00)	888	1,354
상용근로자수 5~9인	17(17.53)	57(58.76)	13(13.40)	10(10.31)	97(100.00)	196	293
상용근로자수 10~29인	11(16.42)	44(65.67)	5(7.46)	7(10.45)	67(100.00)	104	171
상용근로자수 30~99인	8(22.86)	24(68.57)	2(5.71)	1(2.86)	35(100.00)	27	62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1(20.00)	4(80.00)	O(O.OO)	0(0.00)	5(100.00)	10	15
전체	93(10.62)	496(56.62)	81(9.25)	206(23.52)	876(100.00)	1,505	2,381

- 주 :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 최저임금액 1배 초과 ~ 1.5배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했다는 응답이 34.89%로 가장 높았음(〈표 3-15b〉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했다는 응답은 5~9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가 41.53%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사업체는 21.43%로 가장 낮았음

<표 3-15b>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배 초괴-1.5배 이하 근로자. 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 11 -	· 11—, /0/
최저임금액의 1배-1.5배 근로자의 임금 사업체규모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전체 ²⁾
상용근로자수 0인	114(36.54)	94(30.13)	8(2.56)	96(30.77)	312(100.00)	163	475
	355(33.94)	318(30.40)	36(3.44)	337(32.22)	1,046(100.00)	298	1,344
상용근로자수 5~9인	103(41.53)	89(35.89)	10(4.03)	46(18.55)	248(100.00)	47	295
	40(27.21)	66(44.90)	13(8.84)	28(19.05)	147(100.00)	25	172
상용근로자수 30~99인	20(37.74)	19(35.85)	8(15.09)	6(11.32)	53(100.00)	7	60
상용근로자수100~299인	3(21.43)	4(28.57)	5(35.71)	2(14.29)	14(100.00)	0	14
전체	635(34.89)	590(32.42)	80(4.40)	515(28.30)	1,820(100.00)	540	2,360

- 주 :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를 사업체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9.65%로 가장 높았음(〈표 3-15c〉 참조).
 -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30~99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가 57.14%로 가장 높았으며,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사업체가 50.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5c>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근로자, 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금년도 최저임금 기타 전체 근로자 산입범위에 맞추어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조정하였기 때문에 사업체규모 상용근로자수 0인 49(36.03) 31(22.79) 56(41.18) 136(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172(42.16) 89(21.81) 147(36.03) 408(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14(28.57) 17(34.69) 18(36.73) 49(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7(22.58) 10(32.26) 14(45.16) 31(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1(14.29) 4(57.14) 2(28.57) 7(100.00) 상용근로자수100~299인 1(50.00) 0(0.00) 1(50.00) 2(100.00) 전체 251(39.65) 148(23.38) 234(36.97) 633(100.00)

-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업체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33.63%로 가장 높았으며, 업체규모가 클수록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표 3-15d〉) 참조)
 - 상용근로자수 100~299인에 이르는 업체의 경우 60.00%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상용근로자수 0인의 업체의 경우 31.21%만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 상용근로자수 0인의 업체의 38.00%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상용근로자수 100~299인에 이르는 업체는 6.67%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

<표 3-15d>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11 11 = 70)
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사업체규모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147(31.21)	145(30.79)	179(38.00)	471(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422(31.40)	451(35.56)	471(35.04)	1,344(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109(37.07)	108(36.73)	77(26.19)	294(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70(41.18)	63(37.06)	37(21.76)	170(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32(52.46)	20(32.79)	9(14.75)	61(100.00)
상용근로자수100~299인	9(60.00)	5(33.33)	1(6.67)	15(100.00)
전체 	789(33.50)	792(33.63)	774(32.87)	2,355(100.00)

- 임금결정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임금수준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했다는 응답이 56.62%로 가장 높았음(〈표 3-16a〉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은 운수업(71.43%) 에서 가장 높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8.54%), 숙박 및 음식점업(61.37%) 순임
 -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했다는 응답은 운수업(28.5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임금을 적게 인상'했다는 응답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가장 높았음(18.75%)

<표 3-16a>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 또는 이하 근로자의 임금결정, 업종별)

(단위 : 개소, %)

						. —	. ,
최저임금액 또는 이히 근로자의 임금 산업대분류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소계 ¹⁾	해당 근로자 없음	전체 ²⁾
C.제 조 업	22(18.33)	65(54.17)	12(10.00)	21(17.50)	120(100.00)	227	347
G.도매 및 소매업	22(10.53)	107(51.20)	21(10.05)	59(28.23)	209(100.00)	419	628
H.운수업	2(28.57)	5(71.43)	0(0.00)	0(0.00)	7(100.00)	35	42
l.숙박 및 음식점업	22(9.44)	143(61.37)	19(8.15)	49(21.03)	233(100.00)	359	592
L.부동산 및 임대업	1(1.56)	31(48.44)	12(18.75)	20(31.25)	64(100.00)	59	123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3.04)	12(52.17)	0(0.00)	8(34.78)	23(100.00)	35	58
P.교육 서비스업	6(21.43)	15(53.57)	2(7.14)	5(17.86)	28(100.00)	58	8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1.24)	61(68.54)	6(6.74)	12(13.48)	89(100.00)	141	23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55)	13(59.09)	1(4.55)	7(31.82)	22(100.00)	35	57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94)	44(54.32)	8(9.88)	25(30.86)	81(100.00)	137	218
전체	93(10.62)	496(56.62)	81(9.25)	206(23.52)	876(100.00)	1,505	2,381

주 :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 '최저임금액 1배 초과~1.5배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했다는 응답이 34.89%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을 인상'했다는 응답이 32.42%로 그 뒤를 이음(〈표 3-16b〉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하였다고 응답한 업종은 운수업(45.16%)에서 가장 높았고, 교육 서비스업(39.44%), 숙박 및 음식점업(37.47%) 순임
 -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임금을 인상'했다는 응답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39.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았음(45.95%)

<- 조 3-16b>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배 초과-1.5배 이하 근로자의 임금결정, 업종별) (단위: 개소, %)

최저임금액의 1배-1.5배 근로자의 임금 해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임금을 소계¹⁾ 근로자 전체²⁾ 인상액보다 인상액만큼 인상액보다 인상하지 없음 많이 인상 인상 적게 인상 않음 산업대분류 C.제 조 업 97(34.77) 82(29.39) 18(6.45) 82(29.39) 279(100.00) 67 346 G.도매 및 소매업 143(29.85) 19(3.97) 161(33.61) 156(32.57) 479(100.00) 145 624 H.운수업 14(45.16) 10(32.26) 1(3.23) 6(19.35) 31(100.00) 42 11 l.숙박 및 음식점업 11(2.53) 163(37.47) 145(33.33) 116(26.67) 435(100.00) 145 580 L부동산 및 임대업 19(21.84) 32(36.78) 7(8.05) 29(33.33) 87(100.00) 36 123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16(34.04) 18(38.30) 2(4.26)11(23.40) 47(100.00) 58 11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22(30.99) 5(7.04) 16(22.54) 28(39.44) 71(100.00) 15 8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69(36.70) 74(39.36) 9(4.79) 40 228 36(19.15) 188(100.00)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기관련 9(24.32) 1(2.70) 17(45.95) 54 10(27.03) 37(100.00) 17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59(35.54) 54(32.53) 7(4.22) 46(27.71) 166(100.00) 53 219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635(34.89) 590(32.42) 80(4.40) 515(28.30) 1,820(100.00) 540 2,360

○ '최저임금액 1.5배 이하'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교육·서비스업에서 52.63%로 가장 높았고,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운수업에서 50.00%로 가장 높았음(〈표 3-16c〉참조).

주 : 1) 소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비율은 "해당 없음" 외에 임금 인상 정도를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표 3-16c>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근로자, 업종별)

(단위 : 개소 %)

			(근거·게ㅗ, ⁄◎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근로자 산업대분류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	기타	전체
C.제 조 업	42(47.73)	19(21.59)	27(30.68)	88(100.00)
G.도매 및 소매업	77(41.18)	34(18.18)	76(40.64)	187(100.00)
H.운수업	2(33.33)	3(50.00)	1(16.67)	6(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69(46.00)	34(22.67)	47(31.33)	150(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8(20.00)	14(35.00)	18(45.00)	40(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8.75)	5(31.25)	8(50.00)	16(100.00)
P.교육 서비스업	10(52.63)	5(26.32)	4(21.05)	19(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35.71)	13(30.95)	14(33.33)	42(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36.36)	7(31.82)	7(31.82)	22(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26.98)	14(22,22)	32(50.79)	63(100.00)
전체	251(39.65)	148(23.38)	234(36.97)	633(100.00)

주 : 결측치 제외

○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에 대해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 서비스업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41.11%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최저임금액 1.5배 초과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44.26%)(〈표 3-16d〉 참조)

<표 3-16d>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업종별)

(단위: 개소, %)

				(인커 · /미ㅗ, /0)
최저임금액의 1.5배 초과 근로자 산업대분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C.제 조 업	121(34.57)	139(39.71)	90(25.71)	350(100.00)
G.도매 및 소매업	170(27.73)	207(33.77)	236(38.50)	613(100.00)
H.운수업	9(21.43)	13(30.95)	20(47.62)	42(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237(41.00)	155(26.82)	186(32.18)	578(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37(30.33)	54(44,26)	31(25.41)	122(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35.09)	23(40.35)	14(24.56)	57(100.00)
P.교육 서비스업	37(41.11)	29(32,22)	24(26.67)	90(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1(39.39)	73(31.60)	67(29.00)	231(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20.34)	21(35.59)	26(44.07)	59(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25.82)	78(36.62)	80(37.56)	213(100.00)
전체	789(33.50)	792(33.63)	774(32.87)	2,355(100.00)

주 : 결측치 제외

4.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변화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고용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전체 응답 사업체(2,418개소) 중 68.36%로 가장 많았음(〈표 3-17〉 참조)
 - '고용에 변동이 없다'는 응답은 2016에 비해 6.3% 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21.75%로, 2016년과 비교하여 7.64% 포인트 증가하였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상용근로자수 $100\sim299$ 인의 사업체에서 가장 높았음(33.33%)
 - 업종별로는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부동산 및 임대업(86.18%)에서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34.49%)에서 가장 높았음

<표 3-17>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 사업체규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	고용에 변동이 없음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148(30.02)	301(61.05)	8(1.62)	36(7.30)	493(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286(20.74)	970(70.34)	38(2.76)	85(6.16)	1,379(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46(15.44)	220(73.83)	9(3.02)	23(7.72)	298(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31(18.02)	117(68.02)	9(5.23)	15(8.72)	172(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10(16.39)	37(60.66)	11(18.03)	3(4.92)	61(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5(33.33)	8(53.33)	2(13.33)	0(0.00)	15(100.00)
 전체(2017)	526(21.75)	1,653(68.36)	77(3.18)	162(6.70)	2,418(100.00)
전체(2016)	338(14.11)	1,788(74.66)	98(4.09)	171(7.14)	2,395(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3-18>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업종별)

(단위: 개소, %) 최저임금 적용에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최저임금과 고용에 따른 고용 효과 인상에 따른 관계없이 관계없이 전체 부담으로 변동이 없음 고용이 증가 고용이 감소 고용이 감소 산업대분류 C.제 조 업 59(16.67) 239(67.51) 20(5.65) 36(10.17) 354(100.00) G.도매 및 소매업 479(75.67) 31(4.90) 111(17.54) 12(1.90) 633(100.00) H.운수업 3(7.32) 4(9.76) 32(78.05) 2(4.88) 41(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208(34.49) 331(54.89) 15(2.49) 49(8.13) 603(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4(3.25) 11(8.94) 106(86.18) 2(1.63) 123(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15.52) 41(70.69) 6(10.34) 2(3.45) 58(100.00) P.교육 서비스업 18(20.00) 67(74.44) 3(3,33) 2(2,22) 90(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6(23.93) 8(3.42) 14(5.98) 156(66.67) 234(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20.00) 42(70.00) 2(3.33) 4(6.67) 60(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38(17.12) 160(72.07) 6(2.70) 18(8.11) 222(100.0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77(3.18) 526(21.75) 1,653(68.36) 162(6.70) 2,418(100.00)

<표 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과 인건비 변동의 상관관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 여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	고용에 변동이 없음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	전체
증가하였다	405(35.22)	618(53.74)	48(4.17)	79(6.87)	1,150(100.00)
	37(63.79)	17(29.31)	0(0.00)	4(6.90)	58(100.00)
영향이 없었다	81(6.77)	1,009(84.29)	29(2.42)	78(6.52)	1,197(100.00)
전체	523(21.75)	1,644(68.36)	77(3.20)	161(6.69)	2,405(100.00)

주 : 결측치 제외

5. 최저임금 상승 영향

- 2017년에 적용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이익(이윤)에 52.77%의 사업체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순이익(이윤)이 '감소'했다는 사업체가 45.59%인 것으로 나타남(〈표 3-20〉 참조)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100~299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의 26.67%가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의 규모에서는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음(〈표 3-21〉 참조).
 -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100~299인 사업체(66.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수 30~99인 사업체(56.25%)가 그 다음으로 높았음(〈표 3-21〉 참조).
- 최저임금액 상승의 효과가 제품, 서비스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84.54%로, 대체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제품, 서비스 가격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상용근로자 1~4인 사업체(86.78%)와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85.22%)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최저임금액 상승의 효과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9.9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사업체도 47.67% 수준이었음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최저임금액 상승이 신규채용에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74.75%였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23.27%이었음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5~9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에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80.74%로 가장 높았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0인 상용근로자 사업체에서 30.24%로 가장 높았음
- 최저임금액 상승으로 인한 근로시간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9.54%였고, 19.35%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5~9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에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83.78%로 가장 높았고, '감소'했다는 응답의 경우 상용근로자 100~299인(33.33%), 상용근로자수 0인(28.89%)의 순임
- 사업체규모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산정방식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89.01%가 응답하였으며, 100~299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의 40.00%가 임금산정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의 규모에서는 90% 내외로 나타남

<표 3-20> 최저임금 상승 영향(총괄)

(단위: 개소, %)

순이익(이윤) 40(1.64) 1,110(45.59) 1,285(52.77) 2,435(100.00) 제품(서비스) 가격 283(11.73) 90(3.73) 2,040(84.54) 2,413(100.00) 인건비 1,158(47.67) 59(2.43) 1,212(49.90) 2,429(100.00) 신규채용 48(1.98) 564(23.27) 1,812(74.75) 2,424(100.00) 근로시간 27(1.11) 469(19.35) 1,928(79.54) 2,424(100.00) **** **** **** **** *** ***	최저임금 상승 영향 항목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가격 283(11.73) 90(3.73) 2,040(84.54) 2,413(100.00) 인건비 1,158(47.67) 59(2.43) 1,212(49.90) 2,429(100.00) 신규채용 48(1.98) 564(23.27) 1,812(74.75) 2,424(100.00) 근로시간 27(1.11) 469(19.35) 1,928(79.54) 2,424(100.00) 최저임금 상승 영향 변화 없음 수당/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 임금체계 변경 전체	순이익(이윤)	40(1.64)	1,110(45.59)	1,285(52.77)	2,435(100.00)
신규채용 48(1.98) 564(23.27) 1,812(74.75) 2,424(100.00) 근로시간 27(1.11) 469(19.35) 1,928(79.54) 2,424(100.00) 최저임금 상승 영향 변화 없음 주당/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 임금체계 변경 전체		283(11.73)	90(3.73)	2,040(84.54)	2,413(100.00)
근로시간 27(1.11) 469(19.35) 1,928(79.54) 2,424(100.00) 최저임금 상승 영향 변화 없음 주당/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 임금체계 변경 전체	인건비	1,158(47.67)	59(2.43)	1,212(49.90)	2,429(100.00)
최저임금 상승 영향 변화 없음 <mark>수당/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임금체계 변경</mark> 전환	신규채용	48(1.98)	564(23.27)	1,812(74.75)	2,424(100.00)
상승 영향 변화 없음 <mark>주당/상여금을</mark> 임금체계 전환 변경 전체	근로시간	27(1.11)	469(19.35)	1,928(79.54)	2,424(100.00)
상승 영향 변화 없음 <mark>주당/상여금을</mark> 임금체계 전환 변경 전체					
임금산정방식 2,040(89.01) 199(8.68) 53(2.31) 2,292(100.00)	상승 영향	변화 없음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체
	임금산정방식	2,040(89.01)	199(8.68)	53(2.31)	2,292(100.00)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상승 영향		순이익	님(이윤)				서비스) -격	
사업체규모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상용근로자수	13	260	223	496	70	19	406	495
0인	(2.62)	(52.42)	(44.96)	(100.00)	(14.14)	(3.84)	(82.02)	(100.00)
상용근로자수	20	586	785	1,391	137	45	1,195	1,377
1~4인	(1.44)	(42.13)	(56.43)	(100.00)	(9.95)	(3.27)	(86.78)	(100.00)
상용근로자수	4	133	159	296	30	13	248	291
5~9인	(1.35)	(44.93)	(53.72)	(100.00)	(10.31)	(4.47)	(85,22)	(100.00)
상용근로자수	1	85	87	173	27	9	136	172
10~29인	(0.58)	(49.13)	(50,29)	(100.00)	(15.70)	(5.23)	(79.07)	(100.00)
상용근로자수	1	36	27	64	14	3	46	63
30~99인	(1.56)	(56.25)	(42.19)	(100.00)	(22.22)	(4.76)	(73.02)	(100.00)
상용근로자수	1	10	4	15	5	1	9	15
100~299인	(6.67)	(66.67)	(26.67)	(100.00)	(33.33)	(6.67)	(60.00)	(100.00)
전체	40	1,110	1,285	2,435	283	90	2,040	2,413
	(1.64)	(45.59)	(52.77)	(100.00)	(11.73)	(3.73)	(84.54)	(100.00)

최저임금 상승 영향		인건	<u>선</u> 비			신규	채용	
사업체규모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상용근로자수	234	12	247	493	11	150	335	496
0인	(47.46)	(2.43)	(50.10)	(100.00)	(2.22)	(30.24)	(67.54)	(100.00)
상용근로자수	603	40	742	1,385	23	300	1,059	1,382
1~4인	(43.54)	(2.89)	(53.57)	(100.00)	(1.66)	(21.71)	(76.63)	(100.00)
상용근로자수	156	5	138	299	5	52	239	296
5~9인	(52.17)	(1.67)	(46.15)	(100.00)	(1.69)	(17.57)	(80.74)	(100.00)
상용근로자수	109	1	63	173	3	44	125	172
10~29인	(63.01)	(0.58)	(36.42)	(100.00)	(1.74)	(25.58)	(72.67)	(100.00)
상용근로자수	45	1	18	64	5	14	44	63
30~99인	(70.31)	(1.56)	(28.13)	(100.00)	(7.94)	(22.22)	(69.84)	(100.00)
상용근로자수	11	0	4	15	1	4	10	15
100~299인	(73.33)	(0.00)	(26.67)	(100.00)	(6.67)	(26.67)	(66.67)	(100.00)
전체	1,158	59	1,212	2,429	48	564	1,812	2,424
	(47.67)	(2.43)	(49.90)	(100.00)	(1.98)	(23.27)	(74.75)	(100.00)

최저임금 상승 영향		근로	.시간		임금산정 방식			
사업체규모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변화 없음	수당/상여 금을 줄이고 기본급으 로 전환	임금 체계 변경	전체
상용근로자수	8	143	344	495	413	27	7	447
0인	(1.62)	(28.89)	(69.49)	(100.00)	(92.39)	(6.04)	(1.57)	(100.00)
상용근로자수	14	230	1,138	1,382	1,173	115	29	1,317
1~4인	(1.01)	(16.64)	(82.34)	(100.00)	(89.07)	(8.73)	(2.20)	(100.00)
상용근로자수	1	47	248	296	246	29	10	285
5~9인	(0.34)	(15.88)	(83.78)	(100.00)	(86.32)	(10.18)	(3.51)	(100.00)
상용근로자수	3	31	138	172	150	12	3	165
10~29인	(1.74)	(18.02)	(80.23)	(100.00)	(90.91)	(7.27)	(1.82)	(100.00)
상용근로자수	0	13	51	64	52	9	2	63
30~99인	(0.00)	(20.31)	(79.69)	(100.00)	(82.54)	(14.29)	(3.17)	(100.00)
상용근로자수	1	5	9 (60.00)	15	6	7	2	15
100~299인	(6.67)	(33.33)		(100.00)	(40.00)	(46.67)	(13.33)	(100.00)
전체	27	469	1,928	2,424	2,040	199	53	2,292
	(1.11)	(19.35)	(79.54)	(100.00)	(89.01)	(8.68)	(2.31)	(100.00)

주 : 결측치 제외, 항목별로 결측치가 다르므로 전체 응답 수에 차이가 있음

- 2017년에 적용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이익(이윤)에 '영향이 없다'는 사업체가 52.77%로 절반을 웃도는 가운데, 순이익(이윤)이 '감소'했다는 사업체가 45.59%인 것으로 나타남(〈표 3-22〉 참조)
 - 업종별로 살펴보면, 순이익(이윤)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76.2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63.23%)의 순임(〈표 3-22〉 참조)
 -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63.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55.74%)
- 최저임금액 상승의 효과가 제품, 서비스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84.54%로, 대체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가격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92.86%로 운수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0.09%), 도매 및 소매업(88.21%)의 순임

- 최저임금액 상승의 효과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9.9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사업체도 47.67% 수준이었음
 - 업종별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율(64.41%)로 인건비 부담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율(63.09%)로 최저임금액 상승이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응답
- 최저임금액 상승이 신규채용에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74.75%였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23.27%이었음
 - 업종별로 보면 신규채용에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89.34%로 가장 높았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높았음(35.32%)
- 최저임금액 상승으로 인한 근로시간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9.54%였고, 19.35%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업종별로는, 운수업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영향 없음' 응답이 95.24%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30.1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 임금산정방식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고 89.01%가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업종과 상관없이 90% 내외가 '변화 없음'으로 응답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고(80.36%), '수당/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의 전환' 응답도 가장 높은 비율(17.86%)로 나타남

	(단위 : 개호, %)								
최저임금 상승 영향		순이의	니(이윤)			제품(서비	스) 가격		
산업대분류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C.제 조 업	7	146	206	359	38	27	294	359	
	(1.95)	(40.67)	(57.38)	(100.00)	(10.58)	(7.52)	(81.89)	(100.00)	
G.도매 및 소매업	10	250	380	640	64	11	561	636	
	(1.56)	(39.06)	(59.38)	(100.00)	(10.06)	(1.73)	(88.21)	(100.00)	
H.운수업	0	17	25	42	3	0	39	42	
	(0.00)	(40.48)	(59.52)	(100.00)	(7.14)	(0.00)	(92.86)	(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9	383	214	606	96	23	484	603	
	(1.49)	(63.20)	(35.31)	(100.00)	(15.92)	(3.81)	(80.27)	(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2	27	93	122	15	2	103	120	
	(1.64)	(22.13)	(76.23)	(100.00)	(12.50)	(1.67)	(85.83)	(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	1	21	34	56	10	4	44	58	
업지원 서비스업	(1.79)	(37.50)	(60.71)	(100.00)	(17,24)	(6.90)	(75.86)	(100.00)	
P.교육 서비스업	3	34	56	93	10	3	77	90	
	(3,23)	(36.56)	(60.22)	(100.00)	(11.11)	(3.33)	(85.56)	(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4	131	100	235	22	11	191	224	
서비스업	(1.70)	(55.74)	(42.55)	(100.00)	(9.82)	(4.91)	(85.27)	(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	1	22	36	59	5	7	47	59	
가관련 서비스업	(1.69)	(37.29)	(61.02)	(100.00)	(8.47)	(11.86)	(79.66)	(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3	79	141	223	20	2	200	222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5)	(35.43)	(63.23)	(100.00)	(9.01)	(0.90)	(90.09)	(100.00)	
전체	40	1,110	1,285	2,435	283	90	2,040	2,413	
	(1.64)	(45.59)	(52.77)	(100.00)	(11.73)	(3.73)	(84.54)	(100.00)	
	(1.64)	(45.59)	(52.77)	(100.00)	(11.73)	(3.73)	(84.54)	(100.00)	

최저임금		인경	<u>건</u> 비			신규	채용	
상승 영향 산업대분류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C.제 조 업	161	9	189	359	9	74	273	356
	(44.85)	(2.51)	(52.65)	(100.00)	(2.53)	(20.79)	(76.69)	(100.00)
G.도매 및 소매업	253	10	374	637	11	115	512	638
	(39.72)	(1.57)	(58.71)	(100.00)	(1.72)	(18.03)	(80.25)	(100.00)
H.운수업	16	1	25	42	0	6	36	42
	(38.10)	(2.38)	(59.52)	(100.00)	(0.00)	(14.29)	(85.71)	(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357	23	224	604	12	213	378	603
	(59.11)	(3.81)	(37.09)	(100.00)	(1.99)	(35.32)	(62.69)	(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53	1	68	122	1	12	109	122
	(43.44)	(0.82)	(55.74)	(100.00)	(0.82)	(9.84)	(89.34)	(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	29	0	28	57	3	8	47	58
업지원 서비스업	(50.88)	(0.00)	(49.12)	(100.00)	(5.17)	(13.79)	(81.03)	(100.00)
P.교육 서비스업	42	1	49	92	2	18	73	93
	(45.65)	(1.09)	(53.26)	(100.00)	(2.15)	(19.35)	(78.49)	(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147	4	82	233	6	59	165	230
서비스업	(63.09)	(1.72)	(35.19)	(100.00)	(2.61)	(25.65)	(71.74)	(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	16	5	38	59	1	12	46	59
가관련 서비스업	(27.12)	(8.47)	(64.41)	(100.00)	(1.69)	(20.34)	(77.97)	(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84	5	135	224	3	47	173	223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50)	(2.23)	(60.27)	(100.00)	(1.35)	(21.08)	(77.58)	(100.00)
전체	1,158	59	1,212	2,429	48	564	1,812	2,424
	(47.67)	(2.43)	(49.90)	(100.00)	(1.98)	(23.27)	(74.75)	(100.00)

최저임금		근로	.시간			임금산	정 방식	
상승 영향 산업대분류	증가	감소	영향없음	전체	변화 없음	수당/상여 금을 줄이고 기본급으 로 전환	임금 체계 변경	전체
C.제 조 업	5	62	291	358	301	27	12	340
	(1.40)	(17.32)	(81.28)	(100.00)	(88.53)	(7.94)	(3.53)	(100.00)
G.도매 및 소매업	5	99	530	634	550	41	12	603
	(0.79)	(15.62)	(83.60)	(100.00)	(91.21)	(6.80)	(1.99)	(100.00)
H.운수업	1	1	40	42	37	3	1	41
	(2.38)	(2.38)	(95.24)	(100.00)	(90.24)	(7.32)	(2.44)	(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9	182	412	603	500	44	14	558
	(1.49)	(30.18)	(68.33)	(100.00)	(89.61)	(7.89)	(2.51)	(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1	27	95	123	106	5	2	113
	(0.81)	(21.95)	(77.24)	(100.00)	(93.81)	(4.42)	(1.77)	(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	0.00)	9	49	58	45	10	1	56
업지원 서비스업		(15.52)	(84.48)	(100.00)	(80.36)	(17.86)	(1.79)	(100.00)
P.교육 서비스업	2	16	74	92	79	8	2	89
	(2.17)	(17.39)	(80.43)	(100.00)	(88.76)	(8.99)	(2.25)	(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2 (0.87)	30	199	231	185	37	5	227
서비스업		(12.99)	(86.15)	(100.00)	(81.50)	(16.30)	(2.20)	(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	1	11	47	59	49	4	0	53
가관련 서비스업	(1.69)	(18.64)	(79.66)	(100.00)	(92.45)	(7.55)	(0.00)	(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1	32	191	224	188	20	4	212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45)	(14.29)	(85.27)	(100.00)	(88.68)	(9.43)	(1.89)	(100.00)
전체	27	469	1,928	2,424	2,040	199	53	2,292
	(1.11)	(19.35)	(79.54)	(100.00)	(89.01)	(8.68)	(2.31)	(100.00)

주 : 결측치 제외. 항목별로 결측치가 다르므로 전체 응답 수에 차이가 있음

6.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

- 최저임금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조사 시점 당시 평균적으로 최저임금근로자 3.17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3〉 참조)
 - ※ 2016년 12월 기준의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3.70명)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0.53명 정도의 최저임금근로자를 적게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 고용형태	'17.11.15	'16.12말
정 규 직	1.35	1.68
비정규직	1.82	2.03
총 근로자 수	3.17	3.70
(이중 여성근로자 인원)	1.72	2.05

주 : 위 표는 각 시점 별로 1명 이상의 최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한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최저임금근로자 고용상황을 근로자 수 대비 비율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수 대비 비율이 23.65% 이었고,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수 대비 비율이 52.98%인 것으로 나타남(〈표 3-24〉 참조)

<표 3-24>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고용형태별) : 근로자 수 대비 비율

(단위 : %)

고용형태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	정 규 직	비정규직	근로지 (이중 여성:	
근로자 수 대비 비율	23.65	52.98	34.66	35.73

주 : 1) 근로자 수 대비 비율 = 최저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 / 근로자(고용형태별) × 100 2) 위 표는 1명 이상의 최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한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이거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51.01%, 45.37%를 차지(〈표 3-25〉참조)
 - ※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든 응답의 비율이 1.44% 포인트 감소
 - 업종별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해당 업무의 단순함을 이유로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64.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근로자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60.42%)으로 나타남(〈표 3-26〉참조)

(단위: 개소, %)

(단위: 개소, %)

					_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 사업체규모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기업이 한계상황에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하는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이 어서	기타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129(59.72)	15(6.94)	81(37.50)	0(0.00)	23(10.65)	216(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247(47.23)	40(7.65)	252(48.18)	6(1.15)	63(12.05)	523(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51(47.22)	17(15.74)	53(49.07)	2(1.85)	9(8.33)	108(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33(55.00)	3(5.00)	26(43.33)	10(16.67)	8(13.33)	60(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18(64.29)	2(7.14)	12(42.86)	3(10.71)	2(7.14)	28(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1(25.00)	0(0.00)	2(50.00)	0(0.00)	1(25.00)	4(100.00)
전체(2017)	479(51.01)	77(8.20)	426(45.37)	21(2.24)	106(11.29)	939(100.00)
전체(2016)	525(52.45)	113(11.29)	453(45.25)	21(2.10)	86(8.59)	1,001(100.00)

주 :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표 3-26>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업종별)

그러한 임금을 기업이 해당 근로자가 고용하는 최저임금근로자 주어도 인력을 한계상황에 맡는 업무가 근로자가 있어 인건비를 기타 활용 이유 구하는데 전체 외국인근로자 단순하기 별다른 문제가 절감할 수밖에 산업대분류 때문에 이어서 없어서 없기 때문에 C.제 조 업 65(51.18) 7(5.51) 67(52.76) 16(12.60) 10(7.87) 127(100.00) G.도매 및 소매업 132(58.15) 21(9.25) 88(38.77) 1(0.44) 26(11.45) 227(100.00) H.운수업 0(0.00)4(44.44) 1(11.11) 5(55.56) 1(11.11) 9(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132(52.38) 21(8.33) 117(46.43) 3(1.19) 15(5.95) 252(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13(20.63) 0(0.00)39(61.90) 26(41.27) 8(12.70) 63(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61.90) 1(4.76) 5(23.81) O(0.00)3(14.29) 21(100.00) P.교육 서비스업 13(46.43) 2(7.14) 15(53.57) O(0.00)6(21.43) 28(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23.96) 7(7.29) 58(60.42) 0(0.00)16(16.67) 96(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64.29) 0(0.00)10(35.71) 0(0.00)4(14.29) 28(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45.45) 4(4.55) 35(39.77) 88(100.00) 1(1.14) 17(19.32) 479(51.01) 77(8.20) 426(45.37) 21(2.24) 106(11.29) 939(100.00) 전체

²⁾ 결측치 제외

주 :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를 제외한 경우이며,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²⁾ 결측치 제외

7.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산성

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생산성

- 2017년의 최저임금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응답 사업체(53.33%)가 근로자의 생산성이 '적정한 수준'이라 응답한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18.41%)이 '생산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6.67%)에 비해서 높음(〈표 3-27〉과 〈표 3-28〉 참조)
 - 업종별로는 생산성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59.02%로 가장 높았고, '생산성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응답이 13.98%,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응답이 28.13%로 가장 높았음
 - ※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4.86% 포인트 증가하였고, '생산성이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과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각각 3.49% 포인트, 5.75% 포인트 감소

<표 3-27>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사업체규모별)

(단위 : 개소, %)

근로자 생산성 사업체규모	생산성이 높은 수준임	적정한 수준임	생산성이 낮은 수준임	모르겠음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11(4.80)	137(59.83)	45(19.65)	36(15.72)	229(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36(6.46)	293(52.60)	96(17.24)	132(23.70)	557(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16(13.79)	52(44.83)	24(20.69)	24(20.69)	116(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4(5.63)	42(59.15)	13(18.31)	12(16.90)	71(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0(0.00)	11(39.29)	6(21.43)	11(39.29)	28(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0(0.00)	1(25.00)	1(25.00)	2(50.00)	4(100.00)
전체(2017)	67(6.67)	536(53.33)	185(18.41)	217(21.59)	1,005(100.00)
전체(2016)	108(10.16)	628(59.08)	144(13.55)	183(17.22)	1,063(100.00)

주: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는 제외하였음

2) 결측치 제외

<표 3-28> 최저임금수준(이하 포함) 근로자의 생산성(업종별)

(단위: 개소, %) 근로자 생산성 생산성이 생산성이 적정한 수준 모르겠음 전체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산업대분류 C.제 조 업 6(4.23) 73(51.41) 31(21.83) 32(22.54) 142(100.00) G.도매 및 소매업 15(6.22) 131(54.36) 40(16.60) 55(22.82) 241(100.00) H.운수업 1(9.09) 5(45.45) 1(9.09) 4(36.36) 11(100.00) 1.숙박 및 음식점업 9(3.21) 161(57.50) 56(20.00) 54(19.29) 280(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36(59.02) 7(11.48) 5(8.20) 13(21.31) 61(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2(10.00) 7(35.00) 2(10.00) 9(45.00) 20(100.00)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3(10.00) 16(53.33) 6(20.00) 5(16.67) 30(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7(49.47) 11(11.58) 14(14.74) 23(24.21) 95(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2(6.25) 17(53.13) 9(28.13) 4(12.50) 32(100.00)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13(13.98) 43(46.24) 19(20.43) 18(19.35) 93(100.00) 개인 서비스업 67(6.67) 전체(2017) 536(53.33) 185(18.41) 217(21.59) 1,005(100.00) 전체(2016) 108(10.16) 628(59.08) 144(13.55) 183(17.22) 1.063(100.00)

주 : 1)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한 사업주는 제외하였음 2) 결측치 제외

-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와 최저임금액 평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들에게서 '적정한 수준'임 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표 3-29〉참조)
 -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업주들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38.10%)
- 사업주가 최저임금액을 높게 평가할수록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 최저임금액 평가 (2017년)		적정한 수준임	생산성이 낮은 수준임	모르겠음	전체
매우 높은 수준이다	7(6.67)	38(36.19)	40(38.10)	20(19.05)	105(100.00)
약간 높은 수준이다	14(5.32)	138(52.47)	54(20.53)	57(21.67)	263(100.00)
보통이다	36(6.62)	316(58.09)	74(13.60)	118(21.69)	544(100.00)
약간 낮은 수준이다	4(5.97)	35(52.24)	11(16.42)	17(25.37)	67(100.00)
매우 낮은 수준이다	6(30.00)	7(35.00)	3(15.00)	4(20.00)	20(100.00)
전체 	67(6.71)	534(53.45)	182(18.22)	216(21.62)	999(100.00)

8.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가. 최저임금 결정요인

○ 사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의 순으로 들고 있음(〈표 3-30〉, 〈표 3-31〉 참조)

<표 3-30>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체규모별)

<표 3-30> 최서임금 	결정요(긴(사업제⊤	수보 멸)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결정요인 사업체규모	근로자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 배상황	경제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사 정	기업의 지불 능력	기타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134 (27.07)	68 (13.74)	111 (22.42)	46 (9.29)	82 (16.57)	203 (41.01)	35 (7.07)	168 (33.94)	15 (3.03)	495 (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414 (29.85)	278 (20.04)	371 (26.75)	105 (7.57)	217 (15.65)	470 (33.89)	96 (6.92)	537 (38.72)	39 (2.81)	1,387 (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106 (35.33)	62 (20.67)	70 (23.33)	22 (7.33)	51 (17.00)	118 (39.33)	21 (7.00)	130 (43.33)	3 (1.00)	300 (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71 (41.04)	47 (27.17)	58 (33.53)	12 (6.94)	25 (14.45)	76 (43.93)	13 (7.51)	67 (38.73)	2 (1.16)	173 (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28 (45.16)	23 (37.10)	16 (25.81)	2 (3.23)	13 (20.97)	34 (54.84)	8 (12.90)	29 (46.77)	0 (0.00)	62 (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4 (25.00)	5 (31,25)	4 (25.00)	2 (12.50)	5 (31.25)	8 (50.00)	0 (0.00)	6 (37.50)	0 (0.00)	16 (100.00)
전체(2017)	757 (31.11)	483 (19.85)	630 (25.89)	189 (7.77)	393 (16.15)	909 (37.36)	173 (7.11)	937 (38.51)	59 (2.42)	2,433 (100.00)
전체(2016)	809 (33.40)	449 (18.54)	735 (30.35)	151 (6.23)	368 (15.19)	870 (35.92)	119 (4.91)	811 (33.48)	53 (2.19)	2,422 (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표 3-31> 최저임금 결정요인(업종별)

(단위 : 개소, %)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결정요인 산업대분류	근로자 생계비	일반 근로자 의 임금수 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 배상황	경제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사 정	기업의 지불 능력	기타	전체
C.제 조 업	126 (35.29)	83 (23.25)	113 (31.65)	20 (5.60)	65 (18.21)	116 (32.49)	27 (7.56)	154 (43.14)	8 (2.24)	357 (100.00)
G.도매 및 소매업	209 (32.71)	125 (19.56)	181 (28.33)	49 (7.67)	104 (16.28)	236 (36.93)	47 (7.36)	249 (38.97)	13 (2.03)	639 (100.00)
H.운수업	10 (23.81)	9 (21.43)	13 (30.95)	3 (7.14)	5 (11.90)	20 (47.62)	2 (4.76)	15 (35.71)	1 (2.38)	42 (100.00)
.숙박 및 음식점업	145 (24.09)	100 (16.61)	153 (25.42)	55 (9.14)	102 (16.94)	243 (40.37)	43 (7.14)	209 (34.72)	16 (2.66)	602 (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53 (42.74)	33 (26.61)	28 (22.58)	11 (8.87)	14 (11.29)	53 (42.74)	7 (5.65)	35 (28.23)	1 (0.81)	124 (100.00)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 (41.38)	20 (34.48)	12 (20.69)	2 (3.45)	5 (8.62)	26 (44.83)	6 (10.34)	22 (37.93)	2 (3.45)	58 (100.00)
P.교육 서비스업	29 (31.87)	10 (10.99)	31 (34.07)	10 (10.99)	16 (17.58)	33 (36.26)	7 (7.69)	34 (37.36)	2 (2.20)	91 (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0 (29.66)	53 (22.46)	37 (15.68)	18 (7.63)	36 (15,25)	84 (35.59)	12 (5.08)	109 (46.19)	5 (2.12)	236 (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 (33.33)	12 (20.00)	17 (28.33)	2 (3.33)	11 (18.33)	19 (31.67)	5 (8.33)	24 (40.00)	5 (8.33)	60 (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1 (31.70)	38 (16.96)	45 (20.09)	19 (8.48)	35 (15.63)	79 (35.27)	17 (7.59)	86 (38.39)	6 (2.68)	224 (100.00)
전체	757 (31.11)	483 (19.85)	630 (25.89)	189 (7.77)	393 (16.15)	909 (37.36)	173 (7.11)	937 (38.51)	59 (2.42)	2,433 (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나. 2017년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

- 2017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58.02%인 가운데 22.86%의 사업체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9.00%로 그 뒤를 이음(〈표 3-32〉와〈표 3-33〉참조)
 - 최저임금액 수준이 적정성이 '보통'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교육 서비스업에서 67.02%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62.92%), 도매 및 소매업(60.53%) 순이었음

<표 3-32>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체규모별)

(단위 : 개소. %)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사업체규모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53(10.75)	153(31.03)	252(51.12)	27(5.48)	8(1.62)	493(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104(7.49)	305(21.96)	811(58.39)	140(10.08)	29(2.09)	1,389(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21(7.02)	48(16.05)	195(65.22)	24(8.03)	11(3.68)	299(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8(4.65)	32(18.60)	106(61.63)	20(11.63)	6(3.49)	172(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2(3.13)	15(23.44)	38(59.38)	7(10.94)	2(3.13)	64(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2(13.33)	3(20.00)	9(60.00)	1(6.67)	0(0.00)	15(100.00)
전체	190(7.81)	556(22.86)	1,411(58.02)	219(9.00)	56(2.30)	2,432(100.00)

(단위 : 개소, %)

					(TI · /III., /0/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산업대분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C.제 조 업	35(9.83)	60(16.85)	224(62.92)	30(8.43)	7(1.97)	356(100.00)
G.도매 및 소매업	31(4.87)	155(24.37)	385(60.53)	57(8.96)	8(1.26)	636(100.00)
H.운수업	2(4.76)	12(28.57)	23(54.76)	4(9.52)	1(2.38)	42(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66(10.91)	170(28.10)	330(54.55)	32(5.29)	7(1.16)	605(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5(4.07)	21(17.07)	74(60.16)	18(14.63)	5(4.07)	123(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90)	12(20.69)	35(60.34)	7(12.07)	0(0.00)	58(100.00)
P.교육 서비스업	4(4.26)	11(11.70)	63(67.02)	11(11.70)	5(5.32)	94(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8.47)	54(22.88)	120(50.85)	28(11.86)	14(5.93)	236(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11.67)	16(26.67)	33(55.00)	3(5.00)	1(1.67)	60(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7.21)	45(20.27)	124(55.86)	29(13.06)	8(3.60)	222(100.00)
전체	190(7.81)	556(22.86)	1,411(58.02)	219(9.00)	56(2.30)	2,432(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3-34> 2017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의 상관관계 (단위<u>: 개소, %)</u>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변동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	88(16.79)	173(33.02)	234(44.66)	25(4.77)	4(0.76)	524(100.00)
고용에 변동이 없음	83(5.05)	321(19.54)	1,020(62.08)	174(10.59)	45(2.74)	1,643(100.00)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	3(3.95)	18(23.68)	46(60.53)	8(10.53)	1(1.32)	76(100.00)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	15(9.26)	37(22.84)	96(59.26)	11(6.79)	3(1.85)	162(100.00)
전체 	189(7.86)	549(22.83)	1,396(58.05)	218(9.06)	53(2.20)	2,405(100.00)

다. 2018년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

- 사업주의 경우, 2018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68.75%로 '약간 낮은 수준'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3.90%)보다 많았음(〈표 3-35〉와 〈표 3-36〉 참조)
 -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숙박 및음식점업 (46.29%)에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76.93%로 가장 높았음
 -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 및 서비스업(22.34%)에서 가장 낮았음

<표 3-35>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2018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사업체규모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221(44.56)	158(31.85)	103(20.77)	10(2.02)	4(0.81)	496(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458(32.97)	469(33.77)	401(28.87)	47(3.38)	14(1.01)	1,389(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94(31.23)	99(32.89)	98(32.56)	5(1.66)	5(1.66)	301(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62(35.84)	59(34.10)	45(26.01)	5(2.89)	2(1.16)	173(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22(34.38)	22(34.38)	17(26.56)	2(3.13)	1(1.56)	64(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6(40.00)	6(40.00)	3(20.00)	O(O.OO)	0(0.00)	15(100.00)
전체	863(35.40)	813(33.35)	667(27.36)	69(2.83)	26(1.07)	2,438(100.00)

<표 3-36>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업종별)

(단위 : 개소. %)

					_	<u> </u>
2018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산업대분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C.제 조 업	126(35.39)	124(34.83)	96(26.97)	9(2.53)	1(0.28)	356(100.00)
G.도매 및 소매업	193(30.25)	222(34.80)	204(31.97)	15(2.35)	4(0.63)	638(100.00)
H.운수업	10(23.81)	17(40.48)	12(28.57)	2(4.76)	1(2.38)	42(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281(46.29)	186(30.64)	128(21.09)	7(1.15)	5(0.82)	607(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28(22.58)	41(33.06)	43(34.68)	10(8.06)	2(1.61)	124(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22.41)	29(50.00)	14(24.14)	2(3.45)	0(0.00)	58(100.00)
P.교육 서비스업	21(22.34)	33(35.11)	35(37.23)	4(4.26)	1(1.06)	94(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2(38.98)	81(34.32)	48(20.34)	9(3.81)	6(2.54)	236(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38.33)	19(31.67)	16(26.67)	1(1.67)	1(1.67)	60(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6(34.08)	61(27.35)	71(31.84)	10(4.48)	5(2.24)	223(100.00)
전체	863(35.40)	813(33.35)	667(27.36)	69(2.83)	26(1.07)	2,438(100.00)

주 : 결측치 제외

- 2017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수준과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 간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지난해에 비해 2018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대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3-37〉참조)
 - 2017년 최저임금액이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면 2018년 인상액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약간 낮은 수준'이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던 사업체에서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높았음

<표 3-37>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2017년과 2018년 비교)

(단위 : 개소, %)

최저임금액 (2018년) 최저임금액 (2017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86(97.89)	1(0.53)	3(1.58)	0(0.00)	0(0.00)	190(100.00)
약간 높은 수준이다	361(64.93)	178(32.01)	15(2.70)	1(0.18)	1(0.18)	556(100.00)
보통이다	300(21.29)	595(42.23)	502(35.63)	8(0.57)	4(0.28)	1,409(100.00)
약간 낮은 수준이다	14(6.39)	32(14.61)	125(57.08)	46(21.00)	2(0.91)	219(100.00)
매우 낮은 수준이다	0(0.00)	5(9.09)	19(34.55)	13(23,64)	18(32.73)	55(100.00)
전체	861(35.45)	811(33.39)	664(27.34)	68(2.80)	25(1.03)	2,429(100.00)

9.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많은 것은 '동결'(59.36%)이었고, 그 다음으로 '3% 미만으로 인상'하자는 의견(17.24%)과 '3~6% 미만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의견(9.79%)이 많았음(〈표 3-38〉~〈표 3-40〉 참조)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100~299인의 상용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체에서 '3~6%미만 수준으로 인상'(33.33%)하자는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동결'을 원하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72.73%)에서 '동결'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응답자별로 보면 사업주 응답의 경우(66.26%)나 대리 응답의 경우(44.71%) 모두 '동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15% 이상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응답 비율이 하락함

<표 3-38>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액 작정수준 사업체규모	동결 (7,530원)	3% 미만(7,756 원 미만)	3~6% 미만(7,756 ~7,982원 미만)	6~9% 미만(7,982 ~8,208원 미만)	9~12% 미만(8,206 ~8,434원 미만)	12~15% 미만(8,434 ~8,660원 미만)	15% 이상(8,660 원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수	364	63	42	13	2	3	8	495
0인	(73.54)	(12.73)	(8.48)	(2.63)	(0.40)	(0.61)	(1.62)	(100.00)
상용근로자수	829	240	119	79	36	25	55	1,383
1~4인	(59.94)	(17.35)	(8.60)	(5.71)	(2.60)	(1.81)	(3.98)	(100.00)
상용근로자수	155	57	34	24	16	4	11	301
5~9인	(51.50)	(18.94)	(11.30)	(7.97)	(5.32)	(1.33)	(3.65)	(100.00)
상용근로자수	76	41	26	14	9	2	5	173
10~29인	(43.93)	(23.70)	(15.03)	(8.09)	(5.20)	(1.16)	(2.89)	(100.00)
상용근로자수	15	14	12	18	3	0	2	64
30~99인	(23.44)	(21.88)	(18.75)	(28.13)	(4.69)	(0.00)	(3.13)	(100.00)
상용근로자수	4	4	5	2	0	0	0	15
100~299인	(26.67)	(26.67)	(33.33)	(13.33)	(0.00)	(0.00)	(0.00)	(100.00)
전체	1,443	419	238	150	66	34	81	2,431
신세	(59.36)	(17.24)	(9.79)	(6.17)	(2.71)	(1.40)	(3.33)	(100.00)

<표 3-39>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업종별)

(단위: 개소, %) 2019년 최저임금 12~15% 3~6% 6~9% 9~12% 3% 15% 헌상액 적정수준 미만(7.98 미만(8.43 동결 미만(7.75 미만(8.20 미만(7,75 전체 이상(8,66 $6 \sim 7.982$ 2~8,208 6~8.434 4~8.660 (7.530원) 6워 미만) 0원 이상) 원 미만) 원 미만) 원 미만) 원 미만) 산업대분류 204 56 47 30 10 2 7 356 C.제 조 업 (57.30)(15.73)(13.20)(8.43)(2.81)(0.56)(1.97)(100.00)371 125 52 42 20 12 15 637 G.도매 및 소매업 (58.24)(19.62)(8.16)(6.59)(3.14)(1.88)(2.35)(100.00)22 8 5 4 2 0 42 1 H.운수업 (52.38)(19.05)(11.90)(9.52)(4.76)(0.00)(2.38)(100.00)440 90 15 6 3 10 605 41 I.숙박 및 음식점업 (0.99)(0.50)(72.73)(14.88)(6.78)(2.48)(1.65)(100.00)7 23 3 60 18 13 0 124 L.부동산 및 임대업 (48.39)(18.55)(14.52)(10.48)(2.42)(0.00)(5.65)(100.00)N.사업시설관리 및 30 7 9 7 1 1 3 58 사업지원 서비스업 (51.72)(12.07)(15.52)(12.07)(1.72)(1.72)(5.17)(100.00)7 9 4 45 18 4 6 93 P.교육 서비스업 (48.39)(19.35)(7.53)(9.68)(4.30)(4.30)(6.45)(100.00)Q.보건업 및 사회복지 236 122 42 23 20 9 2 18 서비스업 (51.69)(17.80)(9.75)(8.47)(3.81)(0.85)(7.63)(100.00)2 R.예술. 스포츠 및 36 13 6 1 1 1 60 여가관련 서비스업 (60.00)(21.67)(10.00)(3.33)(1.67)(1.67)(1.67)(100.00)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113 37 30 8 10 9 13 220 기타 개인서비스업 (51.36)(16.82)(13.64)(3.64)(4.55)(4.09)(5.91)(100.00)1.443 419 238 150 66 34 81 2.431 전체 (9.79)(2.71)(3.33)(59.36)(17.24)(6.17)(1.40)(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3-40>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응답자별)

(단위: 개소, %) 2019년 최저임금 6~9% 12~15% 3~6% 9~12% 15% 3% 인상액 동결 미만(7.756 미만(7.982 미만(8.206 미만(8.43 이상(8.66 미만(7.756 전체 적정수준 (7.530원) 7.982원 ~8.208원 ~8.434원 4~8,660 0원 원 미만) 미만) 네무바 네무터 원 미만) 이상) 응답자별 1.076 255 126 72 31 20 44 1.624 사업주응답 (66.26)(15.70)(7.76)(4.43)(1.91)(1.23)(2.71)(100.00)75 37 756 338 154 103 35 14 대리응답 (44.71)(20.37)(13.62)(9.92)(4.63)(1.85)(4.89)(100.00)29 51 10 9 3 0 0 0 무응답1) (56.86)(19.61)(17.65)(5.88)(0.00)(0.00)(0.00)(100.00)1,443 419 238 150 66 34 81 2.431 전체 (59.36)(2.71)(100.00)(17.24)(9.79)(6.17)(1.40)(3.33)

주 : 1) 무응답은 사업주 설문지의 "응답자 현황"에 답변하지 않은 표본을 의미함 2) 결측치 제외

-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 수준과 2018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수준 간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2019년 최저임금액 인상률을 낮게 응답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함(〈표 3-41〉 참조)
 - '매우 높은 수준', '약간 높은 수준' 혹은 '보통'이라고 평가한 경우 '동결'해야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약간 낮은 수준' 혹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경우 '15% 이상 수준에서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2019년 최저임금액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최저임금액을 매우 높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82.19%, 약간 높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58.94%,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업체 중 37.54%음
 - 반면 2018년 최저임금액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65.38%,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33.82%가 2019년 최저임금을 '15% 이상 수준에서 인상' 해야 한다고 응답했음

<표 3-41>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2018년 최저임금액 평가와의 비교)

(단위: 개소, %)

최저임금액 인상률 (2019년) 최저임금액 평가 (2018년)	동결 (7,530원)	3% 미만(7,75 6원 미만)	3~6% 미만(7,75 6~7,982 원 미만)	6~9% 미만(7,98 2~8,208 원 미만)	9~12% 미만(8,20 6~8,434 원 미만)	12~15% 미만(8,43 4~8,660 원 미만)	15% 이상(8,66 0원 이상)	전체
매우 높은 수준이다	706 (82.19)	104 (12.11)	34 (3.96)	13 (1.51)	0 (0.00)	1 (0.12)	1 (0.12)	859 (100.00)
약간 높은 수준이다	478 (58.94)	171 (21.09)	88 (10.85)	50 (6.17)	15 (1.85)	5 (0.62)	4 (0.49)	811 (100.00)
보통이다	250 (37.54)	135 (20.27)	109 (16.37)	73 (10.96)	43 (6.46)	20 (3.00)	36 (5.41)	666 (100.00)
약간 낮은 수준이다	6 (8.82)	7 (10.29)	6 (8.82)	13 (19.12)	7 (10.29)	6 (8.82)	23 (33.82)	68 (100.00)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11.54)	1 (3.85)	1 (3.85)	1 (3.85)	1 (3.85)	2 (7.69)	17 (65.38)	26 (100.00)
전체	1,443 (59.38)	418 (17.20)	238 (9.79)	150 (6.17)	66 (2.72)	34 (1.40)	81 (3.33)	2,430 (100.00)

10. 복지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해 제공되는 현물급여로서 전체 응답 사업체(2,415개소)의 67.08%가 '식사제공(식당운영 포함)'을 들고 있음(〈표 3-42〉과 〈표 3-43〉 참조)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수 30~99인', '상용근로자수 $10\sim29$ 인'의 사업체에서 '식사제공(식당운영 포함)'의 방법으로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비율이 각각 73.44%, 71.51%로 가장 높았고, '통근차량'을 운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근로자수 $100\sim299$ 인'의 사업체에서 가장 높았음(46.67%)
 -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숙소제공'을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비율이 19.10%로 높은 편

<표 3-42>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규모별)

(단위: 개소, %)

현물급여 지급 실태 사업체규모	숙소제공	식사제공 (식당운영 포함)	통근차량 운행	상품권 지급	기타	제공하는 현물급여 없음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10	320	7	15	37	144	489
	(2.04)	(65.44)	(1.43)	(3.07)	(7.57)	(29.45)	(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62	927	55	87	118	344	1,376
	(4.51)	(67.37)	(4.00)	(6.32)	(8.58)	(25.00)	(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30	193	14	23	39	69	299
	(10.03)	(64.55)	(4.68)	(7.69)	(13.04)	(23.08)	(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30	123	14	26	19	31	172
	(17.44)	(71.51)	(8.14)	(15.12)	(11.05)	(18.02)	(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22	47	17	16	13	13	64
	(34.38)	(73.44)	(26.56)	(25.00)	(20.31)	(20.31)	(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4	10	7	1	1	3	15
	(26.67)	(66.67)	(46.67)	(6.67)	(6.67)	(20.00)	(100.00)
전체(2017)	158	1,620	114	168	227	604	2,415
	(6.54)	(67.08)	(4.72)	(6.96)	(9.40)	(25.01)	(100.00)
전체(2016)	186	1,595	142	165	173	692	2,423
	(7.68)	(65.83)	(5.86)	(6.81)	(7.14)	(28.56)	(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단위: 개소, %)

				1	1		
현물급여 지급 실태 산업대분류	숙소제공	식사제공 (식당운영 포함)	통근차량 운행	상품권 지급	기타	제공하 는 현물급여 없음	전체
C.제 조 업	68	277	44	18	34	56	356
	(19.10)	(77.81)	(12.36)	(5.06)	(9.55)	(15.73)	(100.00)
G.도매 및 소매업	18	413	16	44	60	181	630
	(2.86)	(65.56)	(2.54)	(6.98)	(9.52)	(28.73)	(100.00)
H.운수업	2	27	1	3	5	11	41
	(4.88)	(65.85)	(2.44)	(7.32)	(12.20)	(26.83)	(100.00)
l.숙박 및 음식점업	29	467	28	25	44	110	598
	(4.85)	(78.09)	(4.68)	(4.18)	(7.36)	(18.39)	(100.00)
	6	50	2	5	19	51	124
L.부동산 및 임대업	(4.84)	(40.32)	(1.61)	(4.03)	(15.32)	(41.13)	(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1	22	5	7	6	24	57
사업지원 서비스업	(1.75)	(38.60)	(8.77)	(12.28)	(10.53)	(42.11)	(100.00)
P.교육 서비스업	5	46	4	9	12	32	92
	(5.43)	(50.00)	(4.35)	(9.78)	(13.04)	(34.78)	(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8 (3.40)	146	10	42	25	53	235
서비스업		(62.13)	(4.26)	(17.87)	(10.64)	(22.55)	(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2 (3.33)	29	1	3	6	25	60
관련 서비스업		(48.33)	(1.67)	(5.00)	(10.00)	(41.67)	(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19	143	3	12	16	61	222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6)	(64.41)	(1.35)	(5.41)	(7.21)	(27.48)	(100.00)
전체	158	1,620	114	168	227	604	2,415
	(6.54)	(67.08)	(4.72)	(6.96)	(9.40)	(25.01)	(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 외국인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한 숙소제공은 전체 응답 사업체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224개소)의 50.00%가 제공하고 있었음(〈표 3-44〉과 〈표 3-45〉 참조)
 -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숙소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숙소를 제공하는 비율이 80.56%로 높은 편

<표 3-44>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사업체규모별)

(단위 : 개소,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 사업체규모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 없음	전체
상용근로자수 0인	5(1.06)	33(6.99)	434(91.95)	472(100.00)
상용근로자수 1~4인	36(2.75)	50(3.82)	1,223(93.43)	1,309(100.00)
상용근로자수 5~9인	26(9.00)	15(5.19)	248(85.81)	289(100.00)
상용근로자수 10~29인	29(16.96)	10(5.85)	132(77.19)	171(100.00)
상용근로자수 30~99인	13(20.97)	2(3.23)	47(75.81)	62(100.00)
상용근로자수 100~299인	3(21.43)	2(14.29)	9(64.29)	14(100.00)
전체	112(4.83)	112(4.83)	2,093(90.33)	2,317(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3-45>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업종별)

(단위 : 개소. %)

				(단위 · 개도,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여부 산업대분류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 없음	전체
C.제 조 업	58(16.52)	14(3.99)	279(79.49)	351(100.00)
G.도매 및 소매업	6(0.99)	12(1.97)	591(97.04)	609(100.00)
H.운수업	2(5.26)	1(2.63)	35(92.11)	38(100.00)
 .숙박 및 음식점업	29(5.00)	58(10.00)	493(85.00)	580(100.00)
L.부동산 및 임대업	0(0.00)	4(3.48)	111(96.52)	115(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3.64)	4(7.27)	49(89.09)	55(100.00)
P.교육 서비스업	9(10.71)	6(7.14)	69(82.14)	84(100.00)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45)	8(3.64)	211(95.91)	220(100.0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75)	2(3.51)	54(94.74)	57(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92)	3(1.44)	201(96.63)	208(100.00)
전체	112(4.83)	112(4.83)	2,093(90.33)	2,317(100.00)

11.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51.10%였고, 이어서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61%임(〈표 3-46〉과 〈표 3-47〉 참조)
 - ※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사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4.76% 포인트 감소하였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0.73% 포인트 증가

<표 3-4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규모별)

(단위 : 개소.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사업체규모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상용근로자수	267	136	20	18	12	4	35	492
0인	(54.27)	(27.64)	(4.07)	(3.66)	(2.44)	(0.81)	(7.11)	(100.00)
상용근로자수	716	380	47	62	45	18	107	1,375
1~4인	(52.07)	(27.64)	(3.42)	(4.51)	(3.27)	(1.31)	(7.78)	(100.00)
- 상용근로자수 5∼9인	151 (50.33)	91 (30.33)	11 (3.67)	8 (2.67)	11 (3.67)	3 (1.00)	25 (8.33)	300 (100.00)
	71 (41.04)	61 (35.26)	4 (2.31)	4 (2.31)	9 (5.20)	1 (0.58)	23 (13.29)	173 (100.00)
상용근로자수	27	18	2	3	3	1	10	64
30∼99인	(42.19)	(28.13)	(3.13)	(4.69)	(4.69)	(1.56)	(15.63)	(100.00)
상용근로자수	4	6	0	0	1	1	3	15
100~299인	(26.67)	(40.00)	(0.00)	(0.00)	(6.67)	(6.67)	(20.00)	(100.00)
전체(2017)	1,236	692	84	95	81	28	203	2,419
	(51.10)	(28.61)	(3.47)	(3.93)	(3.35)	(1.16)	(8.39)	(100.00)
전체(2016)	1,221	809	145	71	116	26	36	2,424
	(50.37)	(33.37)	(5.98)	(2.93)	(4.79)	(1.07)	(1.49)	(100.00)

<표 3-47>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업종별)

(단위 : 개소, %)

							(🗀)]	• 기二, /0/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산업대분류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C.제 조 업	179	98	17	9	8	6	41	358
	(50.00)	(27.37)	(4.75)	(2.51)	(2.23)	(1.68)	(11.45)	(100.00)
G.도매 및 소매업	324	182	19	27	20	5	54	631
	(51.35)	(28.84)	(3.01)	(4.28)	(3.17)	(0.79)	(8.56)	(100.00)
H.운수업	17	17	1	1	1	0	5	42
	(40.48)	(40.48)	(2.38)	(2.38)	(2.38)	(0.00)	(11.90)	(100.00)
	322	156	24	24	26	8	42	602
.숙박 및 음식점업	(53.49)	(25.91)	(3.99)	(3.99)	(4.32)	(1.33)	(6.98)	(100.00)
	51	47	4	9	1	2	9	123
L.부동산 및 임대업	(41.46)	(38.21)	(3.25)	(7.32)	(0.81)	(1.63)	(7.32)	(100.00)
N.사업시설관리 및	25	19	2	0	4	1	7	58
사업지원 서비스업	(43.10)	(32.76)	(3.45)	(0.00)	(6.90)	(1.72)	(12.07)	(100.00)
P.교육 서비스업	39	31	1	4	5	1	11	92
	(42.39)	(33.70)	(1.09)	(4.35)	(5.43)	(1.09)	(11.96)	(100.00)
Q.보건업 및	135	62	5	5	6	3	18	234
사회복지 서비스업	(57.69)	(26.50)	(2.14)	(2.14)	(2.56)	(1.28)	(7.69)	(100.00)
R.예술, 스포츠 및	27	19	4	3	2	1	4	60
여가관련 서비스업	(45.00)	(31.67)	(6.67)	(5.00)	(3.33)	(1.67)	(6.67)	(100.0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7 (53.42)	61 (27.85)	7 (3.20)	13 (5.94)	8 (3.65)	1 (0.46)	12 (5.48)	219 (100.00)
전체	1,236	692	84	95	81	28	203	2,419
	(51.10)	(28.61)	(3.47)	(3.93)	(3.35)	(1.16)	(8.39)	(100.00)

IV.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응답 근로자 특성

가. 개인별 특성

<표 4-1> 응답 근로자의 구성(총괄)

(단위 : 명 									: 명, %)
성	별		학력별				고용형태별		
남	여	전체	고 <u>졸</u> 이하	대학(전문 대포함) 재학	대학(전문 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726 (33.96)	3,357 (66.04)	5,083 (100.00)	2,486 (50.28)	733 (14.83)	1,725 (34.89)	4,944 (100.00)	3,451 (68.03)	1,622 (31.97)	5,073 (100.00)

	전체					
20세 미만	20~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미만 미만				
41 (0.80)	1,206 (23.67)	1,001 (19.65)	1,185 (23.26)	1,128 (22.14)	533 (10.46)	5,094 (100.00)

사회보험 가입여부별									
국민	<u>l</u> 연금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			보험	전체			
가입	미가입	그 교제	가입	미가입	[건세	가입	미가입		
3,846 (76.04)	1,212 (23.96)	5,058 (100.00)	4,080 (80.39)	995 (19.61)	5,075 (100.00)	3,993 (78.90)	1,068 (21.10)	5,061 (100.00)	

		근속연수별			전체	
6개월 미만	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733 (14.45)	876 (17.27)	1,141 (22.50)	1,237 (24.39)	1,085 (21.39)	5,072 (100.00)	

- 응답 근로자(5,081명)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725명, 여성이 3,356명으로 그 비율은 각각 33.95%와 66.05%임(<표 4-2> 참조)
 - 연령별로는 20~30세 미만이 23.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이 각각 23.24%, 22.12%를 차지

<표 4-2>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성별)

(단위 : 명, %)

				<u> </u>
성별 연령	남	여	전체(2017)	전체(2016)
20세 미만	13(0.75)	28(0.83)	41(0.81)	42(0.87)
20~30세 미만	443(25.68)	763(22.74)	1,206(23.74)	1,150(23.76)
30~40세 미만	385(22.32)	615(18.33)	1,000(19.68)	974(20.12)
40~50세 미만	283(16.41)	898(26.76)	1,181(23.24)	1,186(24.50)
50~60세 미만	325(18.84)	799(23.81)	1,124(22.12)	1,094(22.60)
60세 이상	276(16.00)	253(7.54)	529(10.41)	395(8.16)
 전체	1,725(100.00)	3,356(100.00)	5,081(100.00)	4,841(100.00)

주 : 결측치 제외

○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표 4-3〉 참조)

<표 4-3>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학력별)

(단위 : 명, %)

학력별 연령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20세 미만	36(87.80)	5(12.20)	0(0.00)	41(100.00)
20~30세 미만	286(24.09)	346(29.15)	555(46.76)	1,187(100.00)
30~40세 미만	305(31.22)	150(15.35)	522(53.43)	977(100.00)
40~50세 미만	600(51.86)	129(11.15)	428(36.99)	1,157(100.00)
50~60세 미만	830(76.64)	81(7.48)	172(15.88)	1,083(100.00)
60세 이상	429(86.32)	21(4.23)	47(9.46)	497(100.00)
전체	2,486(50.30)	732(14.81)	1,724(34.88)	4,942(100.00)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16년 대비 1.59% 포인트 감소하여 31.97%로 나타났으며, 20세 미만(73.17%)과 60세 이상(44.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4-4〉 참조)
 - 정규직 비중은 30~40세 미만(80.92%), 40~50세 미만(72.45%), 50~60세 미만(63.81%)의 순이었음

<표 4-4>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고용형태별)

(단위 : 명, %)

			· — · · · — ·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세 미만	11(26.83)	30(73.17)	41(100.00)
20~30세 미만	769(63.76)	437(36.24)	1,206(100.00)
30~40세 미만	806(80.92)	190(19.08)	996(100.00)
40~50세 미만	852(72.45)	324(27.55)	1,176(100.00)
50~60세 미만	716(63.81)	406(36.19)	1,122(100.00)
60세 이상	296(55.85)	234(44.15)	530(100.00)
전체(2017)	3,450(68.03)	1,621(31.97)	5,071(100.00)
전체(2016)	3,126(66.44)	1,579(33.56)	4,705(100.00)

주 : 결측치 제외

-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고졸 학력자 비율이 각각 51.66%, 49.49%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는 남성의 경우 32.64%, 여성의 경우 36.08%로 나타남(<표 4-5> 참조)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9.90%이고, 동 학력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4.07%로 정규직 근로자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15.83%p 높은 편이었음(〈표 4-6〉참조)

<표 4-5> 학력분포(성별)

(단위 : 명, %)

성별 학력	남	여	전체
고졸 이하	869(51.66)	1,609(49.49)	2,478(50.23)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264(15.70)	469(14.43)	733(14.86)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549(32.64)	1,173(36.08)	1,722(34.91)
전체	1,682(100.00)	3,251(100.00)	4,933(100.00)

<표 4-6> 학력분포(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학력 고졸 이하 1,617(48.11) 856(54.80) 2,473(50.23)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403(11.99) 330(21.13) 733(14.89)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341(39.90) 376(24.07) 1,717(34.88) 전체 3.361(100.00) 1.562(100.00) 4.923(100.00)

주 : 결측치 제외

-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2~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37%로 가장 높았으며 1~2년 미만이 22.51%, 5년 이상이 21.39%였음(〈표 4-7〉~〈표 4-10〉 참조)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의 근속년수는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짧은 편이었음(〈표 4-10〉 참조)

<표 4-7> 근속년수(성별)

(단위 : 명, %)

성별 근속년수	남	여	전체
6개월 미만	260(15.13)	473(14.16)	733(14.49)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1(15.19)	611(18.29)	872(17.24)
1~2년 미만	385(22.41)	754(22.57)	1,139(22.51)
2~5년 미만	405(23.57)	828(24.78)	1,233(24.37)
 5년 이상	407(23.69)	675(20.20)	1,082(21.39)
전체	1,718(100.00)	3,341(100.00)	5,059(100.00)

<표 4-8> 근속년수(연령별)

(단위:명,%) 연령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근속년수 6개월 미만 28(68.29) 281(23.36) 113(11.37) 138(11.72) 126(11.21) 47(8.85) 733(14.46) 6개월 이상~ 9(21.95) 354(29.43) 137(13.78) 156(13.25) 157(13.97) 63(11.86) 876(17.28) 1년 미만 1~2년 미만 320(26.60) 240(24.14) 252(21.41) 225(20.02) 2(4.88) 102(19.21) 1,141(22.50) 2~5년 미만 1(2.44) 204(16.96) 304(30.58) 311(26.42) 284(25.27) 132(24.86) 1.236(24.38) 5년 이상 44(3.66) 200(20.12) 1(2.44) 320(27.19) 332(29.54) 187(35.22) 1,084(21.38) 전체 41(100.00) 1,203(100.00) 994(100.00) 1,177(100.00) | 1,124(100.00) 531(100.00) 5.070(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9> 근속년수(학력별)

(단위:명,%) 학력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전문대 포함) 고졸 이하 전체 재학 졸업 이상 근속년수 6개월 미만 337(13.62) 161(22.05) 213(12.38) 711(14.44) 6개월 이상~1년 미만 382(15.44) 179(24.52) 288(16.74) 849(17.24) 1~2년 미만 576(23.28) 156(21.37) 376(21.86) 1,108(22.50) 2~5년 미만 608(24.58) 130(17.81) 468(27.21) 1,206(24.49) 5년 이상 571(23.08) 104(14.25) 375(21.80) 1,050(21.32) 전체 2.474(100.00) 730(100.00) 1.720(100.00) 4.924(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10> 근속년수(고용형태별)

(단위:명,%) 고용형태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근속년수 6개월 미만 307(8.94) 424(26.27) 731(14.48) 6개월 이상~ 1년 미만 517(15.05) 357(22,12) 874(17.31) 1~2년 미만 741(21.57) 390(24.16) 1,131(22,40) 2~5년 미만 956(27.83) 280(17.35) 1,236(24,48) 5년 이상 914(26.61) 163(10.10) 1,077(21.33) 3,435(100.00) 전체 1,614(100.00) 5,049(100.00)

-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이 각각 76.06%, 80.38%, 78.92%임(〈표 4-11〉~〈표 4-15〉 참조)
 - 성별, 학력별로는 사회보험 가입률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 연령별로는 21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70%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세 미만 가입률이 40% 수준에 불과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90%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비정규직은 50% 수준의 가입률을 보임

<표 4-11> 사회보험 가입여부(성별)

(단위 : 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직	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성별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남	1,316(77.09)	391(22.91)	1,446(84.17)	272(15.83)	1,386(80.96)	326(19.04)	
여	2,521(75.52)	817(24.48)	2,623(78.44)	721(21.56)	2,598(77.88)	738(22,12)	
전체(2017)	3,837(76.06)	1,208(23.94)	4,069(80.38)	993(19.62)	3,984(78.92)	1,064(21.08)	
전체(2016)	3,617(75.34)	1,184(24.66)	3,862(80.19)	954(19.81)	3,782(78.68)	1,025(21.32)	

주 :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 제외

<표 4-12> 사회보험 가입여부(연령별)

(단위:명,%)

						(211 0, 79)	
사회보험 가입여부	사회보험 국민연금 사인여부		건강보험(직	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연령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20세 미만	17(42.50)	23(57.50)	17(42.50)	23(57.50)	22(53.66)	19(46.34)	
20~29세	875(72.86)	326(27.14)	893(74.23)	310(25.77)	899(74.85)	302(25.15)	
30~39세	883(88.57)	114(11.43)	894(89.40)	106(10.60)	876(87.78)	122(12.22)	
40~49세	985(83.40)	196(16.60)	990(83.83)	191(16.17)	975(82.77)	203(17.23)	
50~59세	862(76.62)	263(23.38)	883(78.56)	241(21.44)	854(76.32)	265(23.68)	
60세 이상	222(43.36)	290(56.64)	401(76.38)	124(23.62)	365(69.92)	157(30.08)	
전체	3,844(76.03)	1,212(23.97)	4,078(80.39)	995(19.61)	3,991(78.89)	1,068(21.11)	

주 :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 제외

<표 4-13> 사회보험 가입여부(학력별)

(단위 : 명, %)

사회보험			건강보험(직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학력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고졸 이하	1,768(71.96)	689(28.04)	1,937(78.36)	535(21.64)	1,879(76.32)	583(23.68)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495(67.72)	236(32.28)	509(69.54)	223(30.46)	509(69.73)	221(30.27)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481(86.05)	240(13.95)	1,525(88.61)	196(11.39)	1,497(87.03)	223(12.97)	
전체	3,744(76.27)	1,165(23.73)	3,971(80.63)	954(19.37)	3,885(79.09)	1,027(20.91)	

주 :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 제외

<표 4-14> 사회보험 가입여부(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자화보험 가입여부	로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고용형태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정규직	3,130(91.23)	301(8.77)	3,263(94.80)	179(5.20)	3,196(92.96)	242(7.04)
비정규직	696(43.39)	908(56.61)	797(49.50)	813(50.50)	777(48.56)	823(51.44)
전체	3,826(75.99)	1,209(24.01)	4,060(80.36)	992(19.64)	3,973(78.86)	1,065(21.14)

주 :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 제외

<표 4-15> 사회보험 가입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1 - 1 - 1	
ᆈᅯ귀	국민연금		건강보험(직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비정규직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시간제근로자	260(32.18)	548(67.82)	288(35.64)	520(64.36)	299(37.14)	506(62.86)	
일용근로자	33(22.45)	114(77.55)	38(25.85)	109(74.15)	32(22.07)	113(77.93)	
기간제근로자	374(64.93)	202(35.07)	435(74.74)	147(25.26)	412(71.40)	165(28.60)	
기타	28(47.46)	31(52.54)	30(50.85)	29(49.15)	28(47.46)	31(52.54)	
전체	695(43.71)	895(56.29)	791(49.56)	805(50.44)	771(48.61)	815(51.39)	

주 : 1) 각각의 전체 빈도를 100.00으로 하여 가입과 미가입의 백분율을 얻음

2) 결측치 제외

나. 근로자 가구 특성

- 4인 가구의 경우 비율이 39.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인 가구가 22.17%로 많았음(<표 4-16> 참조)
 - 가구원 수가 2~4인 가구에서는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가 2인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구원 수 5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았음(<표 4-17> 참조)

<표 4-16> 가구원 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성별)

(단위 : 명, %)

									(-	11 - 0, 70
근로자 가구특성		가구원 수					가구원	적으로 일 수(본인, 배 모든 가구	우자 및	전체
성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체	1인	2인	3인 이상	
남	243	330	391	587	149	1,700	622	678	386	1,686
	(14.29)	(19.41)	(23.00)	(34.53)	(8.76)	(100.00)	(36.89)	(40.21)	(22.89)	(100.00)
여	308	517	721	1,402	368	3,316	603	1,815	873	3,291
	(9.29)	(15.59)	(21.74)	(42,28)	(11.10)	(100.00)	(18.32)	(55.15)	(26.53)	(100.00)
전체	551	847	1,112	1,989	517	5,016	1,225	2,493	1,259	4,977
(2017)	(10.98)	(16.89)	(22.17)	(39.65)	(10.31)	(100.00)	(24.61)	(50.09)	(25.30)	(100.00)
전체	511	802	1,071	1,863	501	4,748	1,079	2,458	1,165	4,702
(2016)	(10.76)	(16.89)	(22.56)	(39.24)	(10.55)	(100.00)	(22.95)	(52.28)	(24.78)	(100.00)

주 : 1) 결측치 제외

2) 각 가구원 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에서 '0인'으로 기입한 항목은 제외

<표 4-17>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구원 수별)

(단위:명,%)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수 가구원수	1인	2인	3인이상	전체
1인	544(100.00)	0(0.00)	0(0.00)	544(100.00)
2인	321(38.54)	512(61.46)	0(0.00)	833(100.00)
3인	210(18.97)	676(61.07)	221(19.96)	1,107(100.00)
4인	125(6.31)	1080(54.55)	775(39.14)	1,980(100.00)
5인 이상	25(4.87)	225(43.86)	263(51.27)	513(100.00)
전체	1,225(24.61)	2,493(50.09)	1,259(25.30)	4,977(100.00)

○ 가구 월 총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이 18.80%, 200~300만원 미만이 17.59%였음(〈표 4-18〉~〈표 4-23〉참조)

<표 4-18> 가구 월 총소득(성별)

(단위 : 명, %)

성별 가구 월 총소 독	남	여	전체
80만원 미만	31(1.80)	77(2.31)	108(2.13)
80~100만원 미만	23(1.34)	67(2.01)	90(1.78)
100~150만원 미만	180(10.47)	248(7.43)	428(8.46)
150~200만원 미만	348(20.23)	389(11.65)	737(14.57)
200~300만원 미만	386(22.44)	504(15.09)	890(17.59)
300~400만원 미만	306(17.79)	749(22.43)	1,055(20.85)
400~500만원 미만	192(11.16)	608(18.21)	800(15.81)
500만원 이상	254(14.77)	697(20.87)	951(18.80)
전체	1,720(100.00)	3,339(100.00)	5,059(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19> 가구 월 총소득(연령별)

(단위 : 명, %)

		00 00 11	00 40 11	40 50 11	E0 00 III		, , , ,
연령 가구 월 총소 독	20세 미만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80만원 미만	2(4.88)	31(2.58)	19(1.90)	14(1.19)	17(1.52)	25(4.70)	108(2.13)
80~100만원 미만	3(7.32)	24(2.00)	10(1.00)	12(1.02)	20(1.78)	21(3.95)	90(1.78)
100~150만원 미만	3(7.32)	74(6.16)	79(7.92)	77(6.55)	90(8.02)	105(19.74)	428(8.44)
150~200만원 미만	2(4.88)	144(11.99)	147(14.73)	153(13.01)	172(15.33)	122(22.93)	740(14.60)
200~300만원 미만	3(7.32)	122(10.16)	224(22.44)	232(19.73)	216(19.25)	98(18.42)	895(17.65)
300~400만원 미만	14(34.15)	198(16.49)	231(23.15)	286(24.32)	247(22.01)	81(15.23)	1,057(20.85)
400~500만원 미만	7(17.07)	208(17.32)	167(16.73)	215(18.28)	159(14.17)	43(8.08)	799(15.76)
500만원 이상	7(17.07)	400(33.31)	121(12.12)	187(15.90)	201(17.91)	37(6.95)	953(18.80)
전체	41(100.00)	1,201(100.00)	998(100.00)	1,176(100.00)	1,122(100.00)	532(100.00)	5,070(100.00)

<표 4-20> 가구 월 총소득(학력별)

(단위 : 명, %)

				(E11 0, 79)
학력 가구 월 총소 득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80만원 미만	53(2.14)	22(3.03)	27(1.57)	102(2.07)
80~100만원 미만	47(1.90)	22(3.03)	15(0.87)	84(1.71)
100~150만원 미만	251(10.13)	49(6.74)	107(6.22)	407(8.27)
150~200만원 미만	405(16.34)	78(10.73)	225(13.09)	708(14.38)
200~300만원 미만	515(20.78)	88(12.10)	275(16.00)	878(17.83)
300~400만원 미만	541(21.83)	170(23.38)	323(18.79)	1,034(21.00)
400~500만원 미만	343(13.84)	132(18.16)	302(17.57)	777(15.78)
 500만원 이상	323(13.03)	166(22,83)	445(25.89)	934(18.97)
전체	2,478(100.00)	727(100.00)	1,719(100.00)	4,924(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21> 가구 월 총소득(고용형태별)

(단위 : 명, %)

			(= 11 0, 13
고용형태 가구 월 총소득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80만원 미만	34(0.99)	73(4.52)	107(2.12)
80~100만원 미만	35(1.02)	55(3.41)	90(1.78)
100~150만원 미만	273(7.95)	149(9.23)	422(8.36)
150~200만원 미만	518(15.08)	220(13.63)	738(14.62)
200~300만원 미만	587(17.09)	301(18.65)	888(17.59)
300~400만원 미만	708(20.61)	348(21.56)	1,056(20.92)
400~500만원 미만	562(16.36)	235(14.56)	797(15.79)
500만원 이상	718(20.90)	233(14.44)	951(18.84)
전체	3,435(100.00)	1,614(100.00)	5,049(100.00)

<표 4-22> 가구 월 총소득(가구원수별)

(단위 : 명, %)

						, ,
가구원수 가구 월 총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체
80만원 미만	46(.27)	21(2.46)	13(1.17)	20(1.01)	4(0.77)	104(2.07)
80~100만원 미만	32(5.76)	14(1.64)	18(1.62)	19(0.96)	6(1.16)	89(1.77)
100~150만원 미만	155(27.88)	128(15.01)	51(4.59)	70(3.54)	19(3.68)	423(8.43)
150~200만원 미만	210(37.77)	215(25.21)	140(12.60)	133(6.72)	33(6.38)	731(14.57)
200~300만원 미만	101(18.17)	215(25.21)	240(21.60)	250(12.63)	76(14.70)	882(17.58)
300~400만원 미만	6(1.08)	156(18.29)	314(28.26)	459(23.19)	111(21.47)	1,046(20.85)
400~500만원 미만	2(0.36)	63(7.39)	189(17.01)	449(22.69)	88(17.02)	791(15.77)
500만원 이상	4(0.72)	41(4.81)	146(13.14)	579(29.26)	180(34.82)	950(18.94)
전체	556(100.00)	853(100.00)	1,111(100.00)	1,979(100.00)	517(100.00)	5,016(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23> 가구 월 총소득(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수별)

(단위 : 명, %)

				(211 0, 79)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기구원수 가구 월 총소득	1인	2인	3인 이상	전체
80만원 미만	66(5.41)	28(1.12)	10(0.79)	104(2.09)
80~100만원 미만	54(4.43)	24(0.96)	9(0.71)	87(1.75)
100~150만원 미만	320(26.23)	77(3.08)	20(1.58)	417(8.37)
150~200만원 미만	466(38.20)	209(8.37)	48(3.80)	723(14.52)
200~300만원 미만	259(21.23)	540(21.62)	77(6.10)	876(17.59)
300~400만원 미만	37(3.03)	827(33.11)	180(14.25)	1,044(20.96)
400~500만원 미만	6(0.49)	495(19.82)	288(22.80)	789(15.84)
500만원 이상	12(0.98)	298(11.93)	631(49.96)	941(18.89)
전체	1,220(100.00)	2,498(100.00)	1,263(100.00)	4,981(100.00)

○ 가구 월 총지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이 22.99%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고, 그 다음으로 150~200만원 미만(20.10%), 300~400만원 미만(17.22%) 순으로 나타났음(〈표 4-24〉~〈표 4-29〉참조)

<표 4-24> 가구 월 총지출(성별)

(단위 : 명, %)

			<u> </u>
성별 가구 월 총지출	남	여	전체
80만원 미만	126(7.33)	182(5.47)	308(6.11)
80~100만원 미만	147(8.55)	252(7.58)	399(7.91)
100~150만원 미만	327(19.02)	405(12.18)	732(14.51)
150~200만원 미만	368(21.41)	646(19.42)	1,014(20.10)
200~300만원 미만	392(22.80)	768(23.09)	1,160(22.99)
300~400만원 미만	235(13.67)	634(19.06)	869(17.22)
400~500만원 미만	78(4.54)	287(8.63)	365(7.23)
500만원 이상	46(2.68)	152(4.57)	198(3.92)
전체	1,719(100.00)	3,326(100.00)	5,045(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25> 가구 월 총지출(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가구 월 총자출	20세 미만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80만원 미만	4(10.00)	77(6.45)	64(6.46)	40(3.38)	63(5.64)	61(11.49)	309(6.11)
 80~100만원 미만	0(0.00)	88(7.37)	80(8.08)	70(5.92)	88(7.87)	73(13.75)	399(7.89)
 100~150만원 미만	7(17.50)	152(12.73)	138(13.94)	144(12.18)	172(15.38)	125(23.54)	738(14.60)
 150~200만원 미만	3(7.50)	206(17.25)	222(22.42)	245(20.73)	231(20.66)	109(20.53)	1,016(20.10)
	14(35.00)	261(21.86)	233(23.54)	284(24.03)	278(24.87)	92(17.33)	1,162(22.99)
300~400만원 미만	10(25.00)	233(19.51)	171(17.27)	243(20.56)	171(15.30)	41(7.72)	869(17.19)
	2(5.00)	94(7.87)	62(6.26)	113(9.56)	71(6.35)	22(4.14)	364(7.20)
500만원 이상	0(0.00)	83(6.95)	20(2.02)	43(3.64)	44(3.94)	8(1.51)	198(3.92)
전체 <u></u>	40(100.00)	1,194(100.00)	990(100.00)	1,182(100.00)	1,118(100.00)	531(100.00)	5,055(100.00)

<표 4-26> 가구 월 총지출(학력별)

(단위 : 명, %)

				1 - 1 - 7
학력 가구 월 총자출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80만원 미만	173(7.00)	49(6.76)	75(4.38)	297(6.05)
80~100만원 미만	237(9.58)	41(5.66)	103(6.02)	381(7.76)
100~150만원 미만	415(16.78)	92(12.69)	201(11.75)	708(14.42)
150~200만원 미만	522(21.11)	127(17.52)	334(19.52)	983(20.02)
200~300만원 미만	579(23.41)	175(24.14)	376(21.98)	1,130(23.02)
300~400만원 미만	338(13.67)	159(21.93)	357(20.86)	854(17.40)
400~500만원 미만	142(5.74)	53(7.31)	164(9.59)	359(7.31)
500만원 이상	67(2.71)	29(4.00)	101(5.90)	197(4.01)
전체	2,473(100.00)	725(100.00)	1,711(100.00)	4,909(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27> 가구 월 총지출(고용형태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가구 월 총지출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80만원 미만	178(5.19)	131(8.17)	309(6.14)
 80~100만원 미만	246(7.17)	152(9.48)	398(7.90)
100~150만원 미만	485(14.13)	246(15.35)	731(14.52)
150~200만원 미만	693(20.19)	318(19.84)	1,011(20.08)
200~300만원 미만	776(22.61)	382(23.83)	1,158(23.00)
300~400만원 미만	634(18.47)	235(14.66)	869(17.26)
400~500만원 미만	265(7.72)	99(6.18)	364(7.23)
 500만원 이상	155(4.52)	40(2.50)	195(3.87)
전체	3,432(100.00)	1,603(100.00)	5,035(100.00)

<표 4-28> 가구 월 총지출(가구원 수별)

(단위 : 명, %)

						(211 · 6, /0)
가구원수 가구 월 총지출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체
80만원 미만	149(26.80)	68(8.00)	32(2.88)	42(2.13)	10(1.95)	301(6.02)
80~100만원 미만	127(22.84)	108(12.71)	60(5.40)	73(3.70)	24(4.69)	392(7.84)
100~150만원 미만	167(30.04)	207(24.35)	159(14.31)	157(7.96)	40(7.81)	730(14.60)
150~200만원 미만	86(15.47)	235(27.65)	273(24.57)	340(17.24)	75(14.65)	1,009(20.18)
200~300만원 미만	22(3.96)	167(19.65)	323(29.07)	535(27.13)	101(19.73)	1,148(22.96)
300~400만원 미만	3(0.54)	47(5.53)	184(16.56)	497(25.20)	130(25.39)	861(17.22)
400~500만원 미만	2(0.36)	11(1.29)	59(5.31)	211(10.70)	80(15.63)	363(7.26)
500만원 이상	0(0.00)	7(0.82)	21(1.89)	117(5.93)	52(10.16)	197(3.94)
전체	556(100.00)	850(100.00)	1,111(100.00)	1,972(100.00)	512(100.00)	5,001(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29> 가구 월 총지출(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별)

(단위 : 명, %)

				(211 : 6, 70)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기구원 수 가구 월 총지출	1인	2인	3인 이상	전체
80만원 미만	221(18.09)	59(2.37)	15(1.19)	295(5.94)
80~100만원 미만	213(17.43)	140(5.63)	35(2.78)	388(7.81)
100~150만원 미만	369(30.20)	288(11.58)	66(5.25)	723(14.56)
150~200만원 미만	264(21.60)	568(22.85)	172(13.67)	1,004(20.22)
200~300만원 미만	115(9.41)	687(27.63)	341(27.11)	1,143(23.02)
300~400만원 미만	34(2.78)	491(19.75)	332(26.39)	857(17.26)
400~500만원 미만	6(0.49)	176(7.08)	178(14.15)	360(7.25)
500만원 이상	0(0.00)	77(3.10)	119(9.46)	196(3.95)
전체	1,222(100.00)	2,486(100.00)	1,258(100.00)	4,966(100.00)

- 응답 근로자의 소득이 가계 내 역할은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40.24%, '보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40.10%이었음. '주로 개인 소비용'이라는 응답이 2016년에 대비 0.18% 포인트 낮아져 19.20%로 나타남(〈표 4-30〉~〈표 4-35〉참조)
 - 성별로 보면, 남성은 본인의 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높으며 (64.89%)였으나 여성은 '보조 소득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높음(52.62%)

<표 4-30>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성별)

(단위 : 명, %)

성별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남	여	전체(2017)	전체(2016)
가계의 주 소득원	1,111(64.89)	913(27.52)	2,024(40.24)	1,911(39.86)
가계의 보조 소득원	271(15.83)	1,746(52.62)	2,017(40.10)	1,927(40.20)
주로 개인 소비용	324(18.93)	642(19.35)	966(19.20)	929(19.38)
기타	6(0.35)	17(0.51)	23(0.46)	27(0.56)
전체	1,712(100.00)	3,318(100.00)	5,030(100.00)	4,794(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31>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연령별)

(단위 : 명, %)

연령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가계의 주 소득원	1(2.44)	196(16.37)	431(43.54)	504(42.78)	548(49.59)	348(65.66)	2,028(40.23)
가계의 보조 소득원	10(24.39)	319(26.65)	428(43.23)	606(51.44)	509(46.06)	153(28.87)	2,025(40.17)
주로 개인 소비용	29(70.73)	672(56.14)	129(13.03)	64(5.43)	45(4.07)	26(4.91)	965(19.14)
기타	1(2.44)	10(0.84)	2(0.20)	4(0.34)	3(0.27)	3(0.57)	23(0.46)
전체	41(100.00)	1,197(100.00)	990(100.00)	1,178(100.00)	1,105(100.00)	530(100.00)	5,041(100.00)

<표 4-32>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학력별)

학력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전문대 포함) 고졸 이하 응답 근로자 전체 재학 졸업 이상 소득의 가계 내 역할 가계의 주 소득원 1,158(47.13) 211(29.02) 592(34.56) 1,961(40.04) 가계의 보조 소득원 1,014(41.27) 260(35.76) 690(40.28) 1,964(40.11) 주로 개인 소비용 277(11.27) 253(34.80) 420(24.52) 950(19.40) 기타 8(0.33) 3(0.41) 11(0.64) 22(0.45) 전체 2,457(100.00) 727(100.00) 1,713(100.00) 4,897(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33>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고용형태별)

(단위 : 명, %)

(단위:명,%)

고용형태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가계의 주 소득원	1,492(43.65)	520(32.46)	2,012(40.08)
가계의 보조 소득원	1,360(39.79)	660(41.20)	2,020(40.24)
주로 개인 소비용	553(16.18)	412(25.72)	965(19.22)
기타	13(0.38)	10(0.62)	23(0.46)
전체	3,418(100.00)	1,602(100.00)	5,020(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34> 응답 근로자 구성(가구원수별・소득용도별)

(단위:명,%)

소득용도 가구원수	주 소득원	보조소득원	개인소비용	기타	전체
1인	452(81.59)	19(3.43)	82(14.80)	1(0.18)	554(100.00)
2인	498(59.07)	288(34.16)	54(6.41)	3(0.36)	843(100.00)
3인	418(37.97)	526(47.77)	154(13.99)	3(0.27)	1,101(100.00)
4인	502(25.39)	957(48.41)	508(25.70)	10(0.51)	1,977(100.00)
5인 이상	136(26.51)	216(42.11)	156(30.41)	5(0.97)	513(100.00)
전체	2,006(40.22)	2,006(40.22)	954(19.13)	22(0.44)	4,988(100.00)

<표 4-35> 가구 월 총소득(소득용도별)

(단위 : 명, %)

					(111 - 8, 70)
소득용도 가구 월 총소득	주소득원	보조소득원	개인소비용	기타	전체
80만원 미만	50(47.17)	24(22.64)	31(29.25)	1(0.94)	106(100.00)
80~100만원 미만	52(57.78)	20(22.22)	15(16.67)	3(3.33)	90(100.00)
100~150만원 미만	304(71.70)	62(14.62)	56(13.21)	2(0.47)	424(100.00)
150~200만원 미만	530(72.60)	109(14.93)	87(11.92)	4(0.55)	730(100.00)
200~300만원 미만	503(57.09)	272(30.87)	103(11.69)	3(0.34)	881(100.00)
300~400만원 미만	325(31.10)	570(54.55)	145(13.88)	5(0.48)	1,045(100.00)
400~500만원 미만	160(20.20)	456(57.58)	174(21.97)	2(0.25)	792(100.00)
500만원 이상	96(10.09)	502(52.79)	350(36.80)	3(0.32)	951(100.00)
전체	2,020(40.25)	2,015(40.15)	961(19.15)	23(0.46)	5,019(100.00)

주 : 결측치 제외

2. 소속된 직장의 특성

가. 현 직장의 특성

○ 현 직장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 근로자(5,025명) 중 정규직 근로자가 68.54%, 비정규직 근로자가 31.46%인 것으로 나타남. 2016년에 대비하여 정규직의 비율이 1.23% 포인트 높아졌음(〈표 4-36〉~〈표 4-38〉 참조)

<표 4-36> 현 직장의 고용형태(성별)

(단위 : 명, %)

							(211 0, 79)
고용형태				비정규직			
성별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간(계약) 근로자	기타	전체	전체
남	1,247(73.09)	182(10.67)	48(2.81)	215(12.60)	14(0.82)	459(26.90)	1,706(100.00)
여	2,197(66.19)	626(18.86)	96(2.89)	359(10.82)	41(1.24)	1,122(33.81)	3,319(100.00)
전체(2017)	3,444(68.54)	808(16.08)	144(2.87)	574(11.42)	55(1.09)	1,581(31.46)	5,025(100.00)
전체(2016)	3,118(67.31)	691(14.92)	160(3.45)	605(13.06)	58(1.25)	1,514(32.69)	4,632(100.00)

<표 4-37> 현 직장의 고용형태(연령별)

(단위 : 명, %)

고용형태		비정규직					
연령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간(계약) 근로자	기타	전체	전체
20세 미만	11(26.83)	26(63.41)	0(0.00)	4(9.76)	0(0.00)	30(73.17)	41(100.00)
20~29세	769(63.98)	305(25.37)	12(1.00)	107(8.90)	9(0.75)	433(36.02)	1,202(100.00)
30~39세	806(81.33)	74(7.47)	15(1.51)	85(8.58)	11(1.11)	185(18.67)	991(100.00)
40~49세	852(73.20)	141(12.11)	25(2.15)	131(11.25)	15(1.29)	312(26.80)	1,164(100.00)
50~59세	716(64.33)	177(15.90)	59(5.30)	149(13.39)	12(1.08)	397(35.67)	1,113(100.00)
60세 이상	296(56.38)	86(16.38)	33(6.29)	102(19.43)	8(1.52)	229(43.62)	525(100.00)
전체	3,450(68.51)	809(16.06)	144(2.86)	578(11.48)	55(1.09)	1,586(31.49)	5,036(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38> 현 직장의 고용형태(학력별)

(단위 : 명, %)

							(E11 - 0, 70)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 근로자	기타	전체	전체
고졸 이하	1,617(65.81)	403(16.40)	110(4.48)	305(12.41)	22(0.90)	840(34.19)	2,457(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403(55.36)	225(30.91)	10(1.37)	79(10.85)	11(1.51)	325(44.64)	728(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341(78.65)	156(9.15)	14(0.82)	177(10.38)	17(1.00)	364(21.35)	1,705(100.00)
전체	3,361(68.73)	784(16.03)	134(2.74)	561(11.47)	50(1.02)	1,529(31.26)	4,890(100.00)

주 : 결측치 제외

○ 조사 대상 근로자들 중 서비스종사자(32.30%)가 가장 많으며, 사무종사자 (20.96%), 단순노무종사자(14.30%)의 순임(〈표 4-39〉~〈표 4-41〉 참조)

<표 4-39> 현재 직장의 직종(성별)

<표 4-39> 현재 직장의 직종(성별	<u>4</u>)			(단위 : 명, %)
성별 직종	남	O‡	전체(2017)	전체(2016)
사무종사자	192(13.14)	677(25.21)	869(20.96)	902(18.90)
서비스종사자	352(24.09)	987(36.76)	1,339(32.30)	1,851(38.78)
 판매종사자	178(12.18)	207(7.71)	385(9.29)	433(9.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87(12.80)	107(3.99)	294(7.09)	287(6.0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9(12.25)	25(0.93)	204(4.92)	212(4.4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3(4.31)	373(13.89)	436(10.52)	433(9.07)
	291(19.92)	302(11.25)	593(14.30)	627(13.1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5(0.34)	5(0.19)	10(0.24)	14(0.29)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4(0.96)	2(0.07)	16(0.39)	14(0.29)
전체	1,461(100.00)	2,685(100.00)	4,146(100.00)	4,773(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40> 현재 직장의 직종(학력별)

<표 4-40> 현재 직장의 직종(학력	(단위 : 명, %)			
학력 직종	고졸 이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전체
사무종사자	255(12.67)	120(23.12)	483(32.09)	858(21.26)
서비스종사자	677(33.65)	190(36.61)	421(27.97)	1,288(31.91)
판매종사자	186(9.24)	63(12.14)	124(8.24)	373(9.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73(8.60)	33(6.36)	80(5.32)	286(7.0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8(6.86)	27(5.20)	31(2.06)	196(4.8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3(4.13)	53(10.21)	297(19.73)	433(10.73)
단순노무종사자	485(24.11)	32(6.17)	61(4.05)	578(14.32)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0.35)	0(0.00)	1(0.07)	8(0.20)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8(0.40)	1(0.19)	7(0.47)	16(0.40)
전체	2.012(100.00)	519(100.00)	1,505(100.00)	4,036(100.00)

			(211 · 6, 70)
고용형태 직종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사무종사자	824(23.92)	42(6.09)	866(20.94)
서비스종사자	982(28.51)	353(51.16)	1,335(32.29)
 판매종사자	290(8.42)	94(13.62)	384(9.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60(7.55)	32(4.64)	292(7.0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9(5.78)	5(0.72)	204(4.9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07(11.81)	30(4.35)	437(10.57)
 단순노무종사자	460(13.35)	131(18.99)	591(14.29)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0.20)	3(0.43)	10(0.24)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6(0.46)	O(O.OO)	16(0.39)

690(100.00)

(단위 : 명 %)

4.135(100.00)

주 : 결측치 제외

전체

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 2017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5.72%에 이르고 있음(〈표 4-42〉~〈표 4-46〉 참조)

3.445(100.00)

-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또는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하로 인상되었다'는 의견의 비율이 2.45% 포인트 증가하였음
- 성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하로 인상되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이 6.99%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상되었다'는 의견은 20세 미만이 60.00%로 가장 높았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72.53%로 나타남

<표 4-42>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성별)

(단위 : <u>명, %)</u>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성별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만큼 임금을 인상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금을 적게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전체
남	370(21.74)	627(36.84)	93(5.46)	612(35.96)	1,702(100.00)
여	630(18.94)	1,457(43.81)	127(3.82)	1,112(33.43)	3,326(100.00)
전체(2017)	1,000(19.89)	2,084(41.45)	220(4.38)	1,724(34.29)	5,028(100.00)
전체(2016)	860(18.00)	1,944(40.69)	219(4.58)	1,755(36.73)	4,778(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43>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연령별)

(단위 : 명. %)

					(단위 · 당, /예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연령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만큼 임금을 인상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금을 적게 인상		전체
20세 미만	9(22.50)	24(60.00)	2(5.00)	5(12.50)	40(100.00)
20~29세	250(21.03)	538(45.25)	40(3.36)	361(30.36)	1,189(100.00)
30~39세	206(20.85)	358(36.23)	43(4.35)	381(38.56)	988(100.00)
40~49세	203(17.22)	532(45.12)	34(2.88)	410(34.78)	1,179(100.00)
50~59세	232(20.84)	431(38.72)	66(5.93)	384(34.50)	1,113(100.00)
60세 이상	103(19.47)	203(38.37)	37(6.99)	186(35.16)	529(100.00)
전체	1,003(19.91)	2,086(41.41)	222(4.41)	1,727(34.28)	5,038(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44>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학력별)

(단위 : 명, %)

					<u> </u>
임금 인상에 버친 영향 학력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음	전체
고졸 이하	510(20.76)	1,012(41.19)	125(5.09)	810(32,97)	2,457(100.00)
	157(21.66)	362(49.93)	15(2.07)	191(26.34)	725(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313(18.27)	659(38.47)	76(4.44)	665(38.82)	1,713(100.00)
전체	980(20.02)	2,033(41.53)	216(4.41)	1,666(34.03)	4,895(100.00)

<표 4-45>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금을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만큼 임금을 인상	'신상만큼 임금을 │ 인상보다 임금을 │ [']		전체
정규직	661(19.34)	1,317(38.54)	154(4.51)	1,285(37.61)	3,417(100.00)
비정규직	340(21,22)	757(47.25)	65(4.06)	440(27.47)	1,602(100.00)
전체	1,001(19.94)	2,074(41.32)	219(4.36)	1,725(34.37)	5,019(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46> 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의 인상에 미친 영향(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 11 0, 79)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비정규직	영향 최서임금 의성 인상보다 임금을 인상만큼		최저임금 상만큼 임금을 인상보다 임금을 인상 적게 인상		전체
시간제근로자	189(23.57)	416(51.87)	32(3.99)	165(20.57)	802(100.00)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40(27.21)		3(2.04)	83(56.46)	147(100.00)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99(17.13)		30(5.19)	158(27.34)	578(100.00)
기타	8(14.04)	15(26.32)	4(7.02)	30(52.63)	57(100.00)
전체	336(21.21)	743(46.91)	69(4.36)	436(27.53)	1,584(100.00)

주 : 결측치 제외

4.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46.66%,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25.41%로 나타남(〈표 4-47〉~〈표 4-51〉참조)
 - 성별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응답자 비율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음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20대 미만을 제외하면,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하였다는 응답은 30~39세 52.71%, 40~49세 48.76%순이었으며,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0~29세 28.07%, 60세 이상 27.06%순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현재의임금이 높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49.21%로, 비정규직의 39.51%보다 높음
- 비정규직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현재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율이 47.16%로 가장 높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3.33%로 가장 높음

<표 4-47>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성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성별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	기타	전체
남	343(49.78)	163(23.66)	183(26.56)	689(100.00)
여	586(45.01)	343(26.34)	373(28.65)	1,302(100.00)
전체	929(46.66)	506(25.41)	556(27.93)	1,991(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48>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연령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연령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	기타	전체
20세 미만	3(50.00)	2(33.33)	1(16.67)	6(100.00)
20~29세	170(42.61)	112(28.07)	117(29.32)	399(100.00)
30~39세	224(52.71)	98(23.06)	103(24.24)	425(100.00)
40~49세	236(48.76)	125(25.83)	123(25.41)	484(100.00)
50~59세	215(46.64)	111(24.08)	135(29.28)	461(100.00)
60세 이상	82(37.61)	59(27.06)	77(35.32)	218(100.00)
전체	930(46.66)	507(25.44)	556(27.90)	1,993(100.00)

<표 4-49>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학력별)

(단위:명,%) 임금 인상이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산입범위에 맞추어 기타 전체 높기 때문에 조정하였기 때문에 학력 고졸 이하 429(44.78) 252(26.30) 277(28.91) 958(100.00) 대학(전문대 52(23.42) 62(27.93) 108(48.65) 222(100.00)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182(24.23) 203(27.03) 751(100.00) 366(48.74) 포함) 졸업 이상 전체 903(46.76) 486(25.17) 542(28.07) 1,931(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50>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고용형태별)

(단위:명,%)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고용형태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	기타	전체
정규직	714(49.21)	356(24.53)	381(26.26)	1,451(100.00)
비정규직	211(39.51)	150(28.09)	173(32.40)	534(100.00)
 전체	925(46.60)	506(25.49)	554(27.91)	1,985(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51>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비정규직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	기타	전체
시간제근로자	108(47.16)	59(25.76)	62(27.07)	229(100.00)
일용근로자	36(40.45)	22(24.72)	31(34.83)	89(100.00)
기간제근로자	59(32.24)	61(33.33)	63(34.43)	183(100.00)
기타	10(27.03)	8(21.62)	19(51.35)	37(100.00)
전체	213(39.59)	150(27.88)	175(32.53)	538(100.00)

5.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가. 최저임금의 결정요인

- 최저임금 결정요인으로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51.34%)', '근로자의 생계비 (49.08%)',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24.40%)'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표 4-52〉~〈표 4-57〉참조)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물가상승률'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53.13%),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생계비(50.90%)', '물가상승률 (47.42%)'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로는 '주 소득원'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7%로 나타났으나, '보조소득원'·'개인소비용'인 근로자들은 '물가상승률'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음(각각 54.15%, 55.15%)

<표 4-52> 최저임금 결정요인(성별)

(단위: 명.%) 최저임금 일반 실업률 기업의 결정요인 경제 물가 근로자의 근로자의 노동 소득분배 등 고용 지불 기타 전체 생계비 임금 수준 상황 생산성 상승률 상승률 사정 능력 및 인상률 성별 244 106 221 842 80 229 887 398 14 1.707 남 (14.29)(12.95)(4.69)(0.82)(51.96)(23.32)(6.21)(49.33)(13.42)(100.00)22 1.591 834 473 196 425 1.750 113 3.342 381 여 (47.61)(24.96)(14.15)(5.86)(12.72)(52.36)(3.38)(0.66)(100.00)(11.40)2,478 1,232 717 302 646 2,592 193 610 36 5,049 전체 (49.08)(24.40)(14.20)(5.98)(12.79)(51.34)(3.82)(12.08)(0.71)(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표 4-53> 최저임금 결정요인(고용형태별)

(단위:명,%) 최저임금 일반 결정요인 근_{로자의} 근로자의 실업률 기업의 노동 경제 물가 소득분배 등 고용 지불 기타 전체 임금 생계비 상황 생산성 상승률 상승률 수준 및 사정 능력 인상률 고용형태 3,431 1.654 903 511 212 444 1.823 124 436 28 정규직 (48.21)(26.32)(14.89)(12.94)(3.61)(12.71)(0.82)(100.00)(6.18)(53.13)819 327 205 90 203 763 69 176 8 1.609 비정규직 (50.90)(12.74)(12.62)(4.29)(0.50)(20.32)(5.59)(47.42)(10.94)(100.00)2.473 1.230 716 302 647 2.586 193 612 36 5.040 전체(2017) (49.07)(51.31)(0.71)(24.40)(14.21)(5.99)(12.84)(3.83)(12.14)(100.00)2.520 232 412 2.371 181 28 4.671 1.213 680 413 전체(2016) (53.95)(8.84)(0.60)(25.97)(14.56)(4.97)(8.82)(50.76)(3.87)(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							위 : 명, %)			
최저임금 결정요인 연령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 상황	경제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 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기타	전체
20세 미만	21 (51.22)	10 (24.39)	4 (9.76)	2 (4.88)	6 (14.63)	21 (51.22)	7 (17.07)	6 (14.63)	0.00)	41 (100.00)
20~30세	502	333	238	82	193	675	65	132	7	1,200
미만	(41.83)	(27.75)	(19.83)	(6.83)	(16.08)	(56.25)	(5.42)	(11.00)	(0.58)	(100.00)
30~40세	482	276	145	64	138	564	34	132	5	994
미만	(48.49)	(27.77)	(14.59)	(6.44)	(13.88)	(56.74)	(3.42)	(13.28)	(0.50)	(100.00)
40~50세	560	273	146	60	146	618	38	140	6	1,179
미만	(47.50)	(23.16)	(12.38)	(5.09)	(12.38)	(52.42)	(3.22)	(11.87)	(0.51)	(100.00)
50~60세	585	239	125	65	113	498	30	133	11	1,117
미만	(52.37)	(21.40)	(11.19)	(5.82)	(10.12)	(44.58)	(2.69)	(11.91)	(0.98)	(100.00)
60세 이상	335	100	60	29	52	222	19	69	7	529
	(63.33)	(18.90)	(11.34)	(5.48)	(9.83)	(41.97)	(3.59)	(13.04)	(1.32)	(100.00)
전체	2,485	1,231	718	302	648	2,598	193	612	36	5,060
	(49.11)	(24.33)	(14.19)	(5.97)	(12.81)	(51.34)	(3.81)	(12.09)	(0.71)	(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표 4-55> 최저임금 결정요인(학력별)

최저임금 일반 기업의 실업률 결정요인 근로자의 노동 소득분배 경제 물가 근로자의 등 고용 지불 기타 전체 임금 수준 및 인상률 생계비 상황 생산성 상승률 상승률 사정 능력 학력 525 1.318 316 116 272 1.166 88 281 21 2.461 고졸 이하 (11.05)(53.56)(21.33)(12.84)(4.71)(47.38)(3.58)(0.85)(100.00)(11.42)대학(전문 56 2 309 191 123 385 38 733 113 89 대 포함) (42.16)(52.52)(26.06)(15.42)(7.64)(16.78)(5.18)(12.14)(0.27)(100.00)재학 대학(전문 482 273 230 221 12 787 124 973 64 1,719 대 포함) (45.78)(28.04)(15.88)(7.21)(13.38)(56.60)(3.72)(12.86)(0.70)(100.00)졸업 이상 625 2.524 35 2,414 1,198 702 296 190 591 4,913

(12.72)

(단위 : 명, %)

(100.00)

(12.03)

(3.87)

(51.37)

(0.71)

(14.29)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6.02)

2) 결측치 제외

(49.13)

(24.38)

전체

(단위:명.%) 최저임금 일반 기업의 소득 실업률 결정요인 근로자의 노동 경제 물가 근로자의 등 고용 지불 기타 전체 분배 생계비 임금 수춘 생산성 상승률 상승률 상황 사정 능력 및 인상률 비정규작 시간제 93 39 99 91 401 170 400 44 3 810 근로자 (49.51)(20.99)(11.48)(4.81)(12.22)(49.38)(5.43)(11.23)(0.37)(100.00)3 22 23 2 일용 74 28 20 70 4 148 근로자 (50.00)(18.92)(13.51)(2.03)(14.86)(47.30)(2.70)(15.54)(1.35)(100.00)기간제 43 305 126 85 74 264 20 52 3 577 근로자 (52.86)(21.84)(14.73)(7.45)(12.82)(45.75)(3.47)(9.01)(0.52)(100.00)26 7 5 3 6 23 1 7 0 58 기타 (12.07)(44.83)(12.07)(8.62)(5.17)(10.34)(39.66)(1.72)(0.00)(100.00)806 331 203 201 757 69 1,593 88 173 8 전체 (5.52)(47.52)(0.50)(50.60)(20.78)(12.74)(12.62)(4.33)(10.86)(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2) 결측치 제외

<표 4-57> 최저임금 결정요인(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단위:명,%)

최저임금 결정요인 응답 근로자 소독의 가계 내 역할	근로자의 생계비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인상률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 상황	경제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고용 사정	기업의 지불 능력	기타	전체
주 소득원	1,158	442	276	109	209	941	63	224	11	2,015
	(57.47)	(21.94)	(13.70)	(5.41)	(10.37)	(46.70)	(3.13)	(11.12)	(0.55)	(100.00)
보조소득원	931 (46.30)	488 (24.27)	245 (12.18)	127 (6.32)	281 (13.97)	1,089 (54.15)	77 (3.83)	269 (13.38)	16 (0.80)	2,011 (100.00)
개인소비용	364	283	186	60	152	530	51	107	5	961
	(37.88)	(29.45)	(19.35)	(6.24)	(15.82)	(55.15)	(5.31)	(11.13)	(0.52)	(100.00)
기타	7 (30.43)	7 (30.43)	5 (21.74)	2 (8.70)	3 (13.04)	12 (52.17)	2 (8.70)	3 (13.04)	4 (17.39)	23 (100.00)
전체	2,460	1,220	712	298	645	2,572	193	603	36	5010
	(49.10)	(24.35)	(14.21)	(5.95)	(12.87)	(51.34)	(3.85)	(12.04)	(0.72)	(100.00)

주 : 1) 복수응답. 괄호 안의 비율은 응답을 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

나. 2017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 2017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해서 55.29%의 근로자가 '보통'이라 응답한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가진 근로자 비율은 9.21%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약간 낮은 또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5.49%이었음. 2016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약간 낮은 수준'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19.33% 포인트 감소함 (〈표 4-58〉~〈표 4-63〉 참조)

²⁾ 결측치 제외

<표 4-58>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성별)

(단위 : 명, %)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적정성 약간 낮은 매우 높은 약간 높은 보통이다 전체 수준이다 수준이다 수준이다 성별 남 42(2.44) 141(8.20) 931(54.16) 419(24.37) 186(10.82) 1,719(100.00) 여 59(1.76) 225(6.72) 1,870(55.87) 867(25.90) 326(9.74) 3,347(100.00) 366(7.22) 전체(2017) 101(1.99) 2,801(55.29) 1,286(25.38) 512(10.11) 5,066(100.00) 전체(2016) 32(0.67) 144(3.00) 1,992(41.51) 1,578(32.88) 1,053(21.94) 4,799(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59>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연령별)

(단위:명,%)

						<u> </u>
적정성 연령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20세 미만	0(0.00)	4(9.76)	26(63.41)	7(17.07)	4(9.76)	41(100.00)
20~29세	13(1.08)	78(6.48)	645(53.57)	335(27.82)	133(11.05)	1,204(100.000)
30~39세	23(2.30)	78(7.82)	529(53.01)	266(26.65)	102(10.22)	998(100.00)
40~49세	17(1.44)	88(7.45)	661(55.97)	290(24.56)	125(10.58)	1,181(100.00)
50~59세	26(2.32)	75(6.68)	651(58.02)	264(23.53)	106(9.45)	1,122(100.00)
60세 이상	22(4.14)	43(8.10)	296(55.74)	129(24.29)	41(7.72)	531(100.00)
전체	101(1.99)	366(7.21)	2,808(55.31)	1,291(25.43)	511(10.06)	5,077(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60>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학력별)

(단위:명,%)

적정성 학력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졸 이하	63(2.54)	182(7.34)	1472(59.40)	540(21.79)	221(8.92)	2,478(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11(1.50)	59(8.07)	401(54.86)	200(27.36)	60(8.21)	731(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25(1.45)	123(7.15)	854(49.62)	495(28.76)	224(13.02)	1,721(100.00)
전체	99(2.01)	364(7.38)	2,727(55.31)	1,235(25.05)	505(10.24)	4,930(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61>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단위:명,%)

적정성 고용형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정규직	75(2.18)	253(7.36)	1,863(54.17)	879(25.56)	369(10.73)	3,439(100.00)
비정규직	26(1.61)	112(6.92)	932(57.60)	407(25.15)	141(8.71)	1,618(100.00)
 전체	101(2.00)	365(7.22)	2,795(55.27)	1,286(25.43)	510(10.09)	5,057(100.00)

<표 4-62>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단위: 명, %) 적정성 매우 높은 약간 높은 약간 낮은 매우 낮은 보통이다 전체 수준이다 비정규칙 수준이다 수준이다 수준이다 시간제근로자 12(1.48) 60(7.38) 480(59.04) 208(25.58) 53(6.52) 813(100.00) 일용근로자 2(1.35) 80(54.05) 39(26.35) 9(6.08) 18(12.16) 148(100.00) 기간제근로자 12(2.06) 29(4.97) 339(58.15) 132(22,64) 71(12.18) 583(100.00) 기타 0(0.00)3(5.08) 30(50.85) 17(28.81) 9(15.25) 59(100.00) 전체 26(1.62) 110(6.86) 929(57.95) 396(24.70) 142(8.86) 1,603(100.00)

주 : 결측치 제외

○ 최저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서 39.02%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최저임금 인상액 이상으로 인상된 근로자에서 14.47%이 가장 높았음(〈표 4-63〉참조)

<표 4-63> 2017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최저임금 인상 영향별)

(단위 : 명, %)

적정성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임금 인상	36(3.59)	109(10.88)	558(55.69)	230(22.95)	69(6.89)	1,002(100.00)
최저임금 인상만큼 임금 인상	35(1.68)	144(6.91)	1,171(56.22)	559(26.84)	174(8.35)	2,083(100.00)
최저임금 인상 이하로 임금 인상	6(2.71)	12(5.43)	122(55.20)	53(23.98)	28(12.67)	221(100.00)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	24(1.39)	100(5.80)	928(53.80)	439(25.45)	234(13.57)	1,725(100.00)
전체	101(2.01)	365(7.26)	2,779(55.24)	1,281(25.46)	505(10.04)	5,031(100.00)

- 최저임금액이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20.64%)보다 '도움이 된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27.30%)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4-64〉~〈표 4-69〉 참조)
 - 연령별로, '도움이 된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20세 미만에서 39.03%로 가장 높았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나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20~30세 미만에서 21.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생활 향상에 대한 의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 크게 차이 나지 않음. 비정규직 안에서 '도움이 된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일용근로자가 32.42%로 가장 높았음
 -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로, '전혀 도움이 안된다' 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개인소비용' 근로자에서 22.63%로 '도움이 된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 22.32%보다 높았다. '주소득원'·'보조 소득원' 근로자의 경우 '전혀 도움이 안된다' 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각각 22.01%, 18.40%로 '도움이 된다'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 각각 28.04%, 28.85%보다 높았음

<표 4-64>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성별)

(단위 : 명, %)

생활향상 지여도 성별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남	94(5.51)	288(16.89)	756(44.34)	322(18.89)	109(6.39)	136(7.98)	1,705(100.00)
여	146(4.40)	509(15.33)	1,512(45.54)	789(23.77)	152(4.58)	212(6.39)	3,320(100.00)
전체(2017)	240(4.78)	797(15.86)	2,268(45.13)	1,111(22.11)	261(5.19)	348(6.93)	5,025(100.00)
전체(2016)	478(10.00)	993(20.77)	1,964(41.08)	819(17.13)	188(3.93)	339(7.09)	4,781(100.00)

<표 4-65>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연령별)

생활향상 저혀 별로 도움이 매우 도움이 보통 기여도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도움이 됨 안됨 안됨 연령 20세 미만 0(0.00)2(4.88) 23(56.10) 15(36.59) 1(2.44) 0(0.00)41(100.00) 20~30세 미만 68(5.68) 194(16.19) 571(47.66) 245(20.45) 39(3.26) 81(6.76) 1,198(100.00) 30~40세 미만 66(6.69) 154(15.62) 429(43.51) 986(100.00) 189(19.17) 39(3.96) 109(11.05) 40~50세 미만 45(3.83) 220(18.74) 540(46.00) 243(20.70) 49(4.17) 77(6.56) 1,174(100.00) 50~60세 미만 38(3.43) 152(13.73) 479(43.27) 301(27.19) 79(7.14) 58(5.24) 1,107(100.00)

231(43.67)

2,273(45.14)

117(22,12)

1,110(22.05)

54(10.21)

261(5.18)

25(4.73)

350(6.95)

(단위: 명,%)

529(100.00)

5,035(100.00)

(단위:명,%)

주 : 결측치 제외

60세 이상

전체

<표 4-66>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학력별)

23(4.35)

240(4.77)

79(14.93)

801(15.91)

(단위:명,%) 생활향상 전혀 별로 도움이 매우 도움이 기여도 도움이 보통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아됨 학력 안됨 고졸 이하 94(3.82) 359(14.60) 576(23.42) 172(6.99) 1,125(45.75) 133(5.41) 2,459(100.00) 대학(전문대 27(3.72) 94(12.97) 335(46.21) 199(27.45) 31(4.28) 39(5.38) 725(100.00) 포함) 재학 대학(전문대 포함) 119(6.98) 322(18.89) 739(43.34) 305(17.89) 51(2.99) 169(9.91) 1,705(100.00) 졸업 이상 전체 240(4.91) 254(5.20) 775(15.85) 2,199(44.98) 1,080(22.09) 341(6.97) 4,889(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67>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고용형태별)

생활향상 기여도 별로 전혀 도움이 매우 도움이 보통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아됨 도움이 안됨 고용형태 정규직 171(5.02) 567(16.63) 1.516(44.47) 697(20.45) 186(5.46) 272(7.98) 3.409(100.00) 비정규직 69(4.30) 230(14.32) 750(46.70) 410(25.53) 70(4.36) 77(4.79) 1,606(100.00) 2,266(45.18) 전체 240(4.79) 797(15.89) 1,107(22.07) 256(5.10) 349(6.96) 5,015(100.00)

<표 4-68>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 :1 0, 74)
생활향상 기여도 비정규직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시간제근로자	20(2.48)	104(12.87)	417(51.61)	222(27.48)	20(2.48)	25(3.09)	808(100.00)
일용근로자	3(2.07)	17(11.72)	65(44.83)	40(27.59)	7(4.83)	13(8.97)	145(100.00)
기간제근로자	36(6.23)	100(17.30)	236(40.83)	138(23.88)	40(6.92)	28(4.84)	578(100.00)
기타	8(13.56)	8(13.56)	23(38.98)	12(20.34)	0(0.00)	8(13.56)	59(100.00)
전체	67(4.21)	229(14.40)	741(46.60)	412(25.91)	67(4.21)	74(4.65)	1,590(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69> 2017년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별)

(단위 : 명. %)

							(E11 - 0, 70)
최저임금의 생활향상 기여도 (2016년) 응답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전혀 도움이 안됨	별로 도움이 안됨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관함	전체
주 소득원	104(5.19)	337(16.82)	852(42.51)	397(19.81)	165(8.23)	149(7.44)	2,004(100.00)
보조소득원	91(4.55)	277(13.85)	936(46.80)	517(25.85)	60(3.00)	119(5.95)	2,000(100.00)
개인소비용	41(4.28)	176(18.35)	448(46.72)	182(18.98)	32(3.34)	80(8.34)	959(100.00)
기타	2(8.70)	3(13.04)	14(60.87)	2(8.70)	2(8.70)	0(0.00)	23(100.00)
전체	238(4.77)	793(15.90)	2,250(45.13)	1,098(22.02)	259(5.19)	348(6.98)	4,986(100.00)

주 : 결측치 제외

다. 2018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정성 판단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55.38%로 가장 많았고,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25.04%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표 4-70〉~〈표 4-76〉 참조)
 - 성별에 따른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60세 이상 근로자를 제외하면, 연령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고용형태별로는, 의견의 큰 차이가 없음

<표 4-70>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성별)

(단위 : 명, %)

						(= 11 0, 15)
적정성 성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吓	129	445	898	182	66	1,720
	(7.50)	(25.87)	(52.21)	(10.58)	(3.84)	(100.00)
여	182	822	1,904	332	100	3,340
	(5.45)	(24.61)	(57.01)	(9.94)	(2.99)	(100.00)
전체	311	1,267	2,802	514	166	5,060
	(6.15)	(25.04)	(55.38)	(10.16)	(3.28)	(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71>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연령별)

(단위 : 명, %)

						(E11 · 8, 70)
적정성 연령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20세 미만	3(7.50)	13(32.50)	20(50.00)	3(7.50)	1(2.50)	40(100.00)
20~29세	59(4.90)	354(29.43)	620(51.54)	135(11.22)	35(2.91)	1,203(100.00)
30~39세	70(7.03)	243(24.40)	533(53.51)	109(10.94)	41(4.12)	996(100.00)
40~49세	62(5.26)	284(24.09)	678(57.51)	121(10.26)	34(2.88)	1,179(100.00)
50~59세	68(6.07)	246(21.94)	656(58.52)	114(10.17)	37(3.30)	1,121(100.00)
60세 이상	50(9.40)	126(23.68)	301(56.58)	36(6.77)	19(3.57)	532(100.00)
전체	312(6.15)	1,266(24.97)	2,808(55.37)	518(10.21)	167(3.29)	5,071(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72>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학력별)

(단위 : 명, %)

적정성 학력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졸 이하	163(6.60)	625(25,29)	1,386(56.09)	217(8.78)	80(3.24)	2471(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48(6.57)	199(27.22)	389(53.21)	78(10.67)	17(2.33)	731(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96(5.58)	418(24.29)	937(54.45)	201(11.68)	69(4.01)	1,721(100.00)
전체	307(6.24)	1,242(25.23)	2,712(55.09)	496(10.08)	166(3.37)	4,923(100.00)

<표 4-73>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적정성 고용형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정규직	212(6.17)	863(25.13)	1,898(55.27)	346(10.08)	115(3.35)	3,434(100.00)
비정규직	100(6.18)	400(24.74)	896(55.41)	172(10.64)	49(3.03)	1,617(100.00)
전체(2017)	312(6.18)	1,263(25.00)	2,794(55.32)	518(10.26)	164(3.25)	5,051(100.00)
전체(2016)	39(0.83)	277(5.92)	2,211(47.28)	1,311(28.04)	838(17.92)	4,676(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74>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 · · · · · ·
적정성 비정규직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시간제근로자	50(6.16)	218(26.85)	439(54.06)	87(10.71)	18(2.22)	812(100.00)
일용근로자	6(4.05)	40(27.03)	83(56.08)	17(11.49)	2(1.35)	148(100.00)
기간제근로자	41(7.04)	132(22.68)	329(56.53)	56(9.62)	24(4.12)	582(100.00)
기타	1(1.69)	10(16.95)	35(59.32)	8(13.56)	5(8.47)	59(100.00)
전체	98(6.12)	400(24.98)	886(55.34)	168(10.49)	49(3.06)	1,601(100.00)

- 인상 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는 의견의 비중은 '최저임금 인상 이하로 임금 인상'된 근로자에서 1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상 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 역시 '최저임금 인상 이하로 임금 인상'된 근로자의에서 35.59%로 가장 높았음(〈표 4-75〉참조)
 -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액 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2018년 최저임금액에 수준에 대해서도 '보통'이라는 의견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76〉참조)

<표 4-75>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최저임금액 인상이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별)

(단위 : 명, %)

											\	<u> </u>
적정성 임금 연상에 미친 영향	매우 수준			높은 이다	보통	이다		낮은 이다	매우 수준		전	체
최저임금 인상	85	(8.50)	257	(25.70)	554	(55.40)	84	(8.40)	20	(2.00)	1,000	(100.00)
이상으로 임금 인상	(27.60)		(20.38)		(19.95)		(16.41)		(12.05)		(19.90)	
최저임금	120	(5.77)	564	(27.13)	1,154	(55.51)	181	(8.71)	60	(2.89)	2,079	(100.00)
인상만큼 임금 인상	(38.96)		(44.73)		(41.56)		(35.35)		(36.14)		(41.38)	
최저임금 인상	19	(8.56)	60	(27.03)	104	(46.85)	31	(13.96)	8	(3.60)	222	(100.00)
이하로 임금 인상	(6.17)		(4.76)		(3.75)		(6.05)		(4.82)		(4.42)	
최저임금	84	(4.88)	380	(22.05)	965	(56.01)	216	(12.54)	78	(4.53)	1,723	(100.00)
인상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	(27.27)		(30.13)		(34.75)		(42.19)		(46.99)		(34.30)	
T-1 = II	308	(6.13)	1,261	(25.10)	2,777	(55.27)	512	(10.19)	166	(3.30)	5,024	(100.00)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76> 2018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2017년 적용된 최저임금의 적정성 응답 여부별)

(단위 : 명. %)

											(🗀 11	· 0, /0)
2018년 2017년	매우	높은 이다	약간 수준		보통	이다	약간 수준		매우 수준		전	체
매우 높은	74	(73.27)	15	(14.85)	9	(8.91)	2	(1.98)	1	(0.99)	101	(100.00)
수준이다	(23.72)		(1.19)		(0.32)		(0.39)		(0.60)		(1.99)	
약간 높은	90	(24.73)	208	(57.14)	63	(17.31)	2	(0.55)	1	(0.27)	364	(100.00)
수준이다	(28.85)		(16.44)		(2.25)		(0.39)		(0.60)		(7.18)	
HEOLE	126	(4.50)	855	(30.51)	1,713	(61.13)	94	(3.35)	14	(0.50)	2,802	(100.00)
보통이다	(40.38)		(67.59)		(61.05)		(18.15)		(8.38)		(55.29)	
약간 낮은	15	(1.16)	156	(12.10)	817	(63.38)	282	(21.88)	19	(1.47)	1,289	(100.00)
수준이다	(4.81)		(12.33)		(29.12)		(54.44)		(11.38)		(25.43)	
매우 낮은	7	(1.37)	31	(6.05)	204	(39.84)	138	(26.95)	132	(25.78)	512	(100.00)
수준이다	(2.24)		(2.45)		(7.27)		(26.64)		(79.04)		(10.10)	
저귀	312	(6.16)	1,265	(24.96)	2,806	(55.37)	518	(10.22)	167	(3.30)	5,068	(100.00)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____ 주 : 결측치 제외

6.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18.51%는 '15%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6~9% 미만 수준에서 인상'(16.77%), '3~6% 미만 수준에서 인상'(16.77%)으로 나타남(〈표 4-77〉~〈표 4-81〉참조)
 - 성별에 따른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77>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성별)

(단위 : 명, %)

적정 인상률 성별	동결 (7,530원)	3% 미만(7,756 원 미만)	3~6% 미만(7,756 ~7,982원 미만)	6~9% 미만(7,982 ~8,208원 미만)	9~12% 미만(8,206 ~8,434원 미만)	12~15% 미만(8,434 ~8,660원 미만)	15% 이상(8,660 원 이상)	전체
남	265(15.45)	228(13.29)	263(15.34)	300(17.49)	203(11.84)	136(7.93)	320(18.66)	1,715(100.00)
여	489(14.66)	472(14.15)	584(17.51)	547(16.40)	385(11.54)	244(7.31)	615(18.44)	3,336(100.00)
전체	754(14.93)	700(13.86)	847(16.77)	847(16.77)	588(11.64)	380(7.52)	935(18.51)	5,051(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78>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연령별)

(단위 : 명. %)

							\=	211 - 0, 70
적정 인상률 연령	동결 (7,530원)	3% 미만(7,756 원 미만)	3~6% 미만(7,756 ~7,982원 미만)	6~9% 미만(7,982 ~8,208원 미만)	9~12% 미만(8,206 ~8,434원 미만)	12~15% 미만(8,434 ~8,660원 미만)	15% 이상(8,660 원 이상)	전체
20세 미만	9	6	6	3	8	2	7	41
	(21.95)	(14.63)	(14.63)	(7.32)	(19.51)	(4.88)	(17.07)	(100.00)
20~29세	127	142	206	227	152	127	222	1,203
	(10.56)	(11.80)	(17.12)	(18.87)	(12.64)	(10.56)	(18.45)	(100.00)
30~39세	136	131	174	150	128	72	201	992
	(13.71)	(13.21)	(17.54)	(15.12)	(12.90)	(7.26)	(20.26)	(100.00)
40~49세	156	169	180	216	132	82	243	1,178
	(13.24)	(14.35)	(15.28)	(18.34)	(11.21)	(6.96)	(20.63)	(100.00)
50~59세	217	162	191	168	115	72	192	1,117
	(19.43)	(14.50)	(17.10)	(15.04)	(10.30)	(6.45)	(17.19)	(100.00)
60세 이상	109	91	92	85	55	27	72	531
	(20.53)	(17.14)	(17.33)	(16.01)	(10.36)	(5.08)	(13.56)	(100.00)
전체	754	701	849	849	590	382	937	5,062
	(14.90)	(13.85)	(16.77)	(16.77)	(11.66)	(7.55)	(18.51)	(100.00)

<표 4-79>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학력별)

6~9% 3~6% 9~12% 12~15% 적정 인상률 3% 15% 동결 미만(7.756 미만(7.982 미만(8.206 미만(8.434 미만(7.756 이상(8.660 전체 (7.530원) -7.982원 -8,208원 ~8,434원 ~8,660원 원 미만) 원 이상) 학력 미무) 미만) 미만) 미만) 424 272 429 426 368 398 156 2,473 고졸 이하 (17.23)(14.88)(17.15)(16.09)(11.00)(6.31)(17.35)(100.00)77 96 136 93 51 129 733 대학(전문대 151 포함) 재학 (13.10)(10.50)(20.60)(18.55)(12.69)(6.96)(17.60)(100.00)대학(전문대 219 230 246 285 211 1.709 168 350 포함) 졸업 (12.81)(13.46)(14.39)(16.68)(12.35)(9.83)(20.48)(100.00)이상 741 675 821 819 576 375 908 4,915 전체 (15.08)(13.73)(16.70)(16.66)(11.72)(7.63)(18.47)(100.00)

(단위: 명.%)

(단위:명,%)

(100.00)

(단위:명,%)

1,596

(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80>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고용형태별)

적정 9~12% 3~6% 6~9% 12~15% 3% 15% 인상률 동결 미만(7,756 미만(7.982 미만(8.206 미만(8.434 미만(7.756 이상(8,660 전체 ~7.982원 ~8,208원 -8.434원 ~8,660원 (7.530원) 원 이상) 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고용형태 515 465 551 588 398 252 661 3.430 정규직 (15.01)(13.56)(16.06)(17.14)(11.60)(7.35)(19.27)(100.00)238 233 295 260 192 125 269 1.612 비정규직 (18.30)(16.13)(11.91)(16.69)(14.76)(14.45)(7.75)(100.00)846 848 590 377 930 5,042 753 698 전체

(16.82)

(11.70)

9~12%

189

(11.84)

(7.48)

12~15%

124

(7.77)

268

(16.79)

(18.45)

주 : 결측치 제외

적정

(14.93)

<표 4-81>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비정규직, 고용형태별)

(13.84)

(16.78)

3~6%

290

(18.17)

3% 15% 인상률 동결 미만(7,756 미만(7.982 미만(8.206 미만(8.434 미만(7.756 이상(8.660 전체 7,982원 ~8,208원 ~8,434원 -8.660원 (7,530원) 원 미만) 원 이상) 비정규칙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시간제 111 119 162 141 97 50 132 812 근로자 (13.67)(14.66)(19.95)(17.36)(11.95)(6.16)(16.26)(100.00)일용 30 29 25 8 11 14 31 148 근로자 (20.27)(19.59)(16.89)(5.41)(7.43)(9.46)(20.95)(100.00)기간제 95 51 88 77 97 68 101 577 근로자 (15.25)(13.34)(16.46)(16.81)(11.79)(8.84)(17.50)(100.00)9 8 9 13 9 4 7 59 기타 (11.86)(15.25)(13.56)(15.25)(22.03)(15.25)(6.78)(100.00)

255

(15.98)

6~9%

주 : 결측치 제외

전체

236

(14.79)

234

(14.66)

-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상'을 제외하고는 '15% 이상의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최저임금 인상 이하로 인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15% 이상의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4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상'된 근로자들은 '3~6% 미만 수준에서 인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8.81%로 가장 높았음(〈표 4-82〉 참조)

<표 4-82> 최저임금 인상 영향별 2019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

(단위 : 명, %)

적정 인상률 임금 인상에 미친 영향	동결 (7,530원)	3% 미만(7,756 원 미만)	3~6% 미만(7,756 ~7,982원 미만)	6~9% 미만(7,982 ~8,208원 미만)	9~12% 미만(8,206 ~8,434원 미만)	12~15% 미만(8,434 ~8,660원 미만)	15% 이상(8,660 원 이상)	전체
최저임금 인상	127	153	166	177	111	66	200	1,000
이상으로 인상	(12.70)	(15.30)	(16.60)	(17.70)	(11.10)	(6.60)	(20.00)	(100.00)
최저임금	264	273	390	353	292	166	335	2,073
인상만큼 인상	(12.74)	(13.17)	(18.81)	(17.03)	(14.09)	(8.01)	(16.16)	(100.00)
최저임금 인상	25	31	31	37	27	24	45	220
이하로 인상	(11.36)	(14.09)	(14.09)	(16.82)	(12.27)	(10.91)	(20.45)	(100.00)
최저임금 인상	331	236	256	271	156	127	345	1,722
영향 없었음	(19.22)	(13.70)	(14.87)	(15.74)	(9.06)	(7.38)	(20.03)	(100.00)
전체	747	693	843	838	586	383	925	5,015
	(14.90)	(13.82)	(16.81)	(16.71)	(11.68)	(7.64)	(18.44)	(100.00)

7. 최저임금제도 준수·정착

- 최저임금제도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거나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3%이고,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1.28%로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표 4-83〉~〈표 4-87〉참조)
 -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잘 지켜진다는 의견의 비율이 1.04% 포인트 증가하였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은 0.35% 포인트 감소

<표 4-83>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성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준수 여부 성별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남	16(0.93)	49(2.85)	290(16.89)	524(30.52)	683(39.78)	155(9.03)	1,717(100.00)
여	48(1.44)	121(3.62)	508(15.20)	1,150(34.41)	1,249(37.37)	266(7.96)	3,342(100.00)
전체(2017)	64(1.27)	170(3.36)	798(15.77)	1,674(33.09)	1,932(38.19)	421(8.32)	5,059(100.00)
전체(2016)	77(1.60)	162(3.38)	767(15.98)	1,617(33.69)	1,754(36.55)	422(8.79)	4,799(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84>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연령별)

(단위:명,%)

최저임금 준수 여부 연령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20세 미만	0(0.00)	1(2.44)	2(4.88)	12(29.27)	24(58.54)	2(4.88)	41(100.00)
20~30세 미만	8(0.67)	34(2.83)	168(13.97)	365(30.34)	521(43.31)	107(8.89)	1,203(100.00)
30~40세 미만	13(1.30)	24(2.40)	161(16.13)	322(32.26)	394(39.48)	84(8.42)	998(100.00)
40~50세 미만	20(1.70)	45(3.83)	177(15.06)	434(36.94)	424(36.09)	75(6.38)	1,175(100.00)
50~60세 미만	13(1.16)	47(4.19)	192(17.13)	374(33.36)	399(35.59)	96(8.56)	1,121(100.00)
60세 이상	10(1.88)	19(3.57)	98(18.42)	171(32.14)	176(33.08)	58(10.90)	532(100.00)
전체	64(1.26)	170(3.35)	798(15.74)	1,678(33.10)	1,938(38.22)	422(8.32)	5,070(100.00)

<표 4-85>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학력별)

(단위 : 명, %)

							·
최저임금 춘숙 여부 학력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고졸 이하	31(1.26)	78(3.16)	412(16.69)	826(33.47)	904(36.63)	217(8.79)	2,468(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3(0.41)	24(3.29)	77(10.55)	267(36.58)	302(41.37)	57(7.81)	730(100.00)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27(1.57)	62(3.60)	283(16.42)	535(31.03)	685(39.73)	132(7.66)	1,724(100.00)
전체	61(1.24)	164(3.33)	772(15.68)	1,628(33.08)	1,891(38.42)	406(8.25)	4,922(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86>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고용형태별)

(단위 : 명, %)

						,	,
최저임금 준수 여부 고용형태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정규직	39(1.13)	122(3.55)	559(16.26)	1,090(31.71)	1,350(39.28)	277(8.06)	3,437(100.00)
비정규직	25(1.55)	46(2.85)	229(14.20)	588(36.45)	582(36.08)	143(8.87)	1,613(100.00)
전체	64(1.27)	168(3.33)	788(15.60)	1,678(33.23)	1,932(38.26)	420(8.32)	5,050(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87>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	= 11 0, 7-7
최저임금 준수 여부 비정규직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시간제근로자	3(0.37)	23(2.84)	100(12.35)	289(35.68)	339(41.85)	56(6.91)	810(100.00)
일용근로자	3(2.07)	2(1.38)	35(24.14)	47(32.41)	40(27.59)	18(12.41)	145(100.00)
기간제근로자	15(2.57)	20(3.43)	81(13.89)	228(39.11)	187(32.08)	52(8.92)	583(100.00)
기타	4(6.78)	1(1.69)	13(22.03)	14(23.73)	12(20.34)	15(25.42)	59(100.00)
전체	25(1.57)	46(2.88)	229(14.34)	578(36.19)	578(36.19)	141(8.83)	1,597(100.00)

- 전체 응답 근로자(5,044명) 중 68.75%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고지하고 있다'고 응답 (〈표 4-88〉~〈표 4-92〉 참조)
 - 성별 간 차이는 거의 없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을 '고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짐. '고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세 미만에서 가장 높으며(78.05%),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음(8.44%).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차이가 미미함. 다만, 비정규직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5.52%, '고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66%로 나타난 반면,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임
 - 최저임금 고지여부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식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저임금을 '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이 '잘 지켜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86.69%에 달하는 반면,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경우 36.13%에 불과해 50.56% 포인트의 차이가 있음. 한편 최저임금 고지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26.72%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남

<표 4-88> 최저임금 고지여부(성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고지 여부 성별	고지하고 있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전체
남	1,194(69.54)	104(6.06)	419(24.40)	1,717(100.00)
여	2,274(68.35)	253(7.60)	800(24.05)	3,327(100.00)
전체	3,468(68.75)	357(7.08)	1,219(24.17)	5,044(100.00)

<표 4-89> 최저임금 고지여부(연령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고지 여부 고지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고지하고 있음 전체 연령 20세 미만 32(78.05) 2(4.88) 7(17.07) 41(100.00) 20~30세 미만 839(69.92) 68(5.67) 293(24.42) 1,200(100.00) 30~40세 미만 685(69.05) 68(6.85) 239(24.09) 992(100.00) 40~50세 미만 813(69.37) 88(7.51) 271(23.12) 1,172(100.00) 50~60세 미만 745(66.70) 86(7.70) 286(25.60) 1,117(100.00) 60세 이상 45(8.44) 125(23.45) 363(68.11) 533(100.00) 전체 3,477(68.78) 357(7.06) 1,221(24.15) 5,055(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90> 최저임금 고지여부(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고지 여부 고용형태	고지하고 있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전체
정규직	2,376	253	798	3,427
	(69.33)	(7.38)	(23.29)	(100.00)
비정규직	1,088	102	418	1,608
	(67.66)	(6.34)	(26.00)	(100.00)
전체	3,464	355	1216	5,035
	(68.80)	(7.05)	(24.15)	(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91> 최저임금 고지여부(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고지 여부 고용형태	고지하고 있음	고지하지 않고 있음	잘 모르겠음	전체
시간제근로자	574(70.95)	42(5.19)	193(23.86)	809(100.00)
일용근로자	65(44.83)	14(9.66)	66(45.52)	145(100.00)
기간제근로자	414(71.50)	38(6.56)	127(21.93)	579(100.00)
기타	26(44.07)	9(15.25)	24(40.68)	59(100.00)
전체	1,079(67.78)	103(6.47)	410(25.75)	1,592(100.00)

<표 4-92> 최저임금 고지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관한 인식의 상관관계

<표 4-92> 최저임금 고지여무와 최저임금 순수 여무에 관한 인식의 상관관계 (단위 : 명,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고지여부	전혀 지켜지지 않음	별로 지켜지지 않음	보통	대체로 잘 지켜짐	매우 잘 지켜짐	잘 모르겠음	전체			
고지하고 있음	11(0.32)	60(1.73)	338(9.72)	1,246(35.83)	1,769(50.86)	54(1.55)	3,478(100.00)			
고지하지 않고 있음	40(11.20)	53(14.85)	93(26.05)	98(27.45)	31(8.68)	42(11.76)	357(100.00)			
잘 모르겠음	13(1.07)	56(4.59)	365(29.92)	330(27.05)	130(10.66)	326(26.72)	1,220(100.00)			
전체	64(1.27)	169(3.34)	796(15.75)	1,674(33.12)	1,930(38.18)	422(8.35)	5,055(100.00)			

주 : 결측치 제외

- 전체 응답 근로자(5.048명) 중 48.08%가 최저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32.11%가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함(〈표 4-93〉~〈표 4-98〉 참조)
 -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사용자'라는 응답의 비율은 2.89% 포인트 감소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모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7.82%, 48.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간 차이는 거의 없음
 -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별로 살펴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중 43.75%가 '사용자', 32.81%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 외의 근로자들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93>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고용형태별)

(단위 : 명, %)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고용형태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정규직	1,644	1,104	178	99	93	46	274	3,438
	(47.82)	(32.11)	(5.18)	(2.88)	(2.71)	(1.34)	(7.97)	(100.00)
비정규직	783	517	85	57	53	21	94	1,610
	(48.63)	(32.11)	(5.28)	(3.54)	(3.29)	(1.30)	(5.84)	(100.00)
전체(2017)	2,427	1,621	263	156	146	67	368	5,048
	(48.08)	(32.11)	(5.21)	(3.09)	(2.89)	(1.33)	(7.29)	(100.00)
전체(2016)	2,331	1,635	220	156	237	54	38	4,671
	(49.90)	(35.00)	(4.71)	(3.34)	(5.07)	(1.16)	(0.81)	(100.00)

<표 4-94>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성별)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사용자 최저임금 노동자 정부 사용자 근로자 기타 전체 중요성 단체 위원회 단체 성별 762 583 91 27 142 1,716 60 51 남 (44.41)(33.97)(5.30)(3.50)(2.97)(1.57)(8.28)(100.00) 226 3,341 1,667 1,044 172 96 95 41 여 (49.90)(31.25)(5.15)(2.87)(2.84)(1.23)(6.76)(100.00)2,429 146 68 368 1,627 263 156 5,057 전체 (48.03)(5.20)(3.08)(2.89)(1.34)(7.28)(100.00)(32.17)

주 : 결측치 제외

<표 4-95>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연령별)

(단위 : 명, %)

(단위:명,%)

최저임금 정착을 워한 역할의 중요성 연령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20세 미만	22	11	0	1	5	0	2	41
	(53.66)	(26.83)	(0.00)	(2.44)	(12.20)	(0.00)	(4.88)	(100.00)
20~30세 미만	616	325	50	31	47	22	111	1,202
	(51.25)	(27.04)	(4.16)	(2.58)	(3.91)	(1.83)	(9.23)	(100.00)
30~40세 미만	476	304	47	30	29	14	96	996
	(47.79)	(30.52)	(4.72)	(3.01)	(2.91)	(1.41)	(9.64)	(100.00)
40~50세 미만	578	401	56	36	22	8	73	1,174
	(49.23)	(34.16)	(4.77)	(3.07)	(1.87)	(0.68)	(6.22)	(100.00)
50~60세 미만	524	399	73	34	28	13	52	1,123
	(46.66)	(35.53)	(6.50)	(3.03)	(2.49)	(1.16)	(4.63)	(100.00)
60세 이상	218	190	38	24	15	11	36	532
	(40.98)	(35.71)	(7.14)	(4.51)	(2.82)	(2.07)	(6.77)	(100.00)
전체	2,434	1,630	264	156	146	68	370	5,068
	(48.03)	(32.16)	(5.21)	(3.08)	(2.88)	(1.34)	(7.30)	(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96>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학력별)

(단위:명,%)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학력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고졸 이하	1,113	848	157	68	85	34	165	2,470
	(45.06)	(34.33)	(6.36)	(2.75)	(3.44)	(1.38)	(6.68)	(100.00)
대학(전문대 포함)	349	228	38	20	20	13	63	731
재학	(47.74)	(31.19)	(5.20)	(2.74)	(2.74)	(1.78)	(8.62)	(100.00)
대학(전문대 포함)	894	511	56	63	38	17	140	1,719
졸업 이상	(52.01)	(29.73)	(3.26)	(3.66)	(2.21)	(0.99)	(8.14)	(100.00)
전체	2,356	1,587	251	151	143	64	368	4,920
	(47.89)	(32.26)	(5.10)	(3.07)	(2.91)	(1.30)	(7.48)	(100.00)

<표 4-97>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단체	기타	전체
비정규직				_ "	1121			
시간제근로자	403 (49.81)	249 (30.78)	41 (5.07)	28 (3.46)	26 (3.21)	9 (1.11)	53 (6.55)	809 (100.00)
일용근로자	82 (55.78)	37 (25.17)	9 (6.12)	3 (2.04)	7 (4.76)	3 (2.04)	6 (4.08)	147 (100.00)
기간제근로자	256 (44.21)	207 (35.75)	29 (5.01)	26 (4.49)	20 (3.45)	9 (1.55)	32 (5.53)	579 (100.00)
기타	31 (52.54)	18 (30.51)	4 (6.78)	2 (3.39)	0 (0.00)	0 (0.00)	4 (6.78)	59 (100.00)
전체	772 (48.43)	511 (32.06)	83 (5.21)	59 (3.70)	53 (3.32)	21 (1.32)	95 (5.96)	1,594 (100.00)

주 : 결측치 제외

<표 4-98>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과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의 비교

<u>(단위 : 명, %)</u>

(단위 : 명, %)

							_	11 0, 79,
최저임금 정착 위한 역할 최저임금 준수여부 인식	정부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단 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단 체	기타	전체
전혀 지켜지지 않음	21 (32.81)	28 (43.75)	2 (3.13)	6 (9.38)	3 (4.69)	0 (0.00)	4 (6.25)	64 (100.00)
별로 지켜지지	85	53	3	12	7	4	6	170
않음	(50.00)	(31.18)	(1.76)	(7.06)	(4.12)	(2.35)	(3.53)	(100.00)
보통	320	287	47	27	21	11	83	796
	(40.20)	(36.06)	(5.90)	(3.39)	(2.64)	(1.38)	(10.43)	(100.00)
대체로 잘 지켜짐	785	575	111	50	36	18	99	1,674
	(46.89)	(34.35)	(6.63)	(2.99)	(2.15)	(1.08)	(5.91)	(100.00)
매우 잘 지켜짐	1,031	568	86	40	62	23	126	1,936
	(53,25)	(29.34)	(4.44)	(2.07)	(3.20)	(1.19)	(6.51)	(100.00)
전체	2,242	1,511	249	135	129	56	318	4,640
	(48.32)	(32.56)	(5.37)	(2.91)	(2.78)	(1.21)	(6.85)	(100.00)

주 : 1)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잘 모르겠음"이라고 표기한 근로자는 제외하였음

2) 결측치 제외

참고문헌

- 강승복·박철성(2015),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노동 경제논집』, 제38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sim22$.
- 김유선 외(2004),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로조건 등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제35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9~50.
- 김동욱(2010), 「최저임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영향 평가」,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75~94.
- 김민영·김영수·박태수(2013), 「최저임금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관계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노사관계학회, 37~73.
- 박준성·박호환·강석훈(2010), 『최저임금이 저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확한 미만율 산출 방안』, 고용노동부.
- 이병희 외(2008), 『저소득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시균(2007),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2007년 6월호, 43~51.
- 이시균(2013),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산업노동연구』, 제 19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35~64.
- 정진호·남재량·김주영·전영준(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최강식 외(2008),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2009),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2010),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201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_(2012),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2014),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2013),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____(2015),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2016),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_____(2017),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 황승진(2015),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5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
- Autor, David, H. Alan Manning, and Christopher L. Smith(2010), "The Contribution of the Minimum Wage to U.S. Wage Inequality over Three Decades: A Reassessment," *NBER Working Paper*, No. 16533, NBER.
- Brown, C.(1999)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shenfelter, O. & D. Car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3, Elsevier pp.2101–2163.
- Card, D. & A. B. Krueger(1995),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ormby, J.P., John A. Bishop, and H. Kim(eds.) (2005), Minimum Wages and Poverty An Evaluation of Policy Alternatives, Elsevier Science.
- Giuliano, Laura (2013), Minimum Wage Effects on Employment, Substitution, and the Teenage Labor Supply: Evidence from Person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 Neumark, David and William L. Wascher (2008), Minimum Wages, MIT Press.
- Neumark, David, J.M. Ian Salas, and William Wascher (2013),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NBER Working Paper*, No. 18681, NBER.
- OECD(1998),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Statutory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Proverty", Employment Outlook, OECD, pp.31–79.
- Sutch, Richard (2010), "The Unexpected Long-Run Impact of the Minimum Wage: An Educational Cascade" *NBER Working Paper*, No. 16355.
- U.K LPC(1988), The National Minimum Wage: 1st Report of Low Pay Commission, Stationary Office.

- U.K LPC(2003), The National Minimum Wage: 4th Report of Low Pay Commission, Stationary Office.
- Vaughan-Whitehead, Daniel(2010), The Minimum Wage Revisited In The Enlarged EU, Edward Elgar Publishing.

부록1: 사업주 대상 설문지

부록2: 근로자 대상 설문지

부록1: 사업주 대상 설문지



지방 관 서	사 업 체	산업분류	사업체	지 역
번 호	번 호	번 호	규 모	번 호
*	*	*	*	*

* 란은 지방관서에서 기입합니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주 대상)

- ◆ 귀사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 한 표본추출 결과 표본사업체로 선 정되었습니다.
- ❖ 기업활동에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본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 아래의 항목에서 실제 응답자를 "V"자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 1) 사업주 □ 2) 대리응답자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6월중 다음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 통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동 설문결과는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본 설문의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사업주께서는 별도로 보낸 「근로자 대상 설문지」를 작성할 근로자들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정
 - ❖ 근로자 선정 기준
 - 1) 선정 대상: 귀사에서 최저임금액(2017년-6.470원)의 1.5배*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 최저임금액의 1.5배
 - : 시급 9,705원, 일환산액 77,640원(일8시간),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2,028,345원(주40시간), 2,193,330원(주44시간)
 - 2) 선정 근로자 수 결정: 귀사의 사업체 규모에 따라 선정 근로자 수를 결정
 - * 정규·비정규 여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중에서 선정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 기준)	4명 이하	5~9명	10~99명	100~299명
선정 근로자 수	최대 4명	최대 5명	최대 7명	최대 10명

- ※ **상용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포함
- 3) 실제 선정방법 : 근로자 수가 결정되면,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근로자 수 만큼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선정
- 2 부가설문지(본 설문지의 마지막 페이지-9페이지)에서 선정된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을 작성
- ③ 「근로자 대상 설문지」를 선정된 근로자에게 배포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
- 4 사업주께서는 본 설문지인 「사업주 대상 설문지」를 직접 작성

문의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로개선지도	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전화 ([E-mail :)	/ 팩스 ()]



최저임금위원회

A. 사업체 연황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본 현 황			
업체명			
소재지(주소)			
주요 생산품목 (재화 또는 서비스)*		노조유무	□ 1) 있음 □ 2) 없음
작성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 주요 생산품목(재화	· 또는 서비스)이 다수인 경우 미	 ㅐ출액이 가경	<u> </u>
기 초 항 목			
1 경영여건 등			
	2016년(실적액)		2017년(1~12월, 추정액)
매 출 액	□□□억□천□	백만원	□□□억□천□백만원
인 건 비	□□□억□천□	백만원	
			여충당금,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액, 면비 등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일체 비용)
1-1 지난해 9	와 비교하여 귀사의 금년 경 9	명사정은 어	서떻습니까?
□ 1) 조이제	[다(☞ 문 1-1-1]로 가시오)		
	(다() <u>프 I I I E</u> 가지도) 사 비슷하다		
	[다(☞ <mark>문 1-1-2</mark> 로 가시오)		
1-1-1 지난하	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영사	정이 좋아진	· 인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까지 선택)
	l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건비 절감 □ 4) 임차료 절취		
1-1-2 지난하	배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영사	정이 나빠진	· · · · · · · · · · · · · · · · · · ·
	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건비 상승 □ 4) 임차료 상:		
근 로 자 항 목			

2

귀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성별·고용형태별로 몇 명입니까?(2017.11.15.일 현재)

☞ 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제외, 외국인근로자 포함

고용형태별 / 성별	전 체	남 자	여 자
정규직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합 계	명	古の	명

[용어설명]

- **♦ 정규직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비정규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제 근로자 등인 경우
- **시간제근로자**: 통상적인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4시간 전후)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 (예를 들면 1주일에 30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일수보다 적게(예를 들면 일주일에 3, 4일) 근로하는 경우(파트타임)
- **일용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 **기간(계약)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 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이 아닌 경우(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B 최저임금 관련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최 저 임 금

♦ 작년(2016년) 및 금년(2017년) 최저임금액 및 인상액은 아래와 같음

		일환산액	월환산액(주	휴수당 포함)
구 분 	시급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주 44시간 기준
작년(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1,362,780원
금년(2017년)	6,470 원	51,760 원	1,352,230 원	1,462,220원
인상액	1 440원	★3,520원	會 91,960 원	1 99,440원

- ※ 3개월 이하 수습중인 자인 경우(10% 감액)
- 작년(2016년): <mark>시급 5,427원, 일환산액</mark> 43,416원,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1,134,243원(주40시간), 1,226,502원(주44시간)
- 금년(2017년): 시급 5,823원, 일환산액 46,584원,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1,217,007원(주40시간), 1,315,998원(주44시간)
-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정근수당, 상여금,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3 금년(201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이 근로자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모든 항목에 응답해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하지 않음	해 당 근로자없음	
3-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1	2	3	4	5	
3-2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1	2	3	4	5	
* 문 3-1 또는 3-2 에서 "인상하	지 않음"이리	나고 응답 한	· 경우(☞ 등	3-1-1	로 가시오)	
3-1-1 임금을 인상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역	엇입니까?				
□ 1)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 2)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어 조정하였기 때문에 □ 3) 기타()						
4 금년도(2017년)에 적용되는 최저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주9		의 인상이	최저임금액	의 1.5배를	를 초과하는	
□ 1) 영향을 주었다□ 2) 영향을 주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5 금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 2)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 3)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4)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6 금년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 수준의 인싱	영향		
6-1 금년에 적용되는 최기	저임금 수준의 인	상으로 인해 순	이익(이윤)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 1) 증가하였다	□ 2) 감소하였	다	영향이 없었다	구 -
6-2 금년에 적용되는 최저	H임금 수준의 인싱	는으로 인해 제품(서비스) 가격:	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 1) 인상되었다	□ 2) 인하되었	다	영향이 없었다	-
6-3 금년에 적용되는 최기	저임금 수준의 인성	상으로 인해 인경	건비의 변동0	l 있었습니까?
□ 1) 증가하였다	□ 2) 감소하였	다 3)	영향이 없었다	구
6-4 금년에 적용되는 최기	저임금 수준의 인	상으로 인해 신 ⁻	규채용의 변동	통이 있었습니까?
□ 1) 증가하였다	□ 2) 감소하였	다	영향이 없었다	-}
6-5 금년에 적용되는 최기	저임금 수준의 인	상으로 인해 근.	로시간의 변동	동이 있었습니까?
□ 1) 증가하였다	□ 2) 감소하였	다	영향이 없었다	다
6-6 금년에 적용되는 최저	여임금 수준의 인성	상으로 인해 임금	극산정 방식으	l 변동이 있었습니까?
□ 1) 변화가 없었다 □ 2) 수당이나 상여금· □ 3) 호봉급, 직무급 등 □ 4) 기타(, ,	-였다)
7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 (전체근로자가 아님에 ☞ 타 업체에서 파견된 등 ❖ 작년(2016년) 및 금년(2017	유의) 근로자는 제외하다			년 명입니까?
구 분	시급	일환산액		액(주휴수당 포함)
-1.1/22.13		(8시간 기준)		기준 주 44시간 기준
작년(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	
금년(2017년) ※ 시급, 일급, 월기준 임금은 으로 산정상 어려움이 있		위에 포함되는 임	금으로만 산경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수	·준을 받는 근로자	수 '17.11.1	15현재	'16.12월말
정규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합 계			명	명

8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근로	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 1)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 □ 2)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 3) 기업이 한계상황에 있어 인건비를 절감할 □ 4) 고용하는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이어서 □ 5) 기타(□ 6)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을 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g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 수준을 받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그들의 노동생산성을
□ 1)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편(□ 2) 적정한 수준이다 □ 3)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편(□ 4) 받는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하기가 어려워□ 5)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이다
10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 (복수응답 가능)	i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근로자의 생계비 □ 3) 노동생산성 □ 5) 경제성장률 □ 7) 실업률 등 고용사정 □ 9) 기타(□ 2)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4) 소득분배 상황 □ 6) 물가상승률 □ 8) 기업의 지불능력
 ❖ 생계비 :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 노동생산성 : 투하된 일정한 노동력과 그 ❖ 소득분배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산출되는 생산물이나 소득이 사회 구성 ❖ 경제성장률 :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보통소득)의 증감분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산 	회경제에서, 분업에 의한 생산과정을 통하여 원 사이에 분배되는 일 통 1년)동안 이룩한 국민경제(투자·산출량·국민 출해낸 비율 네스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본 개념

11	금년(201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신니까?
	(,,,,,				· · · · · · · · · · · · · · · · · · ·	О 1 1 П 1 1 1 1 1 1

		일환산액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구 분 	시급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주 44시간 기준
금년(2017년) 최저임금액	6,470 원	51,760 원	1,352,230원	1,462,22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정근수당, 상여금,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 □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 □ 2) 약간 높은 수준이다 □ 3) 보통이다
- □ 4)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 12 내년(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16.4%가 인상된 시급 7,530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일환산액	월환산액(주	휴수당 포함)
구 분 -	시급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주 44시간 기준
내년(2018년) 최저임금액	7,530 원	60,240 원	1,573,770원	1,701,780 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정근수당. 상여금.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 □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 2) 약간 높은 수준이다 □ 3) 보통이다
 - □ 4)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 13 내후년(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최저임금액-시급기준)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동결(7,530원)

- □ 2) 3% 미만(7,756원 미만)
- □ 3) 3~6% 미만(7,756원~7,982원 미만)
- □ 4) 6%~9% 미만(7,982원~8,208원 미만)
- □ 5) 9~12% 미만(8,208원~8,434원 미만)
- □ 6) 12%~15% 미만(8,434원~8,660원 미만)
- □ 7) 15% 이상(8,660원 이상)

14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숙소제공 □ 2) 식사제공(식당운영 포함)
□ 3) 통근차량 운행 □ 4) 상품권 지급
□ 5) 기타() □ 6) 제공하는 현물급여 없음
14-1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제공이 됩니까?
□ 1) 제공 된다 □ 2) 제공되지 않는다 □ 3) 외국인근로자 없음
15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1) 정부□ 2) 사용자□ 3) 근로자□ 4) 사용자단체□ 5) 최저임금위원회□ 6) 노동자단체□ 7) 기타()
16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다음 페이지의『부가설문지』항목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상 근로자 근로실태 부가설문지

('17.9월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

□ 사업주께서는 「근로자대상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할 근로자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아래의 부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설문지 작성 시 부여한 <u>하단의 『①근로자 번호』는</u> 「근로자대상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지」의 『근로자 번호』(설문지 첫 페이지 우측상단)<u>란에도 동일한 번호로 직접 기재하여야</u> 합니다.

① ⊐			④ 9월	중 근로에 대한 정역	액급여	⑤ 임금 산정기준	⑥ 임금 산정기준에 따른 임금 기준액
그 로 자 번 호	② 9월중 소정 실근로일	③ 9월중 소정 실근로시간	기본급	통상적 수 당	기타 수당	1. 시간급 2. 일급 3. 주급 4. 월급 5. 연봉제 6. 기타	1. 시간급 ⇨ '시급액'기재 2. 일급 ⇨ '일급액'기재 3. 주급 ⇨ '주급액'기재 4. 월급 ⇨ '월기본급'기재 5. 연봉제 ⇨ '기본연봉총액'기재 6. 기타
1	디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2	힏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3	일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4	일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5	일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6	힏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7	일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8	힏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9	일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10	일	시간	원	원	원	1, 2, 3, 4, 5, 6	원

용어해설

② 9월중 소정 실근로일

□ 당해 근로자가 '17.9월 급여계산기간 중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 면 1일로 간주

③ 9월중 소정 실근로시간

- - ※ 1개월을 통산하여 1시간미만 단위가 있는 경우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미만은 절사

4 9월중 근로에 대한 정액급여

- □ '17.9월분 급여로 지급된 정액급여를 내역별로 기입토록 하며, 9월분 급여가 조사기간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라도 9월분 급여로 기입
- O 정액급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정상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요 건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진 경우 이 에 대한 실제 지급된 급여
 - ★ 본 조사에서는 임금총액이 아닌 초과급여 및 특별급 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 합계만을 항목별로 구 분하여 조사

- 1) 기본급: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의 월 합계 액
- 2) 통상적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사업체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수당
 - * 예시) 직무·직책·자격·책임자·금융·물가·조정·특수작업·위험작업·벽지·생산장려·한냉지·기술·승무수당 등
- 3) 기타수당: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 예시) 가족·정근·통근·근속·주택·급식수당, 연·월차수당, 현물급여 등
 - ※ 연·월차수당을 적치해서 지급하는 경우 적치한 기간 (예: 6개월)으로 나는 금액을 기입

⑥ 임금산정기준에 따른 임금기준액

- 임금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임금기준액을 기재하되, 임금 산정기준이 시간급이면 시간당 임금액, 일급이면 일액. 주급이면 주급액(만근기준 기본급), 월급이면 월기본급(만 근기준 기본급), 연봉제이면 기본연봉총액(성과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을 각각 기재
 - * 예시) 시간급 : 시간당 임금액, 일급: 일액, 연봉제: 기본연 봉총액을 기재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근로자 대상 설문지



	지방 번	관서 호		시 번	업 .	체 호	산업 번	분류 호	사업체 규 모	지 번	역호	근 5 번	是자 호¹)
*			*				*		*	*		*	

**란은 지방관서에서 기입하며. 1)은 사업주가 부가설문지에 기재된 근로자번 호를 기재합니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근로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4~6월중 다음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 통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동 설문결과는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본 설문의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귀하는 본 설문지를 작성해주실 분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5배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설문지를 작성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아래의 설문지 작성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지를 작성해야 할 근로자 기준(선정대상):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 최저임금액(2017년-시급 6,470원)의 1.5배
 - : 시급 9.705원, 일환산액 77.640원(일8시간),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2.028.345원(주40시간), 2.193.330원(주44시간)

문의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 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전화 (



최저임금위원회

A. 기초 항목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 자	□ 2) 여 자	
2 귀하의 연령대는?		
□ 1) 20세 미만 □ 4) 40∼50세 미만□ 5) 50	□ 2) 20∼30세 미만 □ 3) 30∼40세 미만 ∼60세 미만 □ 6)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1) 고졸이하 □ 2) 대학(전문대포함) 재학 🗌 3) 대학(전문대포함) 졸업이상	
4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근	무 기간은?	
□ 1) 6개월 미만 □ 4) 2∼5년 미만	□ 2) 6~12개월 미만□ 3) 1~2년 미민□ 5) 5년 이상	ŀ
5 현 직장에서 다음 각각의	l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모든 항목에 :	기입)
5-1 국민연금		
□ ① 가입	□ ② 미가입	
5-2 건강보험(직장의료보	험)	
□ ① 가입	□ ② 미가입	
5-3 고용보험		
□ ① 가입	□ ② 미가입	
6 귀하 가정의 총 가족 수	(본인 포함)는 몇 명입니까?	명
	가족 구성원 중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 및 자녀 등 모든 가구원 포함)은 모두 몇 명입니	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	에 받은 총 소득(본인, 배우자 및 자녀 아르바이트 등 득, 정부·타 기구·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발생하는 비경상 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은 얼마입니	, 경조사비·
 □ 1) 80만원 미만 □ 3) 100~150만원 미만 □ 5) 200~300만원 미만 □ 7) 400~500만원 미만 	 □ 2) 80~100만원 미만 □ 4) 150~200만원 미만 □ 6) 300~400만원 미만 □ 8) 500만원 이상 	

8 귀하의 가정에서 금년 9월에 지출한 총 가계: 모든 지출 포함)은 얼마입니까? * 지출예시: 식료품비, 주류·담배비, 의류·신발-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교양·문	구입비, 주거비(아파트관리비), 보건·의료비,
□ 1) 80만원 미만 □ 2) 80~10 □ 3) 100~150만원 미만 □ 4) 150~2 □ 5) 200~300만원 미만 □ 6) 300~4 □ 7) 400~500만원 미만 □ 8) 500만원	00만원 미만 00만원 미만
9 귀하의 근로소득(임금)은 가정 소득에서 어떤	면 역할을 합니까?
 □ 1) 가계의 주 소득원 □ 2) 가계 □ 3) 주로 개인 소비용 □ 4) 기타 ※ 가계의 주소득원: 소득액 수준이 가장 높은 가득 	H()
B. 현재의 직장에 관련된 질문 해당항목대	네 "∨"자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직장에서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됩 □ 1) 정규직(□ 문 11 로 가시오.) □ 2) 비정규직 □ ①시간제근로자 □ ②일용근로자 □ ③ [용 어 설 명 ◆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 비정규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 ○ 시간제근로자: 통상적인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예를 들면 1주일에 30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역근로하는 경우(파트타임) ○ 일용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추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비○ 기간(계약)제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포함) 이의 반복 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	기간(계약)제 근로자 □ ④기타 경우 (계약)제 근로자 등인 경우 세 44시간 전후)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 실수보다 적게(예를 들면 일주일에 3, 4일)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11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하시는 일은?	
□ 3) 판매종사자 □ 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 서비스종사자] 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B 최저임금 관련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최저임금

♦ 작년(2016년) 및 금년(2017년) 최저임금액 및 인상액은 아래와 같음

		일환산액	월 환산액(주·	휴수당 포함)
구 분 	시급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주 44시간 기준
작년(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1,362,780원
금년(2017년)	6,470 원	51,760 원	1,352,230원	1,462,220 원
인상액	★440원	★3,520원	191,960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년('16년) 시급 6,030원에서 금년('17년) 6,470원으로 나다. 최저임금 인상이 귀하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 1)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인상되었□ 2) 최저임금 인상만큼 인상되었다□ 3) 최저임금 인상 이하로 인상되었다□ 4)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지	ł
12-1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	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습니까?
□ 1)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 □ 2)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 □ 3) 기타()	
13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를 (복수응답 가능)	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근로자의 생계비 □ 3) 노동생산성 □ 5) 경제성장률 □ 7) 실업률 등 고용사정 □ 9) 기타() 	□ 2)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4) 소득분배 상황 □ 6) 물가상승률 □ 8) 기업의 지불능력
,	[용어설명]
 ❖ 생계비 :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 ❖ 노동생산성 : 투하된 일정한 노동 ❖ 소득분배 : 경제활동을 하고 있산출되는 생산물이나 소득이 사용 ❖ 경제성장률 : 한 나라에서 일정기소득)의 증감분을 전년도와 비교하 	용 력과 그것에 의하여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 는 사회경제에서, 분업에 의한 생산과정을 통하여 회 구성원 사이에 분배되는 일 간(보통 1년)동안 이룩한 국민경제(투자·산출량·국민

14 금년(2017년)에 적용	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	다고 생각하십니	까?
구 분	시급	일환산액 (8시간 기준)	월환산액(주: 주 40시간 기준	휴수당 포함) 주 44시간 기준
금년(2017년) 최저임금액	6,470 원	51,760 원	1,352,230원	1,462,22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 및 가산임금, 가족수당, 급수 	□당, 면허수당, 생산· ↓금에 포함되지 않	장려수당 등 는 임금) 정근수당,		
□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 4) 약간 낮은 수준이다		약간 높은 수준0 매우 낮은 수준0	다 □ 3) 보통여 다	이다
14-1 귀하의 생활 향상	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	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 4) 별로 도움이 안		2) 조금 도움이 된 5) 전혀 도움이 인		8) 보통이다 5) 무관하다
15 내년(2018년)에 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 <i>까</i>		6.4%가 인상된	시급 7,530원입	니다. 이에 대해
구 분	시급	일환산액 (8시간 기준)		휴수당 포함) 주 44시간 기준
내년(2018년) 최저임금액	7,530 원	60,240 원	1,573,770원	1,701,780 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 ○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 및 가산임금, 가족수당, 급료 	'당, 면허수당, 생산' !금에 포함되지 않	장려수당 등 는 임금) 정근수당,		·
□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 4) 약간 낮은 수준이다		역간 높은 수준이 마우 낮은 수준이	다 □ 3) 보통여 다	미다
16 내후년(2019년)에 적용 생각하십니까?	용될 최저임금 인	!상률(최저임금액	-시급기준)은 얼	마가 적정하다고
□ 1) 동결(7,530원) □ 3) 3~6% 미만(7,756원~ □ 5) 9~12% 미만(8,208원 □ 7) 15% 이상(8,660원 이	~8,434원 미만)	☐ 4) 6%~9%	분(7,756원 미만) ○ 미만(7,982원∼8,20 5% 미만(8,434원∼8	

17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5)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6) 잘 모르겠다
17-1 귀하의 사업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매년 고지 하고 있습니까?
□ 1) 고지하고 있다 □ 2)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 3) 잘 모르겠다
18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1) 정부 □ 2) 사용자 □ 3) 근로자 □ 4) 사용자단체 □ 5) 최저임금위원회 □ 6) 노동자단체 □ 7) 기타(
19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